

보편적 시청권 개념 및 제도 재정립 방안 연구

주성희/김현정/노은정

2019. 12

031003131 031003131
312243 001312243
21229 31042
201669654
542 542153256 542153256
51800326103261
41287642376423
234243124
2131
761213112
013122732 031003131
001312243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기본연구 19-08

보편적 시청권 개념 및 제도 재정립 방안 연구

주성희/김현정/노은정

2019. 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서 언

최근 한 유료방송 채널에서 2032년까지 IOC가 주관하는 올림픽 경기의 국내 독점 중계권을 획득하여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었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의 방송 중계는 공동의 역사적 경험을 제공하고 국민 화합과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방송법에서는 2007년부터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만, 제도 현황이 정책 도입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보편적 시청권 개념의 도입 과정에서 보편적 서비스와 보편적 접근권, 그리고 시청자의 권리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이 부족한 결과 시청권의 주체인 국민의 요구가 충분히 녹아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이론적 검토는 물론,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일반 국민과 전문가가 생각하는 보편적 시청권의 범위, 대상, 및 보장 방식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보편적 시청권과 관계된 보편적 접근권,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측면에서도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과 제도화된 법령에 대한 의견을 조사함으로써 세부 법안의 정비 위주로 진행된 기존 정책 연구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연구 결과가 방송 분야에서 보편적 시청권, 보편적 서비스와 관련된 독창적인 연구 전통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국책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에 걸맞게 정책적으로도 실제 정책 정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주성희 연구위원이 연구책임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노은정 연구원이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편적 시청권의 이론적 논의와 설문 작성 및 전문가 조사에 함께 참여해주신 한국체육대학교 김현정 교수님과 조사에 응해주신 산학 및 정부기관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연구 결과가 방송 분야에서 보편적 시청권, 보편적 서비스와 관련된 독창적인 연구 전통을 만들어 내는데 기여하기를 바라며, 국책 연구기관에서 수행한 연구에 걸맞게 정책적으로도 실제 정책 정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기를 기대합니다.

2019년 12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 장 김 대 희

목 차

서 언	1
요약문	9
제 1 장 서 론	11
1. 연구 배경	11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2
제 2 장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	14
제 1 절 통신 분야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	14
1. 도입 배경	14
2.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	15
제 2 절 방송 분야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	17
1. 도입배경	17
2.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	19
제 3 절 단편보도권	22
제 3 장 국내외 보편적 시청권 제도 사례	25
제 1 절 국내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	25
1. 도입 배경과 경과	25
2. 제도 현황	28
제 2 절 해외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	33
1. 지정 행사 목록과 주요 행사의 중계 제도	34
2. 중계권 획득 자격 및 주요 행사 목록	38

3. 최근의 논의 및 쟁점	47
제 3 절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48
1. 보편적 시청권 제도 관련 쟁점	48
2. 해외사례의 시사점	53
제 4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55
제 1 절 연구문제	55
제 2 절 연구방법	56
1. 일반인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57
2. 일반인 대상 온라인 서베이	58
3. 전문가 대상 심층 조사	60
제 5 장 주요 연구결과	62
제 1 절 일반인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62
1. 보편적 시청권의 의미와 대상	62
2.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 방식	64
3. 국민관심행사의 범위	68
4. 국민관심행사 선정 기준	71
5. 국민관심행사 중계편성 방식	73
제 2 절 일반인 대상 온라인 서베이 결과	76
1. 매체 이용매체 및 국민관심행사 시청행태	76
2.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인식	78
3.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인식	80
4. 국민관심행사 목록의 적절성	82
제 3 절 전문가 심층조사 결과	84
1. 보편적 시청권의 의미와 대상	84
2.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방식	87

3. 방송과 통신을 포괄하는 보편적 서비스 제도화	89
4. 시청자 권익보호 강화	91
5. 매체 환경의 변화와 보편적 시청권 보장	92
6. 우선 중계방송권자 지정	94
7. 국민관심행사 목록 구분과 선정 기준	95
8. 단편보도권	97
 제 6 장 결론 및 제언	 98
제 1 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98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02
1. 정책적 제언	102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05
 참고문헌	 107
 〔부록 1〕 보편적 시청권 관련 방송법 개정(2007, 2016)	 112
〔부록 2〕 일반인 대상 온라인 서베이 질문	117

표 목 차

〈표 2-1〉 주요 국가의 보편적 서비스 정의	16
〈표 3-1〉 국내 보편적 시청권 제도화 경과	26
〈표 3-2〉 영국의 지정 스포츠 행사(Listed sporting events)	39
〈표 3-3〉 호주의 안티 사이퍼닝 리스트	41
〈표 3-4〉 독일의 주요 행사 목록	44
〈표 3-5〉 프랑스의 주요 행사 목록	45
〈표 4-1〉 포커스 그룹 참여자 구성	58
〈표 4-2〉 서베이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구성	59
〈표 4-3〉 전문가 조사 대상자 및 조사 시기	61

그 립 목 차

[그림 3-1]	국내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	28
[그림 3-2]	연령별 TV와 모바일 기기 시청 비중 비교	52
[그림 3-3]	스포츠 경기 시청 시 사용기기	52
[그림 5-1]	응답자의 매체 보유 현황	76
[그림 5-2]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시청 기기	77
[그림 5-3]	스포츠 경기 시청방식	77
[그림 5-4]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인지여부	78
[그림 5-5]	보편적 시청권의 의미	79
[그림 5-6]	보편적 시청권 보장 매체	79
[그림 5-7]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	80
[그림 5-8]	국민관심행사 제도의 필요성	81
[그림 5-9]	국민관심행사 제도에 대한 인식	81
[그림 5-10]	국민관심행사 중계권자	82
[그림 5-11]	국민관심행사에 추가해야 할 행사	83

요 약 문

최근 유료방송의 종합편성채널에서 올림픽 독점중계권을 획득하게 되면서 주요 국제 스포츠 경기의 중계방송권과 함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방송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 대회나 그 밖의 주요 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한다. 보편적 시청권 개념은 지역과 계층에 상관없이 가능한 한 모든 국민에게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통신 분야의 보편적 서비스를 방송 분야에 접목한 유럽의 보편적 접근권 제도를 근간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법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의 정의와 함께 방송 프로그램의 공급 및 거래와 관련된 제76조에서 보편적 시청권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방송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국제 경기의 중계권 거래와 자료화면 제공 등 사업자 측면의 분쟁과 관련된 사안에 주로 집중된 결과, 국민의 시청권 박탈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의 내용은 미흡하며, 시청권 보장의 대상이 되는 국민관심행사의 선정 기준과 범위 역시 매체 환경과 변화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보편적 서비스, 보편적 접근권과 시청권에 대한 확실한 개념 정립이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데서 오는 한계점이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을 기존 문헌과 일반인 및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하고 보편적 시청권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정비 방향에 대해서도 제언하고자 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공익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가치 중 보편성의 하위 개념으로 보편적 서비스, 보편적 시청권이 위치하며, 보편적 서비스는 사업자 또는 정책적 의무인 반면 보편적 시청권은 말 그대로 시청자의 권리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

다. 또한 시청자의 접근권은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방송 분야의 특성 상 보편적 콘텐츠에 대한 접근 역시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보편적 시청권을 구현하기 위한 매체와 플랫폼 등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무료 또는 최소한의 비용 지불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료 지상파 방송 내지는 공적 재원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공영방송의 역할이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예측과 달리 모바일 세대로 일컫는 20~30대에서도 아직까지는 TV가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하는 가장 핵심적 매체로 인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은 곧 방송사업자의 사업권과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보편적 시청권의 범위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우선 중계방송 매체의 지정도 가능하지만 향후 중계방송 역량이 있는 다양한 사업자들 간 경쟁을 통해 중계방송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다.

연구 결과 현재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보편적 서비스와 보편적 시청권 개념이 혼재되어 있으며,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의 범위, 보장 대가 및 시청권 침해 시 구제 방안 등 시청자 측면의 권리 확보와 관련된 내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보여준다. 아울러 현행 제도와 일반인 또는 전문가가 인식하는 보편적 시청권 개념 간에는 차이가 있는바, 향후 제도 정비에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줄여 정책 도입 취지와 시청자의 필요와 수요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

최근 유료방송의 종합편성채널인 JTBC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주관하는 하계 및 동계 올림픽의 국내 중계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다. IOC와 계약을 통해 JTBC가 획득한 중계권은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과 2026년 동계올림픽, 2030년 동계올림픽, 2032년 하계올림픽을 비롯해 이 기간 중 개최되는 유스 올림픽 대회까지 포함하며, 모든 플랫폼에 대한 권리가 해당된다(노컷뉴스, 2019. 6. 5; PD저널, 2019. 6. 4). JTBC의 중계권 획득 뉴스가 보도되자 지상파 연합인 한국방송협회는 JTBC의 중계권 획득이 방송법에서 규정한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도입 취지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난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미디어오늘, 2019. 6. 4).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1990년대 유럽을 중심으로 통신 분야의 보편적 서비스를 원용한 보편적 접근권(Universal Access Rule)이 그 시초라고 볼 수 있다. 유럽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지정 행사(Listed events)’ 제도, ‘주요 행사(Major events of interest),’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사(Events of major social importance)’의 중계방송 제도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행사의 중계방송 제도는 인기 콘텐츠, 특히 스포츠 경기의 독점적 중계권 행사로 인한 폐해를 막고 국가적 관심사 프로그램을 가능한 많은 국민이 무료로 시청하도록 함으로써 공통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한다. 국내에서는 방송법 제2조의 25에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로 보편적 시청권을 정의하고, 제76조에서 방송사업자 간 프로그램 중계권 거래 및 금지 행위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제도화하고 있다.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2006년 12월에 방송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된 이래 그동안 국민적 관심 행사 고시 제정,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 권고, 금지행위 규정 등 크고 작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 현재의 틀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주요 국제 스포츠 경기 때마다 중계권 획득과정과 실제 경기 중계에서 나타나듯이 보편적 시청권의 제도가 지향하는 바와 실제 간의 괴리가 여전히 존재한다. 무엇보다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보편적’ 또는 ‘시청권’이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수준의 명칭이 상징하는 바와는 다르게 실제로는 국제 스포츠 경기의 중계권을 둘러싼 사업자 간의 분쟁 해결과 중계권 거래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는 방송법에서 제시하는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과 원래 의도했던 방송 분야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는 현실에서도 일부 기인한다.

그 결과 보편적 시청권이 매우 협소한 범위로 규정되어 왔으며, 사업자가 아닌 시청자의 직접적인 권리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체계가 미비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현재의 제도는 무료 자료화면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고 중계권을 획득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권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소지도 있다. 더 나아가 전통적인 방송기와 방송망을 이용하는 대신 모바일 네트워크와 휴대용 기기를 통해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스포츠 중계 시청이 증가하는 현재의 매체 이용 행태변화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이 연구에서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고려하면서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해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매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중장기적 개선 방향 역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을 고찰하고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이론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보편적 시청권이 현재 방송법에서 정의하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 대회나 그 밖의 행사를 시청할 수 있는 권리”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이를 명칭에서 상징하는 바와 같이 좀 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로 확장하여 개념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내 보편적 시청권 도입 과정의 논의, 국민적 관심 행사의 중계와 관련된 해외 주요 국가의 제도적 사례, 보편적 시청권 구현과 관련된 국내의 매체 환경 변화에 대한 검토와 일반인 및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일반 시청자가 생각하는 보편적 시청권의 의미와,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용 매체 및 행태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는 보편적 시청권 이슈와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은 이 제도가 국민의 방송 복지에 현실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전문가와 일반 시청자의 시각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을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시청자 권리로 재정의하고 국민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개념과 정책수립 기반을 도출해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제 2 장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

제 1 절 통신 분야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

1. 도입 배경

방송에서 사용하는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공식적 영문 명칭으로 해외에서는 대체로 보편적 접근권(Universal Access Right)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통신 분야에서 사용하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개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신 분야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은 1907년 AT&T의 사장인 시어도어 베일(Theodore Vail)이 전국적인 통신 독점망을 정당화하는 논리로서 ‘하나의 정책, 하나의 시스템, 보편적 서비스(One policy, one system, universal service)’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모든 국민이 전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표방한 것이 보편적 서비스의 기원으로 간주되고 있다(봉미선, 2011). 이어 1934년 미국의 통신법(Communication Act of 1934)은 보편적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법령화하여 ‘모든 미국인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무선의 미국 내 및 해외 통신 서비스를 적절한 설비와 합리적인 요금으로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것’을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로 명시하였다(47 U.S. Code §151).

1996년에 발표된 미국 텔레커뮤니케이션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에서는 통신 서비스가 진화하는 정도(evolution level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통신 서비스까지 보편적 서비스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47 U.S. Code §254. Universal service). 미국의 사례를 따라 1996년을 전후로 하여 유럽 국가들도 보편적 서비스를 EU 차원은 물론, 각국의 통신법에 반영하고 미국처럼 새로운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인정 할 수 있는 근거까지 포

합시켰다(이상규, 2007) 가령, 유럽위원회(European Council, EC)의 다양한 지침(directives)을 국내법에 반영할 의무가 있는 EU 회원국으로서 영국은 2002년 EC에서 발표한 ‘보편적 서비스 지침(Universal Service Directive, USD)’을 근거로 하여 2005년 ‘보편적 서비스 의무(Universal Services Obligation, USO)’를 마련하였다. Ofcom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 검토 보고서(2006)에 따르면 보편적 서비스는 시장에서 배제되는 취약계층의 고객 또는 외딴 지역 거주민(vulnerable customers and people in remote areas)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Ofcom, 2006).

구체적으로 Ofcom의 보편적 서비스 의무 보고서에서는 공중전화 부스, 장애인 대상 서비스, 인터넷 접속 제공(Provision of a connection capable of functional internet access) 등 세 가지를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하고 영국 내 통신사업자에게 이들을 제공하도록 하였다(Ofcom, 2006). 이에 따라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전화선, 저소득층 대상 특별 저가 통신요금, 공중전화 부스, 장애인용 특별 서비스 등의 전국적 보급이 보편적 서비스 정책의 결과로 시행되었다.

2.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

통신에서 보편적 서비스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기본적 통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서비스에 대한 접근 또는 보급률 증대가 주요 목적이다(방석호 · 정상조 2004, p.704). ‘보편적’이 의미하는 바는 이용자의 사회 경제적 수준, 신체적 조건, 거주 지역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각국은 법으로 보장하는 기본적 통신 서비스를 기술발전, 서비스 보급 또는 대중화 정도, 공익적 목적 여부 등을 고려해서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김대호, 2009, p.10). 따라서 보편적 서비스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가령, 선진국에서는 보편적 서비스의 일환으로 브로드밴드 인터넷 보급 사업을 수행하지만, 전화보급률이 낮은 개발도상국에서

는 공중전화의 보급이 보편적 서비스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국가별로 통신 분야의 보편적 서비스는 그 정의를 조금씩 달리할 수 있으나 대상과 비용, 지역의 보편성 등 핵심적 요소가 반영되며 이상규(2007)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1〉 주요 국가의 보편적 서비스 정의

국가	보편적 서비스 정의
유럽연합(EU)	모든 이용자에게 지정된 최소 범위의 서비스를 적절한 요금에 제공하는 것
영국	영국의 모든 최종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적절한 요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미국	미국의 모든 이용자들에게 통신서비스를 적절한 요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일본	국민 생활에 필수적이므로 일본 전역에서 널리 제공될 수 있어야 하는 것
한국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에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업무

출처: 이상규(2007). “통신서비스의 보편성과 융합,” 〈정보통신정책학회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44-45 일부 수정

국내에서는 1996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조(정보화시책의 기본 원칙) 3항에서 정보통신 기반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 4항에서 지역적, 경제적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보편적 의무 제공 등을 위한 제반 시책을 정부가 강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편적 서비스의 핵심적 내용이 최초로 법제화되었다(윤호진 외, 2007)¹⁾.

이후 1998년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보편적 의무의 제공 등)에서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좀 더 구체적 근거 규정을 도입하였고,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고시를 차례로 정비하여 2000년부터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1항에서는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편적 의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

1) 그 외 조항은 민간투자의 확대와 공정경쟁 촉진(1항),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의 수립·시행(2항), 개인의 사생활 및 지식소유권의 보호와 각종 정보자료의 안정성 유지(5항), 국제협력의 촉진(6항)이다.

제3항에서는 보편적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은 외국 사례와 유사하게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정도, 전기통신 역무의 보급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증진, 정보화 촉진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는 2019년 현재 보편적 서비스를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서비스 등의 유선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 접속 서비스,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 감면 서비스로 정하고 있다. 이중 인터넷 가입자 접속 서비스는 이용 현황, 보급 정도 및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속도와 그 제공 대상을 정하도록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4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할 전기통신 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제5항은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손실을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통신 분야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범위, 제공사업자의 선정, 제공방식, 손실금 산정방법 및 재원조달 방안, 손실금 분담 사업자의 범위, 분담기준, 분담 면제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규정이 필요한데, 이에 관한 내용은 ‘보편적 역무 손실 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에서 규정한다. 만약 방송 분야에도 보편적 서비스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와 유사한 조항이 필요하다.

제 2 절 방송 분야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

1. 도입배경

보편적 서비스의 기본 개념은 보편적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필수적 공공재화에 대한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하는 것이다(곽정호, 2005).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인해 통신 분야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이 확장되는 한편, 방송 분야에서

는 방송의 상업화, 유료화 추세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에 대한 논거가 미약해지면서 방송에서도 시청자 복지를 위해 통신처럼 기본적인 방송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김대호 2009).

1980년대 후반 이후 방송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경쟁 도입 이후 상업방송이 성장하면서 사업자 간 갈등으로 인한 시청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방송 분야에서 보편적 서비스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미국은 통신 분야에서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였으나, 방송 분야에서는 FCC가 1975년에 도입한 안티 사이퍼닝 규제가 연방법원에서 위헌 판별을 받은 이후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심석태 2007).²⁾

국내에서는 2007년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도입 전후 통신 분야의 보편적 서비스와 방송 분야의 보편적 서비스를 비교하면서 보편적 서비스를 어떻게 방송 분야에 도입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기 시작하였다(정인숙, 2006; 정용준, 2006; 김영주, 2008). 제도 도입 이후 2010년 전후에는 보편적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제도화된 ‘보편적 시청권’과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사업자의 권리와 저작권 관련 논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 자체의 법적 문제점 위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2015년 이후부터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구체적 시행령과 고시 등의 법령 개정 방향에 관한 정책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주성희 · 임세진 · 정은진, 2015; 심홍진 · 육은희, 2016; 노창희 · 남승용 · 윤금남, 박정인, 2017).

2) FCC의 안티 사이퍼닝 규정은 3년에서 10년 이내에 제작된 장편영화, 5년 이내 방송된 인기 스포츠 경기, 5년 이내에 방송된 적이 없는 스포츠 경기, 서로 연관되거나 주요 배경이 겹치는 지상파 시리즈 프로그램 등을 유료로 방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인기 콘텐츠를 유료화하여 대다수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콘텐츠를 소수의 유료 시청자들이 흡수[사이퍼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심석태 2007, p.265).

2.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

보편적 시청권 개념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송의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디어의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의 구현은 방송 산업의 활성화와 시장 내 경쟁 촉진 등이 중요한 정책 목표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정책 목표로 추구하고 있는데(김영주 2008), 보편적 서비스가 추구하는바 즉, 최소한의 필수적 서비스에 대한 모든 국민의 접근 보장은 결국 국민 또는 공공의 이익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과 과거 방송에 적용되던 공익성의 개념이 종종 혼용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이상식, 2003).

방송에서 공익성은 방송 주파수의 희소성과 방송 전파의 침입성, 편재성 등에서 비롯되는 방송의 공공성과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방송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방송의 공익성은 방송의 공적 책무, 공정성, 콘텐츠의 내용 규제, 콘텐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송사업 진입, 소유 등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한다. 이와 달리,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는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 국민적 관심이 큰 콘텐츠를 독점중계하려는 상업방송의 폐해를 줄이려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본적 방송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라는 형평성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봉미선, 2011, 정용준, 2006). 방송법 제6조에서 지칭하는 방송의 공익성은 방송 내용의 공익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추상적 개념의 공익성은 보편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방송법 제1조의 총칙 및 방송법 제5조의 공정 책무가 지향하는 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 서비스는 보편적 시청권에 관한 제76조를 제외하면 방송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통신 분야에서 보편적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모든 이용자가 어느 지역에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전기통신서비스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익적 성격의 접근권이다. 그러나 방송 분야에서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구현되는 방식은 통신과 다소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는 방송과 통신의 근본적 차이에서 비롯된다. 방송 분야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논의는 통신 분야로부터 비롯되었

다고 하지만, 전통적으로 통신은 가치중립적인 일종의 용기(vessel) 또는 통로 역할을 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물리적 접근이 중요시되는 반면, 방송은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를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와 정보가 중요한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즉, 방송에서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통신처럼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정보와 콘텐츠에 대한 접근까지 포함해야 한다(곽정호, 2005).

이때 방송에서 ‘콘텐츠에 대한 접근(access)’은 곧 ‘시청(viewing)’을 의미하므로, 국내에서는 보편적 ‘접근권’보다는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였으며, 법률로써 명문화된 것도 보편적 접근권이 아닌 시청권이다. 국내에서도 방송 분야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초기에는 서구처럼 보편적 접근권(universal access)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심석태 2007). 실제로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국내에 도입할 당시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는 보편적 접근권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2006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법안 심의 및 위원회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용어로 바뀐 것으로 알려져 있다(윤혜선, 2010). 송해룡 외(2008, p.56)에 따르면 방송에 관한 규정이므로 접근권보다는 시청권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³⁾ 그러므로 보편적 접근권은 콘텐츠에 대한 시청을 넘어서 방송 서비스 자체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포함하는 좀 더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윤혜선, 2010).

보편적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나 정책 당국이 부담하는 일종의 의무 개념이라고 한다면, 보편적 접근권은 이용자인 시청자의 시각에서 그러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측면에서 두 개념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에 대한 접근은 바로 콘텐츠 시청을 의미하므로 방송에서의 보편적 접근권은 콘텐츠 시청권과 방송

3) 현재까지도 보편적 시청권에 관한 국내 연구들의 영문 제목에서는 보편적 접근권(Universal access righ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윤혜선, 2010; 봉미선, 2011; 노창희 외, 2017).

서비스 접근권이 포함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방송의 보편적 접근권 혹은 보편적 시청권은 서비스 제공자, 즉 방송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가 아니라 서비스의 이용자 즉, 방송시청자가 방송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심석태 2007).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방송의 공익성은 좀 더 추상적인 개념으로 방송의 공공적 성격에서 비롯되며 국민과 공공의 이익 추구라는 목표 하에 방송의 보편성과 다양성, 평등성, 독립성 등의 개념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방송의 보편성에는 보편적 서비스, 보편적 접근권, 보편적 시청권이 포함된다. 보편적 접근권에는 서비스 자체에 대한 물리적 접근권과 특정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내용적 접근권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리적 접근은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을 의미하며, 내용적 접근은 사회 구성원으로써 기본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보편적 콘텐츠에 대한 시청권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편적 시청권’의 명칭은 여기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물리적 접근을 보장해야 하는 기본적 방송 서비스 즉, 보편적 방송서비스는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서비스라고도 개념 정의 할 수 있으나, 통신에서처럼 보급 정도와 기술발전, 공익성 여부 등을 따져서 시대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보편적 시청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 역시 당시의 사회, 문화,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청자의 보편적 접근 및 시청 권리가 침해받는 원인이나 대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통신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사회의 경제적 수준, 기술발전 및 매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보편적 접근권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판단과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 보편적 접근권 및 시청권의 보장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영업권과 재산권의 행사가 제약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김대호, 2009).

제 3 절 단편보도권

국제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 경기의 중계 과정에서 특정 방송사업자가 배타적인 독점중계권을 행사하게 되면 일반 국민은 경기중계에 대한 접근권이 차단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뉴스를 통해서도 경기의 중요한 장면에 대한 영상을 시청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독점중계권을 가진 한 방송사가 스포츠 경기의 보도용 자료화면을 다른 방송사에게 제공하면서 정작 경기 내용의 주요 장면이 포함되지 않은 주변적인 영상을 제공하여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독일에서는 상업 방송의 등장과 함께 이러한 배타적 중계권의 행사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와 의견의 다양성이 침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편적 접근권과 함께 단편보도권 제도를 도입하였다.⁴⁾

단편보도권(Kurzberichterstattung, short coverage)은 방송과 사상의 다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접근권 또는 국민적 관심행사의 중계 시청권과 다소 구별되는 개념이다. 보편적 접근권은 대다수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 행사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 수 있게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통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의식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단편보도권은 일반적으로 관심이 높은 행사나 사건에 대해 독점중계권을 가진 방송사의 보도에 더하여 여러 정보원으로부터의 다양한 보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보도 프로그램에서 주요 행사에 대한 자료화면 취재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시청권과 함께 논의된다(최우정, 2011).

독일에서는 1998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유상단편보도권과 관련된 판결을 내림에 따라 주간방송협약((Rundfunkstaatsvertrag, RStV, Interstate Broadcasting Agreement) 제5조로 단편보도권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되었다. 단편보도권의 대상은 대중이 관심을 가질만한 공개적 행사와 중요한 관심 사안들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

4) 독일에서 단편보도권의 도입 배경과 구체적인 사례는 최우정(2011)을 참조할 것

으나, 공개적 행사의 경우 스포츠 행사, 전시회, 연극 공연 등을 의미하며 중요한 관심 사안은 자연재해, 사건 사고 등을 의미한다(최우정, 2011, p.144). 단편보도권은 배타적 중계권을 가진 방송사업자 또는 행사를 주최자의 재산권, 주거권, 직업의 자유 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그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주요 행사나 사건 특히 스포츠 경기 그 자체는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며, 단편보도권을 통한 다양한 의사의 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주최자의 권리 행사보다 우선한다(최우정, 2011).

독일 주간방송협약 제5조는 단편보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방송사업자가 ‘그 정보가 공개적이고 일반적인 관심에 해당하는 행사나 사건(functions and events which are open to the public and of general interest)’에 대해 단편 보도의 목적으로 ‘무료로(free of charge)’ 취재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행사에 대한 접근권, 짧은 영상의 제작, 전송 및 녹화, 그리고 이 영상물을 1분 30초 이내의 단편보도를 위해 이용하고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게 전송할 권리를 포함한다(RSvT§5(1)).

일반적 사건이나 사고가 아니라, 전문적으로 조직하여 이루어지는 행사에 대해서는 입장료 또는 단편보도권을 행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단편보도를 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행사주최자 또는 독점적 중계권자의 직업의 자유를 과잉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최우정, 2011, p.148). 또한 단편보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업자는 비용을 지불하고 단편보도권을 행사한 사업자의 신호 및 기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 그 비용은 독점중계권 계약금에 상응하는 고액의 대가 아니며, 일반적인 보도 취재에 소요되는 비용 수준의 대가이다(RStV§5).

독일의 주간방송협약은 또한 행사 주최자 및 독점적 중계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편보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다양한 조건, 가령 행사 며칠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하며, 보도용 화면은 얼마 정도의 분량이어야 하는지, 어떤 프로그램에서 얼마동안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주간방송협약 제5조 제10항과 제11항에서는 단편보도권을 행사하는 방송사업자가 공간적,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단편보도권을 실제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업자에게 적당한 비용을 지불받고 그 신호와 녹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행사주최자가 보도와 관련하여 하나의 방송사업자와 계약을 했다면 적어도 또 다른 하나 이상의 방송사업자가 단편보도권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단편보도권 자체의 다양성도 보장한다. 아울러 방송협약 제5조 제7항에서는 행사주최자와 단편보도권의 행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1025조의 중재절차에 따라야 하며 설사 합의가 실패하거나 중재절차가 실패하더라도 단편보도권의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RStV§5).

제 3 장 국내외 보편적 시청권 제도 사례

제 1 절 국내외 보편적 시청권 제도

1. 도입 배경과 경과

2007년에 제도화되어 국내에서 시행되어 온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인기 국제 스포츠 행사가 갖는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가능한 대다수 국민의 시청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은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의 형성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을 이끌어내려는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면에는 또한 방송사 간 경쟁 심화 때문에 발생하는 과도한 국제경기 중계권 유치 경쟁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불필요한 중계권료 상승, 유료방송의 국제경기의 독점중계를 방지하기 위한 무료 지상파 방송사들의 노력도 존재한다.

통신 분야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와 다소 차별되는 방송 분야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유럽에서 먼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송에서 공영 또는 국영 방송에 의한 독점이 완화되고 유료방송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방송사업자 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월드컵, 올림픽처럼 높은 시청률을 담보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를 유료방송이 독점하려는 현상이 나타나자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은 시청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입된 것이 바로 국내에서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라고 불리는 ‘지정 행사 목록(listed events)’ 또는 ‘주요 행사(Major events of national Interest)’ 제도이다.

유료방송과 무료방송 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유럽의 사례와 달리 국내에서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논의하게 된 계기는 지상파 3사 간의 중계권 경쟁이다.⁵⁾ 그러던 중 2005년에 스포츠 마케팅 업체인 IB스포츠가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경기(MLB)의 중계권과 아시아 축구연맹(AFC) 주관 경기의 국내 독점중계권을 획득하면서 중계권을 둘러싼 사업자 간 갈등이 지상파사업자간 중계권 분쟁에서 지상파 대 비지상파의 갈등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비지상파의 중계권 독점 가능성이 현실화됨에 따라 지상파 3사는 본격적으로 보편적 시청권의 법제화를 주장하기 시작하여 2007년 방송법 개정에서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방송법으로 편입되었다. 당시에 이미 국내 유료방송 가입률이 높은 수준이었으므로 유럽 국가들이 지정 행사 목록과 관련하여 강조하는 주요 행사에 대한 ‘무료 접근’에 대한 내용이 보편적 시청권의 정의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국내에서는 대신 ‘방송 신호의 도달 범위(커버리지)’를 기준으로 유료방송의 중계권 경쟁을 차단하는 접근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다.

현재 방송법령에 명문화되어 있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은 스포츠 경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내용은 방송사업자 간의 프로그램 거래와 중계권 확보에 비중을 두고 있다. 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방송법 제76조 역시 중계권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거래 관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 조항이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한 규제의 근거로 기능한다.

〈표 3-1〉 국내 보편적 시청권 제도화 경과

시기	주요내용
2005. 10.	박형준 의원을 대표로 하여 국회의원 15명이 보편적 접근권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 법안의 주요 목적은 방송사업자 간 공정 거래질서 확립임
2005. 10.	손봉숙 의원이 방송법 일부개정 법안을 제출하고 방송 분야에서 보편적 접근권의 개념을 법령에서 최초로 정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지상파방송사업자를 주요 행사의 우선 중계권자로 지정할 것을 제안

5) 국내에서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사업자 간 분쟁 사례에 대해서는 박성철(2010), 송해룡 외(2008), 최은희(2012)를 참조할 것

시기	주요내용
2006. 8.	최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제출. 주요 스포츠 경기 중계방송에 대해 방송사 간 순번제 도입을 제안
2007. 1.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이 본회의 통과(법률 제8301호, 2007. 1. 26)
2008. 5.	방송사업자와 중계방송권자의 금지행위 및 시정조치 등, 방송법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8. 8.	동·하계 올림픽과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월드컵을 90%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한 방송사가 중계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2009. 9.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과 축구 국가대표 출전 A매치(월드컵 예선 포함), 아시안게임을 국민 70%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사가 중계하도록 기존 고시를 폐지하고 새로 고시를 제정
2011. 12.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의 세부 기준에 대한 고시 제정
2016. 7.	금지행위 유형을 시행령에서 상향 입법화하여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
2016. 12	국민관심행사 등의 고시 체계 정비 및 관심행사에 대한 주기적 검토 조항 신설

출처: 주성희 외(2015), pp.28-29의 내용을 업데이트; 송해룡 외(2008)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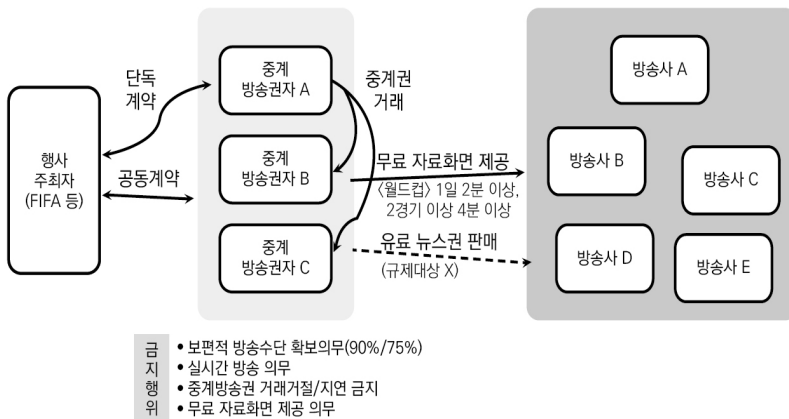
중계방송권의 거래 및 분배 관련 규정,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금지행위 조항들은 방송법에 따라 중계권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중계권자의 권리 행사 제한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따라서 방송사업자의 영업 및 편성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는 공동계약과 순차편성은 강제적 의무보다는 권고 형식을 취하고 있다. 가령, 중계방송권 거래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판매가나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 차원에서 금지하고 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국민적 관심행사의 중계방송권자가 국민 대다수에 도달 가능한 보편적 방송 수단을 확보하고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대상이 되는 행사는 실시간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나친 중복편성으로 인한 시청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는 순차편성은 역시 ‘권고’의 대상이다. 아울러, 국민적 관심행사에 관한 정보 제공을 소수 방송사가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국민적 관심행사의 중계방송권자가 경기의 일부 장면을 중계권을 갖지 못한 방송사업자[비중계권

자]에게 뉴스보도의 자료화면으로써 무료로 제공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상의 내용을 도식화하면 국내에서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은 다음 그림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3-1] 국내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



출처: 주성희 외(2015), p.32 ;방송통신위원회 내부자료 재인용

2. 제도 현황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도입을 위해 방송법 제2조(정의)의 제25호에서 보편적 시청권의 정의를 내리고 제76조에서는 프로그램 공급 및 중계권 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제76조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하여 방송법 시행령과 고시는 국민적 관심행사의 중계권 거래와 관련된 금지행위의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행정규칙을 통해 제도적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방송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가. 방송법

1) 보편적 시청권의 정의

방송법 총칙 제2조(용어의 정의) 제25호는 보편적 시청권을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 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법 제76조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 행사'를 축약하여 '국민관심행사 등'이라 지칭하고 있다.

이 국민관심행사를 구체화하는 행정규칙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 행사> 고시는 2019년 현재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대상이 되는 국민관심행사를 동·하계 올림픽, 동·하계 아시안 게임, 성인 남녀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월드컵 경기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로 국한하고 있다.⁶⁾

즉, 비록 방송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에 '그 밖의 주요 행사'도 포함되어 있으나, 관련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현행 방송법에서 실제로 지칭하는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체육경기 행사에 대한 중계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다.

2) 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방송법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는 2007년 방송법 개정 이전에는 방송프로그램의 공급에 대해서만 규정해 오다가⁷⁾ 2007년 방송법 개정 이후부터 프로그램의 중계권 거래와 관련된 보편적 시청권 내용이 추가된 조항이다. 2007년 이후 새롭게 더해진 제2항에서는 방통위가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관심행사 등을 고시해야 하며 이 고시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더 나아가 제3항에서는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 역시 국민관심행사 등의

6) 해당 고시가 2008년에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하계 올림픽과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으로만 한정되어 있었다(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07호, 2008. 8. 7. 제정)

7) 2007년 1월 개정 이전의 제76조는 프로그램의 공급이라는 이름하에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는 단일 문장으로 구성된 조항이었다.

중계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방통위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규정 위반에 대해 심의를 하고 6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한다.

3)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 설치

한편, 국민관심행사 고시의 개정 업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법 제 76조의 2에서는 법정위원회로서 7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있다.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는 고시 개정 등의 지원 업무 외에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에게 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을 권고하거나(법 제76조의4), 경기 중 채널별, 매체별 순차편성을 권고할 수 있다(법 제76조의5).

4)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방송법 제76조의3은 제7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위반하는 행위 즉,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을 저해하는 금지행위에 대해 규정한다. 여기에는 (1) 중계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국민이 국민적 관심행사 등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수단을 확보하지 않는 행위 (2) 중계방송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 등을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않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나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뉴스 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에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이 네 가지 금지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다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상의 금지행위에 대해 해당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두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금지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들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

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계방송권의 계약금 총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방송법 시행령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금지행위 위반 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의 종류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에 대해 방송법보다 구체적인 수준의 규정을 제시한다.

시행령 제60조의3(금지행위)에서는 중계방송권자가 국민적 관심행사의 중계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보편적 방송수단이 최소한 국민의 100분의 60이상에 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좀 더 구체적인 비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다. 시행령 제60조의3 제2항에서는 별표 2의2를 통해 방송법 제7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네 가지 금지행위 가운데 제3호에서 지정하는 “구매협상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다시 네 가지 목으로 정의하여 설명하고, 법 제76조 제1항의 나머지 제1, 2, 4호에 대항하는 금지행위의 세부 기준을 별도의 고시로 위임한다.⁸⁾

방송사업자나 중계권자가 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제60조의4(시정조치)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의 중지, 개선계획의 제출 및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금지행위 위반을 조사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계약서, 판매 관련 서류, 중계방송권 확보와 관련된 업무현황 자료, 그 밖에 국민관심행사 등의 계약과 관련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의 5(자료제출). 방송법 시행령의 별표 5 과징금 부과기준의 II는 시정조치의 병과, 가중 또는 감경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어떠한 경우든 과징금은 방송법에서 정한 중계방송권 계약금의 100분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8) 별표 2의2에서는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금지행위의 구체적 내용뿐만 아니라, 금지행위 위반이라고 간주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도 열거한다. 이들은 재난방송 편성, 국가적 또는 전 세계적 비상사태, 다수의 세부 행사로 구성되어 전체 행사를 실시한 편성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의 판결과 결정에 따른 경우 등이다.

다. 고시

시행령의 하단인 고시에서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것으로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 행사〉 고시(이하 국민관심행사 고시)와 시행령 별표 2의2에서 다루지 않는 나머지 금지행위의 세부 기준을 다루는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 기준〉 고시가 있다.

국민관심행사 고시에서는 국민관심행사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국가적 차원의 주요 행사’라고 다시 정의하고 있는데, 실제 제3조(국민관심행사의 종류)에서 열거하고 있는 행사들은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국내외 체육경기대회뿐이다. 국민관심행사 고시는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고시 제4조) 이때 타당성을 검토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편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 기준〉 고시는 방송법 시행령 제60조의3 제2항, 별표 2의2에서 열거하는 금지행위 판별을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실시간 방송의무의 예외 사유가 적용되는 상황, 중계방송권의 거래 거부 또는 지연을 구성하는 요건들, 가령 구매 협상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와 중계방송 가격을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제시하는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구매자의 계약상 지위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판매조건이란 무슨 의미인지, 구매자별 조건 차별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시행령 별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을 설명한다.

또한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무료로 제공할 때 무료 자료화면의 분량과 비차별 원칙, 자료화면 제공 중단의 정당한 사유를 규정한다.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 기준 제5조에 따르면 중계방송권자는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등에게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제공하여야 하며, 경기의 개별 종목별로 30초 이내에서 1일 최소 4분 이상의 분량에 해당하는 자료화면을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관심행사 고시와 마찬가지로 보편적 시청권의 금지행위 고시 역시 2017년 1월 1일부터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토하여 개선해야 한다. 고시의 별표에서는 가시청 가구수의 계산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2개 매체 이상의 방송 수단에 중복 가입한 경우에는 단수로 계산한 뒤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의 유료방송 중복가입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라. 규칙

방송법과 시행령, 고시 외에 2016년 12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되어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는 7인의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되며 주요 직무는 국민관심행사 선정, 중계방송 순차편성 권고, 중계방송권 공동계약 권고, 보편적 시청권 보장 관련 위원회 규칙 제·개정 등이다.

제2절 해외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

보편적 서비스는 미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되었으며, 미국 방송통신정책의 기본 목표는 시장 내 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와 함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다(김영주, 2008). 이와 달리 방송 분야에서 보편적 서비스는 유럽에서 먼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방송에서의 보편적 서비스는 유료 TV에 가입하지 않은 시청자를 포함하여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 국가적 또는 사회적 의미가 있는 주요 사안(혹은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에 대한 방송 시청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고 공통의 경험과 공동체 의식, 문화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주요 행사의 중계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서비스 및 콘텐츠 자체에 대한 접근 권리라는 점에서 통신 분야의 보편적 서비스와 차이가 있다.

비록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명칭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럽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특히 유럽공동체(EU)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

는 행사의 방송(Broadcasting of events of major importance for society)에 관한 지침(Directives)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각 회원국 정부가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스포츠 등의 행사에 대해 국민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확산에 큰 기여를 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9).

1. 지정 행사 목록과 주요 행사의 중계 제도

가. 영국

국내에서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이름 하에 인기 스포츠 경기의 중계방송을 가능한 많은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권 독점을 제한하고 있으나, 영국에서는 ‘지정 행사 목록(Listed events)’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1996년 개정된 영국 방송법(Broadcasting Act 1996)에 따라 ‘스포츠 및 기타 지정된 행사 목록에 대한 규약(Code on Sports and Other Listed and Designated Events)’에서 무료 방송이 송출해야 하는 주요 행사를 지정하고 이를 지정 행사 목록으로 공표하였다. 지정 행사 목록에 포함된 행사들의 중계방송은 영국 인구의 95%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무료 지상파 방송에서 중계해야 한다(Ofcom, 2010).

영국의 지정 행사 목록은 1996년 방송법 개정 이전에도 존재하던 것으로, 1991년부터 유료방송 서비스의 독점을 금지하는 행사 목록을 고시하기 시작한 것이 시초이다. 1996년 방송법 개정은 지정 행사를 국민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지상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다. 영국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행사에 대해 유료방송 서비스의 독점으로 인한 시청권 제한을 막으려 한다는 점에서는 국내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와 비슷하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지정 행사 목록 제도의 시행을 위해 방송서비스를 두 분류로 나누고 있으며, 대상이 되는 스포츠 행사 역시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영국의 지정 행사 목록에 포함되는 행사들은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 장관(Secretary of State for Culture Media and Sport)이 언제나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반드시 BBC와 웨일즈당국(Welsh Authority), Ofcom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나. 호주

영연방(The Commonwealth) 국가인 호주는 영국의 영향을 받아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법제화하고 있는데 영국처럼 주요 스포츠 행사의 방송에 대한 법적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특히 1992년 방송서비스법(Broadcasting Services Act)에 따라 ‘안티 사이퍼닝 제도(anti-siphoning scheme, 흡수방지법)’와 ‘안티 호딩 제도(anti-hoarding scheme, 사장방지법)’를 도입함으로써 호주식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마련하였다

사이펀(siphon)은 연통관을 통해 액체를 빨아들여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안티 사이퍼닝은 유료방송이 인기 있는 스포츠 경기의 중계권을 빨아들여[독점적 중계권 행사] 나머지 국민의 시청권을 침해하는 행위[사이퍼닝]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와 유사하며, 무료 지상파방송이 제공해야 하는 행사 목록인 안티 사이퍼닝 리스트를 만들어 공고하는 점도 비슷하다. 2005년부터는 안티 사이퍼닝 행사 시작 12주 전까지 지상파 방송이 중계권을 획득하지 않으면 해당 행사의 중계권이 자동적으로 안티 사이퍼닝 리스트에서 제외되어 상업방송이 중계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동 삭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최근에는 자동 삭제 기간이 26주로 늘어났다(Department of Communication and the Arts, n.d.).

안티 호딩 제도는 안티 사이퍼닝 보다 늦은 1999년도에 도입되었는데, 여기서 호딩(hoarding)은 쌓아놓는 것, 사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행사의 독점중계방송권을 확보해놓고 실제 경기 중계를 하지 않고 방송권을 사장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안티 호딩 제도는 이러한 호딩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으로, 인기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을 확보한 방송사가 중계방송을 충분히 제공하여 국민들이 관련 경기를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종의 ‘의무제공(must offer)’제도이다. 방송 중계권을 보유한 방송사에게는 안티 사이퍼닝 목록에 기입되어 있는 스포츠 행사를 실시간으로 생방송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하면 최소한의 비용(nominal cost)을 받고 다른 국가

기간방송사에 제공할 의무가 부과된다.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주요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을 가진 방송사나 국가 기간방송사는 실시간으로 편성하지 않는 행사의 중계권을 계약을 통해 2차 중계권을 가진 방송사 또는 다른 기간방송사에게 제공해야 한다(Parliament of Australia, 1998).

호주의 안티 사이퍼닝, 안티 호딩 제도는 통신미디어위원회(the Australia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MA)가 집행을 담당하며 2015년부터는 통신정보기술예술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의 후신인 통신예술부(Department of Communications and the Arts) 장관이 안티 사이퍼닝 리스트를 개정한다.

다. 독일

독일의 주간방송협약(Rundfunkstaatsvertrag, RStV) § 4 주요 행사의 중계(Übertragung von Großereignissen) 조항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정 행사’이라는 명칭 대신 ‘주요 행사(Großereignissen, major event)’라고 표현한다.

RStV § 4 (1)항에서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사(Ereignissen von erheblicher gesellschaftlicher Bedeutung)는 해당 방송사, 또는 합리적인 조건(angemessenen Bedingungen)으로 중계권을 획득한 제3의 사업자가 그 행사를 적어도 하나의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무료 TV 프로그램(in einem frei empfangbaren und allgemein zugänglichen Fernsehprogramm)’으로 행사 개최와 동시에 방송하거나, 만약 여러 개별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어 한 채널에서 방영이 불가능하면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중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주요 행사의 목록은 독일 연방의 모든 주가 참여하는 주간협약을 통해서만(nur durch Staatsvertrag aller Länder) 변경이 가능하다.

보편적 시청권은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스포츠 행사에 대한 중계권 확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와 시청권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지만, 독일의 RStV § 5에서는 ‘단편보도권(Kurzberichterstattung)’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앞 절에서 서술한 것처럼 단편보도권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고 대중이 관심을 갖는 행사나 사건에

대해 다양한 뉴스원의 시각에서 짧은 보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방송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다(최우정, 2009), 단편보도권은 방송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독점중계권을 가진 방송사가 대중이 관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 편향된 시각으로 단독 보도하는 것을 막고 다양한 시각의 보도가 제공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단편보도권은 행사나 사건에 대한 접근권, 짧은 생방송권, 단일 뉴스 보도를 위한 녹화권과 이를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하며, 단편보도권의 행사는 다른 헌법적 권리 특히 저작권과 사생활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권리는 단편보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행사개최자 또는 주관자와 합리적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행사장에 입장하여 직접 취재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때 취재물은 짧은 뉴스 형태여야 하며 비슷한 성격의 내용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행사라면 최대 1분 30초 이내여야 한다. 이 권리를 행사하려는 방송사업자는 적어도 행사 10일 전에 행사권자에게 통고해야 하며, 행사개최자나 주관자는 적어도 5일 전에 방송신호의 전송 또는 녹음을 위해 충분한 공간과 기술 장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라. 프랑스

프랑스도 역시 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의 지정행사 조항에 따라 2000년 커뮤니케이션법(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개정 시 무료 텔레비전을 통한 중요한 행사(Les événements d'importance majeure)의 중계방송에 관해 규정하는 제20-2항을 새롭게 마련하여 영국과 비슷하게 주요 행사에 대한 시청권 보장을 명문화하였다.

프랑스 커뮤니케이션법 제20-2항의 주요 내용은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행사를 무료 방송채널에서 시청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의 독점중계권 획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커뮤니케이션법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주요 행사 목록을 프랑스 최고 시청각 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CSA))령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이때 시청각 위원회가 목록 선정에 사용하는 기준은 공익fonction de l'intérêt du public)인데,

사회적 중요성을 판단하는 좀 더 구체적 기준으로서 (1) 스포츠나 다양한 행위를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 내에서 일반적인 공명(*general resonance*)이 있으며, (2) 문화정체성의 촉매로서 중요한 문화적 중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3) 국제 경기나 토너먼트의 경우 국가대표팀이 참가하거나 (4) 해당 행사가 역사적으로 무료 텔레비전방송에서 중계되어 많은 시청자들이 시청해왔는지 여부를 고려한다(European Commission, 2019).

2. 중계권 획득 자격 및 주요 행사 목록

가. 영국

영국에서는 1996년 방송법 개정 이후 Ofcom의 허가가 없는 한, 지정 행사 목록에 포함된 스포츠 중계나 행사에 대한 생방송 중계권을 한 방송사가 독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목록에 포함된 행사의 중계가 동시 생중계되지 않더라도 허용한다(Ofcom, 2019).

Ofcom은 방송법에 따라 지정 행사 목록의 경기의 중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서비스를 두 범주로 구분한다. 첫 번째 범주(*the first category*)는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TV 또는 EEA(유럽경제지역, *European Economic Area*) 위성방송 서비스들이며, 두 번째 범주(*the second category*)는 나머지 TV 또는 EEA 위성방송 서비스들이다. 이때 두 범주의 서비스를 구분하는 조건은 우선 방송 신호의 수신에 아무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것, 즉 무료 수신 방송이어야 하며, 두 번째 조건은 서비스가 적어도 영국 인구의 95% 이상에서 수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범주에 속하는 채널은 Ofcom에서 공고한다(Ofcom, 2019).

서비스 범주와 별개로, 지정 스포츠 행사 역시 A 리스트와 B 리스트로 나뉜다. B 리스트는 1999년 개정에서 추가되었다. A 리스트에 속한 경기는 영국 전체 국민의 95%에 도달할 수 있는 커버리지를 확보한 무료 방송사 즉, 첫 번째 분류에 속하는 서비스들이 제공해야 하며, 2009년까지는 Channel 3(ITV1), Channel 4, BBC1, BBC2, Channel 5(Five)의 5개 방송 채널이 해당되었으나 2019년 현재는 14개 채널로 증가

하였다(Ofcom, 2010; 2019). 첫 번째 범주에 속하는 서비스는 A, B 리스트 행사를 모두 중계할 수 있으나, 다른 범주에 속하는 서비스(두 번째 범주의 서비스)가 행사 또는 행사의 동일한 부분을 생중계할 권리를 획득하지 않는 한 Ofcom의 동의 없이 A 리스트 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독점생중계 할 수 없다. 두 번째 범주의 서비스가 제공하는 영역은 첫 번째 범주의 서비스가 제공하는 영역의 전체 또는 대부분을 구성하거나 포함해야 한다. B 리스트에 속한 경기는 중계권을 획득한 방송사업자가 중계방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다른 방송사(qualifying broadcasters)에게 2차 중계권을 제공해야만 한다. 즉, 두 번째 범주의 서비스들은 B 리스트에 속한 행사의 중계권을 가질 수 있지만, 첫 번째 범주의 서비스가 2차 중계권과 하이라이트권을 갖는다. Ofcom은 지정 행사 목록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방송사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Ofcom, 2010).

〈표 3-2〉 영국의 지정 스포츠 행사(Listed sporting events)

A리스트	B리스트
종합경기 • 올림픽 경기(동계/하계/장애인) 축구 • FIFA 월드컵본선 • FA컵 결승 • 유럽축구 챔피언 결승 토너먼트 • 스코틀랜드 FA컵 결승 (스코틀랜드 지역) 경마 • Grand National(경마) • 더비(경마) 럭비 • 럭비 월드컵 결승 등 • 리그 챔피언십 결승 테니스 • Wimbleton 테니스 결선	종합경기 • 세계육상선수권대회 (IAFF World Championship) 럭비 • 6개국 럭비 토너먼트 테니스 • 결승을 제외한 Wimbleton 테니스 본선 (Non-Finals play) 크리켓 • 영국개최 테스트 매치 • 크리켓 월드컵(결승, 준결승, 개최국 경기) 골프 • 라이더컵 • 오픈 골프 챔피언십

출처: Ofcom(2010). Code on Sports and Other Listed and Designated Events1

Ofcom이 발간하는 ‘스포츠와 기타 지정 행사에 대한 규약(Code of sports and other listed and designated events)’에 따르면 Ofcom은 지정 행사 관련 규정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Ofcom, 2010). 첫 번째는 중계권을 획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무료 방송 채널이 다른 방송사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중계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지 여부이다. 두 번째 기준은 방송사업자가 중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시청자가 해당 경기의 생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충분히 취했는지 여부다. 세 번째 기준은 유럽경제지역(EAA)의 협약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마지막 기준은 유럽연합(EU)의 시청각 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s, AVMSD)이 추구하는 바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이다.

2019년 7월 Ofcom은 지정 행사 중계권 획득 자격을 확보한 방송채널이 확대되어 BBC1, BBC2, BBC4, CBBC, Cbeebies, BBC News, BBC Parliament, Cannel 3 network, ITV2, ITV3, ITV4, Channel 4, Film 4, More 4가 해당된다고 발표하였다. 방송사로 보면 3개 방송사(BBC, ITV, Channel 4)이며, 2009년 포함되었던 Channel 5는 도달률이 부족하여 제외되었다(Ofcom, 2019). 최근에는 전통적으로 인기 스포츠인 크리켓을 지상파 TV에서 중계하는 ‘크라운 주얼[Listed Events]’에 포함시키겠다는 선거공약을 노동당에서 제시하였으며(The Telegraph, 2019. 7. 17), 2019년 6월 현재 여성 스포츠와 패럴림픽 게임을 추가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1998년 이래 유지되어 온 지정 행사 목록의 개정을 검토하는 중이다(BBC, 2019. 7. 17.; Sportbusiness, 2019. 11. 26).

나. 호주

영국과 마찬가지로 호주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스포츠 경기의 방송중계권을 무료 지상파방송(Free-to-air television)에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호주의 안티 사이퍼닝 리스트 포함 여부는 첫째, 호주 국민이 참가하는 것처럼 국가적 중요성을 진작시키는 행사였는지, 둘째, 지난 5년 동안 무료 지상파방송이 해당 경기의 방송권을 획득한 적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호주 국민이 많이 시청하는 스포츠 이벤트인지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다. 안티 사이퍼닝 리스트는 한번 작성되면

최고 10년 동안 유효하다. 2010년에 작성된 리스트에서는 골프가 빠졌으며, 2021년 4월에 새로운 안티 사이퍼닝 리스트가 발표될 예정이다(Department of Communication and the Arts, n.d.).

안티 사이퍼닝 리스트에 수록된 경기는 무료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멀티채널에서 동시생중계 및 재방송이 가능하지만, 무료 지상파채널보다 디지털 멀티채널에서 먼저 방송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상업방송에 대해서는 안티 사이퍼닝 리스트에 포함된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 방송권을 우선적으로 획득하는 것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표 3-3〉 호주의 안티 사이퍼닝 리스트

종목	내용
올림픽	• 개회식, 폐회식을 포함한 동·하계 올림픽 경기
영연방 대회	• 개회식, 폐회식을 포함한 영연방 대회의 경기
경마	• 빅토리아 레이싱 클럽에서 주관하는 멜버른컵(Melbourne Cup) 경기
호주 풋볼	• 결승전을 포함한 호주 풋볼 리그 프리미어십 대회의 경기
럭비리그 풋볼	• 결승전을 포함한 내셔널 럭비 리그 프리미어십 대회의 경기 • 오리진 시리즈의 내셔널 럭비 리그의 경기 • 인터내셔널 럭비 리그 중 호주 성인대표팀이 출전하고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경기 • 럭비 리그 월드컵 중 호주 성인대표팀이 출전하고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에서 개최되는 경기
럭비 유니언 풋볼	• 국제 시합경기 중 호주 성인대표팀이 출전하고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경기 • 럭비 월드컵 토너먼트 경기 중 호주 성인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 럭비 월드컵 토너먼트 결승전 중 호주 성인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크리켓	• 호주 성인대표팀이 출전하며 호주에서 개최되는 시합경기 • 호주 성인대표팀과 영국 성인대표팀의 시합경기로 영국에서 개최되는 경기 • 하루짜리 크리켓 경기 중 호주 성인대표팀이 출전하고 호주에서 개최되는 경기 • Twenty 20 크리켓 경기 중 호주 성인대표팀이 출전하고 호주에서 개최되는 경기 • 인터내셔널 크리켓 위원회 하루 월드컵 준결승전, 결승전 중 호주 성인대표팀이 출전하고 호주,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경기

종목	내용
크리켓	• 국제 크리켓 위원회의 하루짜리 월드컵 결승전 중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경기 • 국제 크리켓 위원회의 월드 Twenty20 토너먼트 중 호주 성인대표팀이 출전하고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경기 • 국제 크리켓 위원회의 월드 Twenty20 토너먼트 결승전 중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경기
축구	• FIFA 월드컵 토너먼트의 호주 성인대표팀 출전 경기 • FIFA 월드컵 결승전 • FIFA 월드컵 예선 토너먼트 경기 중 호주 성인대표팀이 출전하고 호주에서 개최되는 경기
테니스	• 호주 오픈테니스 토너먼트 경기 • 국제 테니스 연맹의 데이비스컵 월드 그룹 테니스 토너먼트 경기 중 호주 대표팀이 출전하고 호주에서 개최되는 경기 • 국제 테니스 연맹 데이비스 컵 월드 그룹 테니스 토너먼트 결승 중 호주 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넷볼	• 국제 넷볼 월드컵 준결승 중 호주 성인대표팀 출전 경기 • 넷볼 월드컵 결승전 중 호주 성인대표팀 출전 경기
자동차 경주	• 포뮬러 1 월드 챔피언십(그랑프리) 레이스 중 호주에서 개최되는 경기 • 모토GP 레이스 중 호주에서 개최되는 경기 • V8 슈퍼카 챔피언십 시리즈의 베서스트 1000 각 경기

출처: Commonwealth of Australia(2010. 12. 21.). Broadcasting Services (Events) Notice (No.1) 2010

호주에서 주요 스포츠 행사에 대한 중계권은 무료 지상파방송인 호주공영방송 ABC(Australia Broadcasting Corporation)와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SBS(Special Broadcasting Service)가 획득할 수 있지만, 만약 이들의 방송이 호주 국민의 절반 (50%) 이상에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상파 상업방송도 방송 중계권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령, 2002년 FIFA 월드컵에서는 상업 지상파방송인 Nine network가 월드컵 중계권을 획득하고 Nine network가 커버하지 못하는 경기에 대해 SBS가 중계방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The Age, 2002. 3. 24.; The World Game(n.d; updated 2012. 9. 12.).

안티 사이퍼닝 제도의 행사목록에 포함된 경기들에 대해 이미 2017년부터 호주에

서는 미디어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축구, 크리켓, 럭비 유니온 월드컵을 제외한 경기 중 호주 밖에서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경기는 모두 삭제함으로써 국민적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기는 무료로 제공되도록 보장하고 그 밖의 경기는 안티 사이퍼닝 행사 목록에서 제거하여 유료방식이라도 이런 경기를 시청하려는 사람들의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Mumbrella, 2017. 5. 6.).

다. 독일

독일의 방송법에 해당하는 주간방송협약 RStV §4 (Übertragung von Großereignissen, Broadcasting of Major Events)의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사(Ereignissen von erheblicher gesellschaftlicher Bedeutung, events of significant social importance)들에 대한 중계권은 해당 방송사, 또는 합리적인 조건(angemessenen Bedingungen)으로 중계권을 획득한 제3의 사업자가 그 행사를 적어도 하나의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무료 TV 프로그램(in einem frei empfangbaren und allgemein zugänglichen Fernsehprogramm)’으로 동시, 또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방송될 때에만 인정된다고 하였다. 이때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란, 전체 독일 가구의 3분의 2 이상이 무료로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 외에는 별도의 조건이 없기 때문에 독일 내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구가 무료로 시청이 가능하다면 지상파가 아닌 유료 케이블 TV나 위성 방송도 주요 행사를 중계할 수 있다. 만약 방송사와 제3사업자 간에 ‘합리적인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당사자들은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민사소송법 §§ 1025의 중재절차에 따라 합의해야 한다.

주간방송협약 제4조 (2)항은 (1)항에서 언급하는 ‘주요 행사’가 무엇인지를 명시하고 있다. 독일연방의 주간방송협약에서 지칭하는 주요 행사에 속하는 스포츠 경기는 다음 표에 제시한 것처럼 동·하계 올림픽 및 축구 경기로, 다른 국가에 비해 해당되는 경기의 수가 적다. 이때 여러 개의 개별 경기로 구성된 행사는 각 개별 경기가 하나의 주요 행사로 간주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주간방송협약은 주요 행사의 중계 자체를 공영 방송사에만 적용되는 의무나 권리로 규정하지 않으며, 광고 수익이

있는 지상파 상업방송사도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수신할 수 있다면 중계권을 획득할 수 있다(RStV §4)

〈표 3－4〉 독일의 주요 행사 목록

종목	세부 종목
올림픽	• 동계 및 하계 올림픽
축구	• 유럽선수권, 월드컵 축구경기 개막전, 준·결승전 • 유럽선수권, 월드컵 축구 중 독일축구 국가대표팀 출전 경기 • 독일 축구협회컵 대회 준결승과 결승전 • 독일 국가대표 축구팀이 출전하는 축구 홈경기 및 원정 경기 • 유럽 축구클럽 챔피언십(챔피언스 리그, UEFA 컵) 결승 중 독일 축구클럽 출전 경기

출처: European Commission(2019. 4. 1). AVMSD - List of Major Events

독일의 주간방송협약에서는 방송사업자 간 중계권 협상 자체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방안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사업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맡기도록 한다. 그러나 사업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의 중재절차에 따르는 한이 있더라도 주요 행사의 실제 개최 이전에 중재에 합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좀 더 적극적인 시청자 권익 보호 장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또한 주요 행사 목록에 포함된 경기 수 자체가 적은 것도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사업자의 권리 침해 또는 방송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결과로 해석된다.

라. 프랑스

프랑스의 2004년 커뮤니케이션법 개정에서는 주요 행사의 중계방송을 제공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로서 ‘무료(오픈 액세스) 텔레비전 방송사업자(Editeur de services de télévision à accès libre, freeaccess television service)’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주요 행사를 송출할 수 있는 사업자는 시청자에게 시청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무료 채널이어야 하며, 해당 채널은 프랑스 전체 가구의 85% 이상에서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건부 텔레비전 방송사업자(conditional access television service) 즉, 무료방송이 아니거나 도달률이 85% 이하인 사업자는 주요 행사에 대한 독점적 중계권을 획득할 수 없다(European Commission, 2019).

프랑스 커뮤니케이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주요 행사는 21개에 달하며, 다른 국가도 주요 행사로 지정하고 있는 올림픽과 축구 외에도 럭비, 테니스, 레이싱, 사이클 등 프랑스에서 인기 있거나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경기들이 포함된다(European Commission, n.d.).

〈표 3-5〉 프랑스의 주요 행사 목록

종목	세부 종목
올림픽	• 하계, 동계 올림픽
축구	• FIFA 개최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경기 • 월드컵 개막전, 준결승 및 결승 • 유럽 축구선수권 대회 준결승 및 결승 • UEFA컵 결승전 중 프랑스 축구협회에 등록된 프랑스 축구클럽 출전 경기 •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 프랑스 축구컵(쿵 드 프랑스) 결승전
럭비	• 6개국 럭비대회 • 럭비월드컵 준결승과 결승전 • 프랑스 럭비 챔피언십 결승전 • 프랑스 럭비협회 등록 럭비클럽이 참가하는 챔피언십 결승전
테니스	• Ronald Garros 테니스 토너먼트의 남녀 단식 결승전 • 데이비스컵 및 페드컵 준결승전과 결승전 중 프랑스팀 출전 경기
레이싱	• 프랑스 포뮬러 1 그랑프리
사이클	• 투르 드 프랑스 • 파리－루베 사이클 경기
농구	• 유럽 농구 챔피언십 남녀 결승전 중 프랑스팀 출전 경기 • 세계 농구 선수권 남녀 결승전 중 프랑스팀 출전 경기
핸드볼	• 유럽 핸드볼 선수권 대회의 남녀 결승전 중 프랑스팀 출전 경기 • 세계 핸드볼 선수권 대회의 남녀 결승전 중 프랑스팀 출전 경기
육상	• 육상 선수권 등

출처: European Commission(2019). AVMSD - List of Major Events

독일의 경우와 비슷하게⁹⁾ 프랑스 커뮤니케이션법의 시행령은 지정 행사 목록 제도가 도입된 1997년 8월 23일 이전에 독점적 중계권 계약이 체결된 행사에 대해서는 그 계약 기간 만료까지 예외적으로 독점적 중계권을 보장하였다. 중계 방송에 대해서는 만약 올림픽이나 국제 육상경기처럼 여러 행사가 동시에 개최되거나 투어 드 프랑스처럼 여러 국가의 선수들이 동시에 장시간 참여하는 경기라면 그 내용과 참여국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생방송 중계를 특정 범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지연 방송할 수 있다. 해외 개최 행사가 프랑스 시간을 기준으로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개최되는 경우에는 오전 10시 이전에 방송한다는 조건하에 녹화 방송을 제공할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9; 노창희 외, 2017).

독점중계권을 소유한 TV 방송사업자가 두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즉 전체 인구의 85%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무료로 중계방송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행사가 개최되기 전에 그 행사의 전체 또는 하이라이트 등에 관한 중계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시장 조건으로 무료 TV방송사업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만약 이때 무료 TV방송사업자가 독점중계권을 가진 해당 사업자와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양도 조건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지 않는 경우 독점중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9; 노창희 외, 2017).

독일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주요 행사에 대한 중계권 거래는 시장에서 사업자 간의 협상과 합의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 방식은 EU에서 주요 행사 지정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제도는 중계권 협상에 정부 또는 관련 기관이 개입하게 되면 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적절한 불공정거래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한다.

9) 독일에서는 1997년 7월 30일 이전에 독점중계권을 획득한 경우에 대해 독점중계 제한의 예외로 두었음(RStV §4 (3)항).

3. 최근의 논의 및 쟁점

최근 국내에서는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모바일 기기의 확산과 TV를 이용하지 않는 코드 커팅 가구의 증가로 인해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보장 매체를 인터넷으로 방송시청이 가능한 모바일 기기까지 확대하고 포털 사업자도 중계권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는 TV 수상기를 보유한 가구 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무료 지상파방송이 전체 인구의 95%에 도달해야 하는 A 리스트의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젊은 연령층이 생방송으로 TV를 시청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공영방송의 능력과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도 우려하고 있다(The Telegraph, 2017. 2. 14). 그 결과 공영방송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의 하나로 카테고리 B에 지정되어 있는 오픈 챔피언십과 라이더컵의 하이라이트를 공영방송에서 중계하도록 하고 오픈 챔피언십의 경우 궁극적으로 공공서비스 방송사(PSB)가 생방송으로 중계해야 하는 카테고리 A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Broadband TV news, 2019. 11. 6; Golf Monthly, 2019. 11. 6.; The Telegraph, 2019. 11. 5).

통신망을 이용하는 OTT 플랫폼에서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는 사례도 늘어남에 따라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에서 중계권을 획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의 통신회사인 도이체(Deutsche)는 2024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 51경기에 대한 중계권을 모두 획득하고 이를 유료 서비스인 OTT 플랫폼 마젠타 TV(Magenta TV)를 통해 중계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독일의 지정 행사 규정에 따라 독일 대표팀의 경기와 개막전, 준결승전, 결승전은 반드시 무료 방송에서 중계해야 하므로 독일 공영방송 ARD와 ZDF 또는 다른 공영방송사가 중계권의 재판매를 요구할 전망이다(Sportbusiness, 2019. 9. 20). 비슷한 사례로 뉴질랜드에서도 럭비 월드컵 중계권을 TVNZ 방송사와 함께 Spark 통신회사가 공동으로 획득함에 따라 Spark가 일부 경기를 유료로 제공하면 시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론화되고 있다.

호주 역시 2018년 유료방송 Foxtel에서 주요 크리켓 경기의 중계권을 획득하고 이

를 유료로 제공하여 이를 시청하지 못하게 된 시청자들의 비난을 산 사례가 있다(ABC, 2019. 11. 7.; The Sydney Morning Herald, 2019. 5. 6). 또한 월드컵 2차전부터 유료 온라인 서비스인 Optus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중계방송을 독점으로 중계하면서 많은 호주인이 월드컵 경기의 시청을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후자의 경우 호주의 안티 사이퍼닝 제도에서 지정하는 경기가 월드컵 결승과 호주 대표팀 출전 경기로만 제한되어 있어서 월드컵 경기중계권을 가진 SBS가 모든 경기를 중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호주에서는 안티 사이퍼닝 제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News.com.au, 2018. 6. 18.; The Conversation, 2018. 7. 18.). 특히 현재의 안티 사이퍼닝 제도가 디지털 플랫폼 시대로의 전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요 관심행사에 대한 권리를 다국적 유료 플랫폼이 독점하게 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The Sydney Morning Herald, 2019. 5. 6.)

제 3 절 국내외 사례의 시사점

1. 보편적 시청권 제도 관련 쟁점

해외 사례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보편적 시청권 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을 제기할 수 있다. 중계권의 획득과 거래관련 분쟁, 인기 종목의 과도한 중복편성과 비인기 종목의 중계부족, 자료화면의 무료 제공과 관련된 제공시기 및 자료화면의 내용,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대상인 국민관심행사의 범위 선정, 이용행태의 변화로 인한 제도 실효성 등이다. 이 가운데 중계권의 획득과 거래에 관한 논의는 국내에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도입하게 된 가장 핵심적 쟁점이지만 다른 정책 연구에서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 논한다.

가. 중복편성과 비인기 종목의 중계 문제

중복편성은 말 그대로 동일한 인기 스포츠 경기를 여러 채널에서 같은 시간에 편

성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중복편성의 문제는 높은 시청률이 보장되는 인기 경기의 중계는 많은 방송사업자가 서로 편성하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별로 인기가 없는 종목이거나 한국 국적의 선수가 참가하지 않는 경기는 방송사업자들이 그 중계를 회피하기 때문에 다양성의 차원에서 시청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에서는 올림픽과 월드컵 등 인기 스포츠 행사 기간 동안 과도한 중복편성을 지양하고 순차편성을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중복편성이 주요 경기마다 나타나고 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의 경우 지상파 3사는 각각 약 106~143개의 경기를 편성하였는데 KBS1을 제외한 KBS2, MBC, SBS의 동시중계 비율만 살펴볼 때에도 중복편성 비율이 약 75%이며, 3사가 동시에 같은 경기를 편성한 사례는 48.5%(81경기)에 이른다(노창희 외, 2017).¹⁰⁾ 이처럼 과도한 중복편성으로 인해 방송으로 중계되지 않는 비인기 종목이 많아서 일각에서는 비인기 종목의 최소 편성, 또는 인기는 없지만 공익적 목적이 반영되는 국내외 문화 행사 등의 중계 의무화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를 시청할 수 있는 권리라고만 정의되어 있는 현재의 보편적 시청권 개념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낮은 비인기 종목 경기 또는 행사를 시청하도록 하는 제도적 노력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나. 자료화면 제공의 문제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또 다른 쟁점 중 하나는 중계권자의 자료화면 제공이다. 현재 중계방송권자는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세부 기준에 의거하여 행사에 관한 자료화면 무료 제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 자료화면의 내용, 제공시점 및 분량, 제공방식 등을 둘러싼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 제공받는 보도용 자료화면의 품질과 분량에 대해서 비(非)중계권자들은 양질의 뉴스 보도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10) 노창희 외(2017)의 연구에서는 개·폐막식, 재방송, 시상식 및 주요 경기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중복편성의 사례는 더 증가할 수도 있다.

편집이 어느 정도 필요하므로 경기 하이라이트 장면을 포함하여 가능한 긴 분량의 자료화면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한다.¹¹⁾ 제공 시점 또한 경기가 끝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자료영상을 제공받아야 신속성을 강조하는 보도 프로그램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기주최권자에게 거액의 중계권료를 지불하고 독점중계권을 획득한 방송사업자의 시각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재산권 또는 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금지행위 세부기준 고시에 따르면 중계방송권자는 올림픽, 아시아 경기대회, 경우 개별 종목별 30초 이내에서 1일 최소 4분 이상,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 야구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축구 A매치(월드컵축구 예선 포함)의 경우에는 1일 최소 2분 이상(단, 하루에 2개 이상의 경기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1일 최소 4분 이상) 분량의 자료화면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자료화면의 무상제공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가의 독점중계권을 획득한 방송사업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 이와 동시에 보도나 뉴스의 자료화면이 뉴스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자료화면 제공방식과 내용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 매체 환경 변화로 인한 실효성 문제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무료 지상파가 주로 전담하던 주요 행사의 중계방송 권한을 유료방송사가 획득하여 독점 중계함으로써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2005년 스포츠 마케팅 회사인 IB스포츠가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주관하는 모든 경기와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경기(MLB)에 대한 국내 중계권을 독점 확보하고 해당 경기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포함된 유료방송 패키지를 반드시 구매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유료방송의 독점중계권 문제 및 국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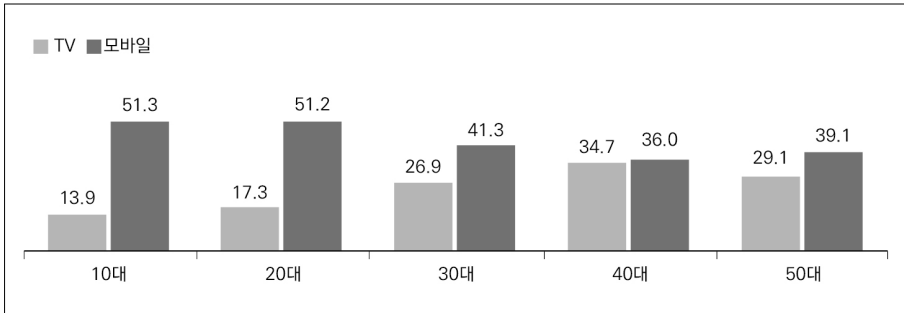
11) 10분 이상의 프리미엄 영상은 유료로 거래하는 경우도 있다.

시청권 보장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따라서 2007년에 국내 도입될 당시에는 인기 있는 국제 스포츠 경기의 중계권 확보 자격을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수신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한 사업자로 한정함으로써 무료 지상파만 중계권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95%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으로 유료방송 사업자의 중계권 획득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제는 더 이상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유료방송 종합편성 사업자인 JTBC가 유료방송 채널로는 사상 최초로 올림픽 독점중계권을 획득한 것도 이러한 제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기에 가능해진 것이다. 유료방송 채널이 올림픽과 같은 국민적 관심행사를 독점중계하게 되면 현재 전체 가구의 약 5% 이하로 추산되지만 무료지상파만 직접 수신하는 가구들은 이러한 국민적 관심행사의 중계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적 관심행사의 중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가 무료 지상파방송사여야 한다면 방송법령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행사 중계권자의 자격과 송신수단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매체 이용행태 변화의 하나로 휴대용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방송 시청의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 초고속 인터넷과 휴대용 모바일 기기 확산, 디지털 압축 및 전송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한 스포츠 중계의 실시간 시청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30대 이하 젊은 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전국의 15세~59세 응답자 1,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온라인 조사에서 30대 이하의 모바일 시청비중이 TV 시청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30대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다른 기기를 이용하느라 TV 시청이 줄어들었다고 대답한 비율이 7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메조미디어, 2018. 1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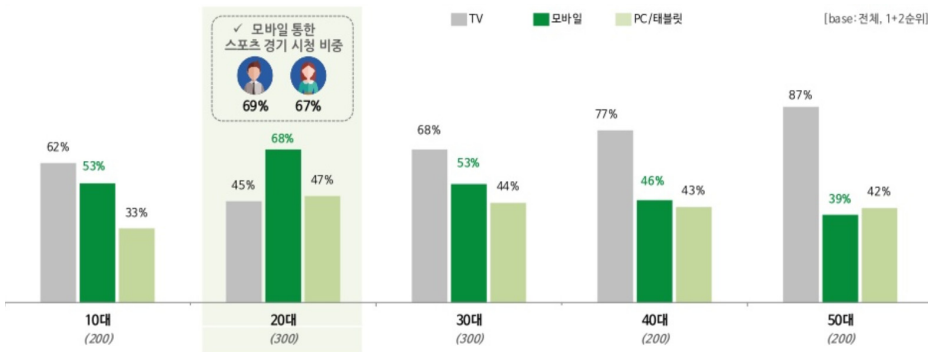
[그림 3-2] 연령별 TV와 모바일 기기 시청 비중 비교



출처: 메조미디어(2018. 11. 1.)

DMC 리포트(2017. 12)가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20~40대의 일반인 2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조사에서는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평창 올림픽 관련 콘텐츠를 소비하겠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72.5%에 달하며 TV를 이용하여 시청하겠다고 대답한 응답자(63%)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스포츠와 관련된 또 다른 조사에서는 20대에서 스포츠 중계방송 시청 시 모바일 기기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8%에 이르고 있다. 이들이 스포츠 경기 시청을 위해 TV 수상기를 이용하는 비율은 그 절반인 45%에 불과하다(메조미디어, 2018. 5. 16.).

[그림 3-3] 스포츠 경기 시청 시 사용기기



출처: 메조미디어(2018. 5. 16.)

장소나 시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한 스마트 기기가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방송매체만을 기반으로 하는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은 그 실효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동시성이 중요한 국민적 관심행사의 경우라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시청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1인 가구 및 이들의 코드 커팅이 늘어나는 매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국민적 관심행사의 중계가 TV수상기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가구 수의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시청권의 보장 대상 뿐 아니라 시청권 보장 방식에도 개선이 필요하다.

2. 해외사례의 시사점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우리나라보다 앞서 도입한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지정 행사’ 또는 ‘주요 행사’라는 명칭 아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행사에 대한 무료 시청권을 보장해 주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중계권료 협상과 편성에 대한 내용이나 정부의 직접적 개입은 제도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즉, 공익적 측면, 가령 공통의 경험을 통한 국민통합의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주요 행사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점은 공통적 특징이지만, 중계권료에 관한 행사주관자 또는 중계권자와 방송사업자 간 계약이나 프로그램 편성은 대체로 사업자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서 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없다. 또한 행사의 중계권을 유료 상업방송이 독점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은 다수 국민의 시청권이 침해되는 경우 외에는 중계권 획득 및 행사중계에 관련된 규정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국내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와 차이가 있다. 만약 사업자 간에 자율적으로 분쟁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도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중재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사업자 간 분쟁의 법적 해소방안을 제도화하고 있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 중계방송의 ‘무료 시청’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적 관심 행사의 시청권을 무료로 보장하는지 여부가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보편적 서비스의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보편적 서비스 여부를 판단하는 커버리지의 경우 매체 상황에 따라 나라별로 판단 기준이

되는 항목과 도달률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비용과 커버리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료 지상파방송이기 때문에 명시적 조항은 없으나 무료 지상파방송이 국민적 관심 행사의 시청권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매체로 설정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우리나라는 물론, 본고에 소개된 국가들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해 인기 스포츠 경기 위주로 주요 행사 리스트를 선정하고 있으나, 이탈리아의 산레모 음악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필 오케스트라의 신년 콘서트, 비엔나 오페라 무도회처럼 문화적 행사를 포함시키고 있는 국가도 있으며, 프랑스의 포물러1 그랑프리 레이스처럼 해당 국가의 특정 산업에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9). 즉, 주요 행사 목록을 선정하는 기준으로써 행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적 중요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모든 국민이 국민적 관심사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적 시청권이 어떤 방송사업자이든 국민적 관심 행사의 방송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그 결과 국민 보다는 방송사업자의 접근권 보장으로 논의의 방점이 옮겨간 바, 방송사 사이의 과도한 중계권 획득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계약 권고, 2차 중계권 계약 및 자료화면 제공, 방송편성에 있어서 여러 채널에서 동시에 같은 경기를 중계하는 중복편성을 지양하고 채널 간 순차편성을 권고하는 것이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주요 내용이 되어버렸다(심석태 2007) 해외 주요국에서는 방송사업자의 편성에 관해 규정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편성 방식을 규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방송사 편성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살펴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국내에서와 같은 ‘권고’ 수준의 간섭조차 없는 상황이며 사업자 사이의 자율적 협상과 합의에 따르도록 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의 시청권을 우선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였다. 또한 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역시 관계 기관의 개입보다는 민법 등을 참조하도록 하여 가능한 법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법령에 명시된 바에 따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제 4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문제

본 연구는 방송 분야에서 보편적 시청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문가와 일반 시청자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국민들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개념 및 관련 정책수립의 기반을 도출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문제 1.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의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전문가와 일반인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가?

연구문제 4. 전문가와 일반인의 인식이 현행 보편적 시청권 제도와 다른가?

구체적으로 연구문제 1은 보편적 시청권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보편적 시청권은 어떤 콘텐츠의 시청을 보장해야 하는지,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매체나 플랫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일반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보편적 서비스의 제도화 가능성과 단편보도권 도입 등 일반인이 응답하기 힘든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연구문제 2는 보편적 시청권을 구체화하는 국민관심행사 목록에 대해 일반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알아보는 것으로, 현재의 국민관심행사 목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국민관심행사라고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국민관심행사 중 계방송의 편성방식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조사한다.

보편적 시청권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일반인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일반인의 의견과 동떨어진 제도화는 현실적 수요나 필요를 제

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연구문제 3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과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인의 인식이 다른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4는 연구문제 3의 연장선상에서 일반인과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개념과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보편적 시청권 간에 괴리가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4에 대한 조사 결과는 향후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방법

국민관심행사 및 보편적 시청권 자체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실제로 인식하고 체감하는 보편적 시청권과 국민관심행사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일반인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 대한 인식 및 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는 현재 법령화되어 있는 제도를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인식과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의견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및 온라인 서베이를 수행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심층 면담도 병행하였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하기도 하지만,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현재 방송법령상에 어떻게 제도화되어 있으며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전문가의 시각은 보편적 시청권 개념을 재정비하고 향후 제도적으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에 관하여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1. 일반인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보편적 시청권 또는 국민관심행사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먼저 수행하여 일반 시청자가 생각하는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터뷰 결과는 또한 일반인이 좀 더 공감하고 이해하기 쉬운 서베이 질문을 도출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는 20대와 30대, 40대와 50대로 구성된 두 집단을 대상으로 전문 모더레이터가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일반적 생각과 구체적인 국민관심행사 리스트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였다. 인터뷰는 11월 15일, 18일의 이틀에 걸쳐 전문 조사기관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실에서 수행되었다.

각 집단은 남녀 각 4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일반인의 생각이 조사의 목적이므로, 특별히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의도적으로 선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이나 동영상 콘텐츠를 많이 시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20~30대 그룹의 응답자 연령은 24세에서 39세까지이고 평균 28세였으며, 응답자 전원이 직장인이다. 40~50대 그룹에서는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 여성이 전업주부였으며, 평균 연령은 48세이다. 20~30대 그룹은 전원이 하루 평균 2~3시간 TV 또는 동영상을 시청한다고 하였으나, 40~50대 그룹은 TV 시청이 3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절반을 차지하여 시청시간이 좀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본 인터뷰에서는 이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보편권 시청권의 정의에 구애받지 않도록 먼저 특별한 보기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유도하였다. 국민관심행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행사 목록에 대한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터뷰 후반부에 현행 고시에서 규정하는 ‘국민관심행사 등의 종류’ 리스트를 보기로 제시하고 그 적절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였다.

〈표 4－1〉 포커스 그룹 참여자 구성

ID		연령	성별	직업	하루평균 시청시간
20~30대	A	25	남	직장인	2~3시간
	B	26	남	직장인	2~3시간
	C	30	남	직장인	2~3시간
	D	39	남	직장인	2~3시간
	E	24	여	직장인	2~3시간
	F	27	여	직장인	2~3시간
	G	29	여	직장인	2~3시간
	H	30	여	직장인	2~3시간
40~50대	I	42	남	직장인	3시간 이상
	J	43	남	직장인	2~3시간
	K	44	남	직장인	3시간 이상
	L	50	남	직장인	2~3시간
	M	46	여	직장인	2~3시간
	N	47	여	전업주부	2~3시간
	O	57	여	전업주부	3시간 이상
	P	57세	여	전업주부	3시간 이상

2. 일반인 대상 온라인 서베이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먼저 수행한 뒤 그 결과를 설문에 일부 반영하여 좀 더 일반화가 가능한 서베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온라인 서베이 응답자는 전문 조사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패널 중에서 성별 및 연령대별 할당을 통해 표집되었으며, 서울, 경기 및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 일대의 10~60대 일반인 533명을 대상으로 한다. 수도권 지역만을 조사 대상으로 한 이유는 이미 국내 유료방송과 모바일 보급률이 90%를 넘어가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 하에 굳이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분석 셀별 응답자 수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연구에 포함된 최종 조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표 4-2〉 서베이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구성

구분		표본수(명)	구성비(%)
전체		(533)	100.0
성별	남성	(267)	50.1
	여성	(266)	49.9
연령	15~19세	(51)	9.6
	20대	(100)	18.8
	30대	(106)	19.9
	40대	(117)	22.0
	50대	(111)	20.8
	60대	(48)	9.0
지역	서울	(202)	37.9
	인천	(62)	11.6
	경기	(269)	50.5
학력	중졸 이하	(21)	3.9
	고졸	(104)	19.5
	대졸 이상	(339)	63.6
	대학원 이상	(69)	12.9
직업	사무직	(273)	51.2
	서비스/판매직	(66)	12.4
	생산직	(21)	3.9
	학생	(79)	14.8
	주부	(68)	12.8
	무직	(26)	4.9
가구 소득	99만원 이하	(18)	3.4
	100~199만원	(26)	4.9
	200~299만원	(64)	12.0
	300~399만원	(90)	16.9
	400~499만원	(78)	14.6
	500~599만원	(77)	14.4
	600만원 이상	(180)	33.8

설문 항목은 기존 연구, 일반인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먼저 완료된 일부 전문가 면담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매체이용 행태뿐만 아니라 보편적 시청

권 제도 및 국민관심행사 목록, 그리고 국민관심행사 중계행태에 대한 다양한 서술문에 대한 동의 정도를 질문하였다. 다만, 국민관심행사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별로 관심도 및 실제 시청 정도에 대한 질문은 의도적으로 본 연구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2017년 1월 국민관심행사 고시 개정에 따라 국민관심행사 목록의 개정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목록에 포함된 스포츠 경기에 대한 관심도와 시청 경험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민관심행사 목록에서 스포츠 이외의 행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국민관심행사로 그 시청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할 스포츠 종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포함되어 있다.

조사는 2019년 12월 2일~6일 사이에 수행되었으며 조사 결과는 각 조사 문항에 대한 응답 항목별 차이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응답항목별 비율에 대한 95% 신뢰수준을 구성하여 비교하였다. 아울러 보편적 시청권의 의미와 범위,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을 담당해야 하는 사업자, 현행 고시에 수록된 국민관심행사 범위의 적절성, 포털 및 유료방송 등을 통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적절성 등 연구문제에 따라 결과를 정리하였다.

3. 전문가 대상 심층 조사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보편적 시청권은 흔하게 거론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의견만으로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재개념화하거나 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단편보도권 같은 개념은 국내에 도입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에 대해 주지하고 있는 학계, 업계 및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및 서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를 위하여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Strauss & Corbin, 1998)를 채택하고 일단 질문 목록을 전달한 후 실제 논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심층 질문이 필요하거나 생략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면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2019년 10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조사 대상은 지상파방송사, 정부부처 담당자, 학계 전문가 등 7명이다. 면대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통해 응답을 요청하였다.

전문가에게는 일반인 대상 조사에 포함된 질문에 더하여 현행 제도의 특징과 한계 등에 대한 현실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보완책을 위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일반인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포함된 것과 동일한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은 일반인과 전문가 간의 인식 차이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표 4-3〉 전문가 조사 대상자 및 조사 시기

ID	조사 시기	소속 및 직위
인터뷰 대상자 A	2019년 10월	연구기관 실장
인터뷰 대상자 B	2019년 11월	방송사 전문위원
인터뷰 대상자 C	2019년 11월	방송사 팀장
인터뷰 대상자 D	2019년 12월	방송사 전문위원
인터뷰 대상자 E	2019년 12월	관련부처 사무관
인터뷰 대상자 F	2019년 12월	관련부처 사무관
인터뷰 대상자 G	2019년 12월	관련 학계 교수

제 5 장 주요 연구결과

제 1 절 일반인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1. 보편적 시청권의 의미와 대상

일반인 대상 조사에서 우선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정의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편적 시청권이라고 할 때 떠오르는 생각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20~30대 시청자들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국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콘텐츠 또는 국민으로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콘텐츠의 시청을 보장하는 것을 보편적 시청권인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40~50대 시청자들은 장애인 또는 소외 계층의 시청권 확보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보편적’이라는 단어의 해석에 대해 두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40~50대는 스포츠 경기의 중계, 무료 시청, 중계권 등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함으로써, 매체를 통해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논의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노출된 경험이 많아 보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30대 참여자들은 국제 스포츠 경기 외에도 정치, 경제, 사회, 세계정세 등에 관한 뉴스 및 시사 프로그램은 물론, 일상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교통정보와 날씨정보, 국가적 재난 재해 등의 콘텐츠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이 시청할 권리가 보편적 시청권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또한 문화 예술 분야에 관한 콘텐츠도 시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때 한국을 널리 알리는 행사 또는 다양한 집단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가령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 콘서트를 비롯해, 가능한 한 많은 연령대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서 시대극, 고전 영화, 주

요 이슈에 관한 다큐멘터리, 청룡영화상, 백상 시상식 등이 거론되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가대항 스포츠의 경우 국가대표를 육성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선수촌 운영 등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다양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특히 국가대항 스포츠는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일반인 C). 즉, 인기가 있다는 점 외에도, 국위선양, 국가 브랜드와 같은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을 대표하거나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는 종목에 대한 시청을 보장하는 것이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해석을 제시하였다.

여자 골프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도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반인 D)

세계 태권도 대회 같은 것도 포함해야 할 것 같아요. 태권도는 대한민국 국기인데…. (일반인 H)

20~30대 참여자의 응답을 종합해보면, 날씨나 교통정보, 금리, 재난상황 등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정보에 더하여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민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콘텐츠, 즉 국내외 뉴스, 시사, 문화 등의 내용, 그리고 세금이나 수신료와 같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만들어지는 콘텐츠에 대해서 일반인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보편적 시청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보편적 시청권으로 시청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콘텐츠 자체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범위가 현재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광범위하여 국가대항 스포츠 경기 외에도 ‘국민이 다 알아야 하는 것’ 또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서비스’ 등을 시청할 수 있는 권리가 보편적 시청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20~30대 시청자 가운데 소수 의견으로 원하는 방송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보편적 시청권이라고 언급한 사례도 있는데, 개인이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보고 싶은 특정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는 것이 보편적 시청권의 확보라는 의견이다(일반인 D). 이 응답자를 제외하고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처럼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 보편적 시청권을 거론한 사례는 없었다. 이는 다음 부분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참여자들이 이미 지상파 TV채널 시청을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40~50대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의 ‘보편’이란 단어에 대해 20~30대와 달리 콘텐츠의 보편성 보다는 접근의 보편성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소외되는 계층이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였다.

보편적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인’과 비슷하게 느껴지잖아요. ‘일반적’이라는 건 대부분 대중에게 다 같이 시청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경우, 장애인의 시청 권리도 보장해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일반인 N)

케이블(TV)이 생기고 종편이 생기면서 특정 아이들을 위한 채널이 생기고 나니까 공중파에서는 슬금슬금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아이들이 공중파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공중파에서 사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 세대 나이차이 없이 소외되는 계층이 없이 시청할 수 있게... (일반인 K)

보편적 시청권을 콘텐츠에 연관지어 생각한 40~50대 응답자는 월드컵 또는 모든 국민이 봐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무료로’ 하여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하는 권리라고 응답하기도 하였으며, 이후의 논의에서도 40~50대는 무료 시청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요약하면 대체로 40~50대는 20~3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편적 접근에 방점을 둔 응답, 즉 소외 계층이 없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 시청권이며 무료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2.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 방식

앞에서 언급된 콘텐츠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어떤 채널 또는 매체를 통해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20~30대 참여자들은 ‘보편적’인 시청권에 관련된 것이므로 국민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만한 매체, 즉 TV 수상기나 스마트폰 등으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였다.

최근 스마트폰으로 방송이나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에도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려면 데이터 이용 비용이 필요하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무료로 이용 가능한 TV방송이 적절한 매체라고 대답하였다.

스마트폰은 다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다 데이터 무제한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TV가 제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반인 D)

40~50대 참여자들 역시 대체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매체로 TV방송을 꼽고 있으며, 특히 전국에 도달할 수 있는 무료채널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40~50대의 인터뷰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매체, 채널은 공영방송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20~30대 참여자들은 최근에 TV 수상기가 없는 가구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스마트폰으로도 이러한 콘텐츠에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앱이나 모바일 웹사이트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스마트 기기 세대의 특징을 드러냈다.

넷플릭스처럼 그런 플랫폼에서 저렴하게 누구라도 TV 없이도 이런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웹사이트나 앱이냐는 상관없어요. (일반인 H)

20~30대에 비해서 40~50대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콘텐츠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TV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딜레이 현상을 지적하기 보다는 TV가 박진감, 현실감 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20~30대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방송사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서 무료로 중계방송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제시하였다. 단, 다양한 매체에서 중계방송권 획득 경쟁이 발생하면 해외에 지출하는 중계권료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처럼 가능한 지상파에서 중계권을 현행대로 획득하되 유료방송이나 포털에 재판매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이들은 집에서 TV 수상기로 경기를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시청자를 고려해야 하지만 외화 유출은 바라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중계권료 상승에 대한 우려는 그동

안 스포츠 중계방송과 관련된 언론 기사 대부분이 중계권 획득을 둘러싼 방송사 간 과당경쟁, 불필요한 중계권료 상승으로 인한 국부유출 등의 프레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늘어나고 있는 소셜 뷰잉(Social Viewing), 즉 대형 스포츠 행사나 인기 콘텐츠를 동시에 여럿이 함께 채팅하면서 시청하는 방식을 선호하여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언급한 사람은 두 집단을 통틀어 한 명에 불과하였다.

보편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 또는 채널에 대해서 참여자들은 별도로 돈을 내고 신청하지 않아도 시청이 가능한 채널들, 즉, 지상파 3사의 TV 방송채널이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두 집단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인터뷰 후반에 제시한 보편적 시청권의 법적 정의에서 ‘무료’라는 부분이 없다는 데에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별도 패키지나 채널을 신청하지 않아도... 돈을 따로 안 내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채널들이어야 할 것 같아요. (일반인 D)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대중적,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역시 공중파 채널이 아닐까요 (일반인 H)

40~50대 참여자도 대부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의 중계방송은 공공방송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8명 가운데 6명이 공공 또는 공영 방송¹²⁾이 주요 행사를 제공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단, 20~30대 참여자에 비해 ‘무료’라는 측면을 상대적으로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40~50대에서 보편적 시청권의 콘텐츠에 대해 스포츠 경기 위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참여자들 역시 스포츠 경기는 중계권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들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공영방송에서 중계방송을 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무료’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12) 인터뷰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공공방송과 공영방송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다.

국민적 관심이 제일 높은 사항은 당연히 공공방송에서 무료로 해야되지 않을까. (일반인 K)

정기방송이라든지 종편채널 말고 모두 볼 수 있는 채널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무료로… 보편적이라는 말이 전부 다 무료로 해주는 게 아닌가요? (일반인 I)

사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공중파방송을 만들고 그 방송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계층 같은 사람들이 시청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국민 세금처럼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시청할 수 있게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공중파를 이용해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사기업한테 해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거니까. (일반인 N)

공영방송 외에 다른 지상파 채널까지 포함시켜 지상파 방송을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 매체로 제시한 40~50대 참여자들은 이들을 포함한 이유가 도서 산간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에서 시청가능할 뿐만 아니라, 무료로 시청가능한 방송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얘기를 계속 하다보니까 생각이 든 게 KBS, MBC는, SBS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방 어딜 가도 TV만 켜 수 있으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언제인가 [스포츠 경기] 판권을 다른 데에서만 사서 사실 공중파에서 볼 수 없었어요. 그렇게 되면 유료 채널로 하거나 그런 사람들만 보게 되고 섬에 있어서 그런 [유료방송]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일반인 J)

요약하면, 참여자들은 대체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국민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결국 현재는 지상파 채널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보편적 매체이기 때문에 공영방송 내지는 지상파방송이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향후에는 보편적 매체로 자리잡아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두 집단 모두에서 제시되었는데 20~30대에서 좀 더 두드러졌다. 또한 40~50대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하

고 공영방송이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더 강하였다.

3. 국민관심행사의 범위

한편, 현재 국민관심행사고시에서 열거하고 있는 행사 목록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20~30대 포커스 그룹 인터뷰 참여자 전원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보편적 시청권의 범위에 비해 국민관심행사로 지정되어 있는 행사의 범주가 스포츠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지나치게 좁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국민관심행사 목록이 체육경기와 ‘그 밖의 주요 행사’를 정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정작 그 밖의 주요 행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특히 보편적 시청권의 정의에 대해 논하면서 콘텐츠를 중심으로 의견을 전개한 20~30대에서 두드러지게 지적된 사항이다.

더 나아가 참여자들은 국가 대항이 아닌 스포츠 경기를 ‘국민관심행사’라고 볼 수 있는지를 반문하는 등 목록에 포함되어 법으로 중계방송을 보장하고 있는 스포츠 경기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저는 행사라고 하면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삼일절 행사, 개천절 행사 등이 국민관심행사라고 생각해요. (일반인 G)

국민관심행사인데 체육경기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하네요. 다른 행사들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반인 A)

광복절 등 공휴일 기념행사도 (국민으로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하는 것 아닌가요? (일반인 E)

40~50대 역시 이와 비슷하게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국민관심행사 목록에 대해 ‘말이 안된다’(일반인 L), ‘국민관심행사가 아니다’(일반인 J), ‘탁상공론’의 산물이다(일반인 P) 라는 등 강한 반발을 보였다.

이걸 축구연맹에서 정한 건지...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행사의 범위는 너무 넓은데 딱 스포츠만 한정을 한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몇몇 종목만 짚어서 한 게

무슨 잣대로 정한 것인지 의아하고… (일반인 L)

연령대에 상관없이 인터뷰 참여자 대부분은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 목록으로서도 현재의 국민관심행사 목록이 다소 미비하다는 의견이다. 전체 가구의 90% 이상 도달할 수 있는 보편적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체육경기행사는 다수 인터뷰 참여자들이 중요한 체육경기라고 수긍하고 있으나, 여기에 수록된 경기에 대해서도 연령, 성별, 형평성이 부족하고 선정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하였다.

체육경기로만 봐도 성인 경기로만 한정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나이대 제한은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반인 B)

청소년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일반인 H)

국제협회가 주관하는 연령별 국가대항은 다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제협회는 FIFA 같은 거요. (일반인 A)

반면 40~50대의 경우 90퍼센트 이상 도달해야 하는 경기 목록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목록을 2단계로 구분하는 것 자체에 대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경기 선정의 형평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인기, 재미가 없는 경기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올림픽이 중요하고 아시아 경기는 그 밑에 급이고 이걸 대놓고 얘기한 거잖아요? 무조건 상위 경기라는 2개를 구분지은 발상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일반인 P)

FIFA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나라는 거의 꼴찌에 가까운데 우리나라 위상을 그렇게 보여주지도 않는 경기인데 왜 동·하계 올림픽하고 FIFA 경기를 같은 선상에 놓고 같은 관심행사로 묶어서 90% 국민이 볼 수 있게 하라는 건지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중략) 성인 여자 축구 대표팀 경기가 그렇게 국민관심사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일반인 N)

한편, 고시에서 국민관심행사를 스포츠 경기로만 제한하는 것에 대해 수긍하는 참여자도 있었는데 이들은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간 경기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

이 높은 행사로 간주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스포츠 경기가 아닌 중요 사건사고, 행사의 중계 등은 예측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포츠로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각이다.

문화나 이런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정도 되는 큰 게임이면 이걸 만약에 중편이나 (다른 유료방송이) 가져가게 되면, 돈을 내고 가져가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고, 굳이 올림픽, 월드컵 때 친구든 누구든 만나든 연령 관계없이 얘기하잖아요. 국민적 관심은 맞는 것 같아요. (일반인 I)

전체 가구의 75% 이상 도달 가능해야 하는 경기 리스트에 포함된 스포츠 경기들에 대해서까지 굳이 국민관심행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반대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는데 이들은 선정 기준 자체가 모호하며 두 번째 목록의 경기까지 포함시키면 법적으로 보장하는 경기가 너무 많아진다는 생각이다. 또한 40~50대에서는 너무 많은 경기를 포함시키면 스포츠를 즐기지 않는 사람들의 시청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빼고는 이런 경기들이 (시청을 보장해야 하는) 국민관심행사에까지 들어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 싶으면 중계하는 채널에서 (본인이) 찾아보도록 해야지요. (일반인 F)

전 세계에 야구를 하는 나라가 몇 개국이나 된다고 월드컵을 붙여서 대회를 하고 방송을 하고 그것도 사실 너무 웃긴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국민적 관심이라면 전 세계적으로 큰 경기를 방송해주는 게 보편적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인 N)

스포츠 경기로만 구성된 현재의 목록에 수궁하는 참여자는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제도로 보장되려면 인기도 있어야 하지만 모든 연령대에서 공감할 수 있어야 하므로 스포츠 경기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스포츠 경기를 유료방송에서 독점중계권을 따면 보고 싶어도 못 볼 수 있으니 스포츠를 넣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스포츠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연령이 공감해야 하니까요. 뭐 열린 음악회 같은 음악이나 시사 프로는 모든 연령이 다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인 C)

참여자 중 일부는 국민관심행사 목록에 포함시켜 방송을 보장함으로써 시청자의 노출이 증가되면 그 결과 더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의 프로그램은 일부러라도 국민관심행사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즉, 중요한 행사는 국민관심행사 목록에 포함하여 보장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국민의 관심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기와 상관없이 여자팀 경기도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여자 경기가 인기가 없는 것은 그동안 중계를 안 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인 G)

중요한 프로그램은 방송을 통해 노출을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고 봐요. (일반인 H)

E스포츠의 경우도 한국이 수입과 수출도 많이 하는 분야고 세계 강국인데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한두 개 경기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채널도 맨 뒤쪽에 있어요. 노출을 해주면 인기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일반인 C)

또한 특정 종목을 정해놓을 것이 아니라 한국 선수가 특별히 선전하고 있거나 국가 위상을 높이는 경기가 국민관심행사라는 의견도 있었다.

국민의 관심사는 내로라하는 세계 거물을 물리치고 이런 게 관심사지 종목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골프도 무슨 귀족스포츠라고 터부하는데 그것도 한국 선수들이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한 몫을 하거든요. (일반인 P)

4. 국민관심행사 선정 기준

현재 법으로 보장하는 국민관심행사 목록에 포함할 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법령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라고 하고 있으나 국민적 관심을 어떤 객관적 지표로 측정할 것인지, 기준은 무엇인지 등의 내용은 없다. 이에 어떠한 기준과 방식으로 국민의 관심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련하여 인터뷰 참여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국민 정서’처럼 역시 매우 추상적인 기준도 있었으나, 여론조사, 시청률처럼 시청자의 관심을 직접 나타낼 수 있는

척도도 언급되었다.

20~30대 참여자들은 매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참신한 응답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바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20~30대 참여자들은 검색어, 관련어 조회 수, 매스컴에서 보도하는 빈도 등을 파악해 시청자의 관심이 큰 행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을 제시하였다.

40~50대 참여자들은 ‘국민적 관심’이라는 기준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단순히 국민의 관심이 높다고 그런 행사를 방송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응답하였다. 비록 사람들이 스포츠 경기를 많이 보기는 하지만 그것도 역시 특정 계층의 관심을 주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스포츠에 관심을 갖지는 않는다는 생각이다.

기준이 너무 웃긴 게 갑자기 미스코리아 대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국민의 관심이 얼마나 높았나요. 어렸을 때는 미스코리아 대회를 하면 온 가족이 모여서 시청했거든요. 지금도 공중파에서 방송을 하면 굉장히 높은 시청률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단순히 국민의 관심이 높다고 공중파에서 그 행사를 방송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영국 프리미어리그 경기도 저희도 굉장히 많이 보기는 하는데 사실 특정 계층이 관심 있는 거지 스포츠에 모든 사람이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인 N)

일부 40~50대 참여자는 남녀노소를 망라하여 전 연령대가 볼 수 있는, 공통적 관심이 높은 보편적 사안에 대한 생중계방송을 언급하였지만, 또한 모두가 동의하는 보편적 가치가 연령대별로 같을 수 없음을 강조하며 이를 기준으로 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보편적 가치가 연령대 별로 너무 달라요. 10대와 대화도 안 되고 20, 30대랑도 대화가 어렵더라고요. 또 아버지, 어머니와 얘기해도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반인 L)

40~50대에서는 개인적으로 시청하기에 비용부담이 큰 해외 국제문화 행사들, 또는 개인적 관심과 별개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가적 행사들, 중요한 정치, 사회적 사건의 생중계 등을 국민관심행사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건 개인적 관심의 차이건 다양한 이유로 개인 스스로 시청하기 힘들지만 보편성, 공익성을 지닌 콘텐츠를 공영방송에서 무료로 중계하도록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20~30대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맥락에서 20~30대에서와 마찬가지로 40~50대에서도 시청률은 높지 않지만 방송이 필요하고, 방송을 함으로써 관심이 높아지는 콘텐츠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패럴림픽도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국악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보는 사람은 몇 명 없을 수 있지만,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꿈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일반인 J)

40~50대에서는 방송사에서는 비록 시청률이라는 지표를 통해 국민관심의 정도를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시청률로 측정되는 국민적 관심이 반영된 행사에 매우 회의적이며 그 외에 별다른 구체적 지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산술적인 지표 외에 객관화 할 수 없는 공익적 목적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은 20~30대와 비슷하다. 40~50대는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영향을 주는 내용들, 가령 최근 조국 사건이나 주요 법안 처리 현황처럼 국민이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공적인 의미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중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5. 국민관심행사 중계편성 방식

올림픽이나 월드컵 경기 기간이 되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복편성, 즉 서로 다른 방송사의 채널에서 동일한 경기를 같은 시간에 중계하는 관행이다. 중복편성은 스포츠 경기를 보고 싶지 않은 시청자가 다른 프로그램을 시청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보편적 시청권 위원회에서는 동일한 경기의 중복편성을 지양하고 서로 다른 채널 간에 순차적으로 편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중복편성 또는 순차편성과 관련하여 두 집단 간에는 의견 차이가 있는데,

먼저 20~30대 인터뷰 참여자들은 지상파 3사 중 한 군데에서만 독점적으로 중요 스포츠 경기 중계방송을 하도록 하면 오히려 방송사 간 중계권 획득을 위한 경쟁이 과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중복편성을 허용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시각이다. 더 나아가 20~30대 인터뷰 참여자 8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인기 국제 스포츠 경기는 여러 채널에서 방송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 대신 채널마다 다른 해설자를 기용해서 시청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설의 다양성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40~50대 참여자들은 중복편성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아서 8명 중 6명이 중복편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시하였다.

중복편성에 반대한 20~30대 참여자들은 여러 채널에서 동시에 동일한 경기를 중계하는 것은 일종의 전파 낭비이므로 지상파 3사가 서로 다른 경기를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 역시 스포츠와 전혀 다른 장르의 프로그램을 방송해달라는 수준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다.

반면, 40~50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중복편성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국민관심행사로 선정된 스포츠 경기는 한 채널에서만 방영하도록 하고 다른 장르의 프로그램 또는 원래 그 시간에 편성되는 프로그램을 방영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장르가 서로 다른 다양한 콘텐츠의 시청권에 방점을 두는 시각이다.

스포츠 경기 시청의 매체와 관련해서 조사 시작 전에 기대했던 바와 다소 다른 응답은, 모바일 기기에 익숙한 20~30대 참여자들도 대체로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TV로 시청한다고 대답했다는 점이다. 2020년 올림픽 시청 시 이용할 것 같은 기기로 20~30대 인터뷰 참여자 8명 가운데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TV를 통한 시청이 절반 이상일 것이라고 하였다. 휴대폰을 이용한 스포츠 경기 시청은 주로 이동 중에 하는데, 이는 주로 방송시간이 국내 생활시간대와 맞지 않는 해외 경기의 중계 또는 전날의 하이라이트 등을 시청하기 위함이라고 대답하였다. TV를 주요 시청기기로 뽑는 이유로 응답자들은 스포츠 경기의 특성 상 큰 화면으로 생생한 경기장면을 보는 것이 좋으며, 모바일 기기는 아직까지 중계방송 중 시간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경기를 충분히 즐길 수 없는 기술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언급하였다.

모바일은 딜레이 경기를 보게 돼요. 딜레이 경기가 뭐냐면 모바일이 느려서 시간차가 생기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합성을 먼저 듣고 골 장면을 보는 거죠. (일반인 A)

한편 TV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한 참여자 역시 스마트폰보다는 컴퓨터로 지상파방송사의 앱 또는 웹페이지를 이용해서 지상파 채널에서 중계하는 방송을 시청할 것이라고 하여 역시 상대적으로 큰 화면에서 시청하려는 유인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참여자들은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 모바일에서 접근가능한 포털 제공 사업자가 주요 행사 중계권을 직접 획득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응답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지상파가 우선적으로 중계권 획득 자격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또한 포털 사업자들이 중계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좋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경쟁 심화로 이어져서 불필요하게 중계권료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20~30대와 40~50대에 모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또한 유료방송사업자가 중계권을 획득하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데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보편적 시청권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40~50대에서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더라도 5,000원 이상의 금액은 지불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돈 내고 봐야하면 보편이 아니잖아요. (일반인 A)

프로 경기는 돈을 내고 볼 수도 있지만, 국가 간 대항 경기를 왜 돈을 내고 봐야하나요. (일반 E)

국가대표 경기의 중계권을 종편이나 다른 그런 인터넷 매체가 사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제한적 시청이잖아요. (일반인 J)

이상을 종합해 보면 20~30대 참여자들도 아직까지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국제 스포츠 경기의 중계는 무료 지상파채널을 통해 TV에서 시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20~30대는 같은 경기를 서로 다른 채널에서 다양한 해설자를 기용하여 중계하는 수준의 다양성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4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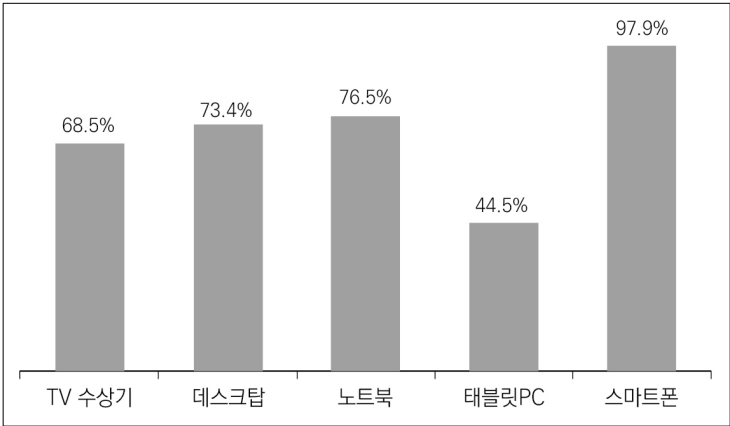
대는 스포츠와 전혀 다른 장르의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좀 더 적극적인 시청 다양성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이다.

제 2 절 일반인 대상 온라인 서베이 결과¹³⁾

1. 매체 이용매체 및 국민관심행사 시청행태

온라인 서베이 응답자의 약 98%는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으며, TV 수상기보다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을 보유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 응답자의 매체 보유 현황
(단위: %; N=5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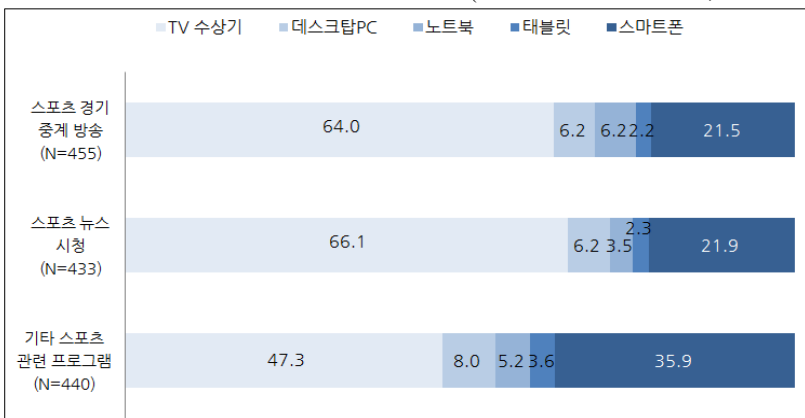
방송 및 동영상을 시청할 때 가장 자주 이용하는 기기의 1순위로 전체 응답자의 49%가 스마트폰을 꼽았으며, TV 수상기를 1순위라고 응답한 비율은 39%로 스마트폰보다 낮게 나타났다. TV 수상기 다음으로는 데스크톱 6.4%, 노트북 4.3%, 태블릿

13) 질문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나(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결과의 서술은 편의상 ‘보통이다’를 제외한 나머지를 동의와 반대, 또는 긍정과 부정의 두 범주로 묶어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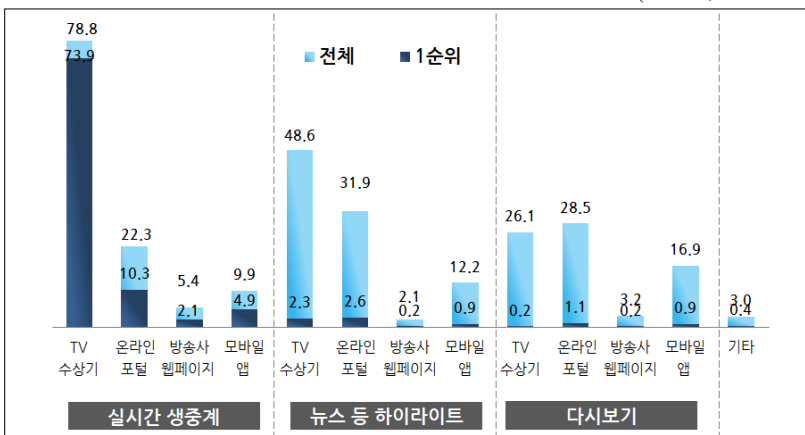
1.3%의 순이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약 60%는 평소 스포츠를 ‘좋아한다’고 대답하였으며, 평소 글로벌 스포츠 경기 중계(74.7%)와 선수가 잘 알려진 경기(48%)를 시청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는 주로 TV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시청 기기
(N=각 프로그램 시청자, 단위: %)



[그림 5-3] 스포츠 경기 시청방식
(N=53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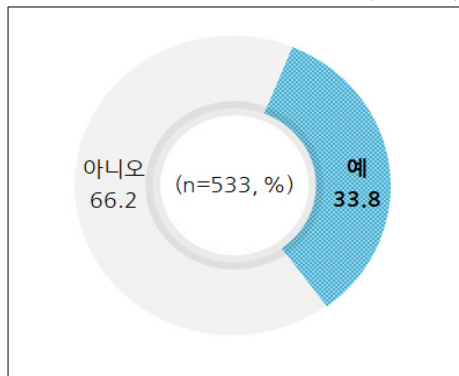


인기 있는 스포츠 경기 시청 시 선택하는 시청 형태와 방법의 조합을 고려하면 ‘실시간 생중계’ 프로그램을 ‘TV 수상기’로 시청하는 비율(78.8%)이 가장 많으며, ‘뉴스 등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을 ‘TV 수상기’로 시청하는 비율(48.6%)이 뒤를 이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인식

보편적 시청권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예측했던 것처럼 보편적 시청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533명의 1/3정도에 불과하였다(33.8%, 186명).

[그림 5-4]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인지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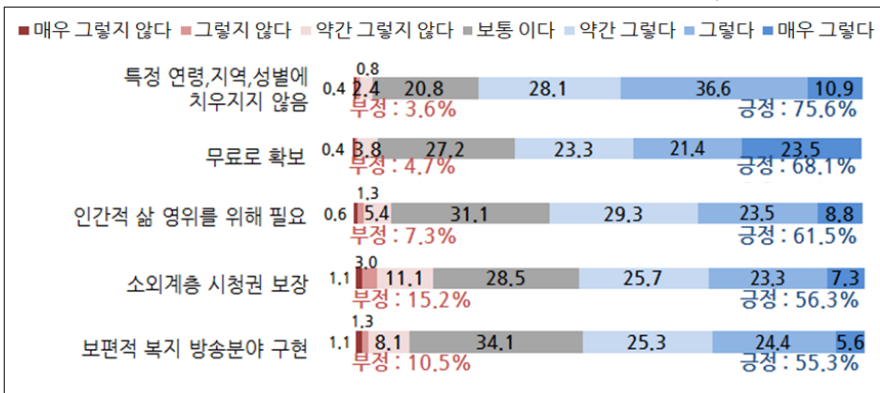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보편적 복지를 방송 분야에서 구현하는 것이 보편적 시청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55.6%),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 연령, 지역, 성별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약 76%에 달한다. 응답자의 56.3%는 보편적 시청권이 소외계층의 시청권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61.5%의 응답자는 보편적 시청권은 인간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일반인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인식 또는 개념화 정도를 매체와 플랫폼 차원에

서 질문하였을 때 응답자들은 공영방송(81.2%) 또는 무료지상파(76.9%)가 보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여 공영방송이나 지상파방송은 보편적 서비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절반 정도의 응답자(50%)는 유료방송도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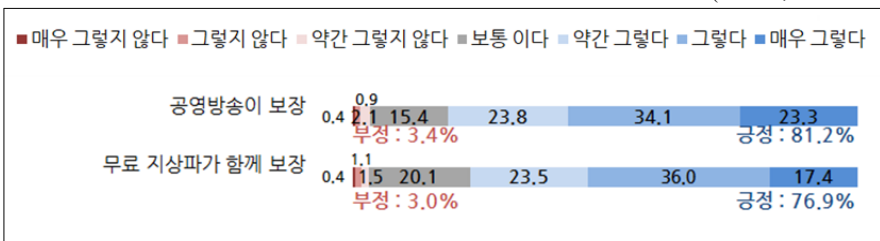
[그림 5-5] 보편적 시청권의 의미

(N=533, 단위: %)



[그림 5-6] 보편적 시청권 보장 매체

(N=53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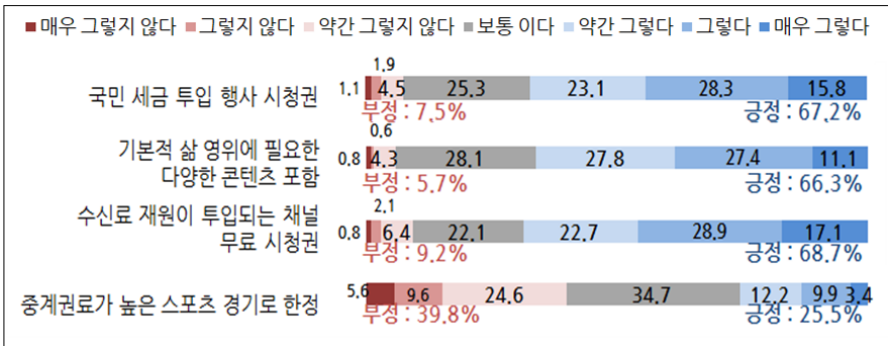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해야 한다는 서술문에 66.3%의 응답자가 동의하고 있으며, 중계권료가 높은 스포츠 경기로만 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긍정적 반응보다 높게 나타났다(부정 39.8%, 긍정 25.5%, $t=4.228$, $p<.001$). 또한

응답자들은 국민의 세금이나 수신료 재원이 투입된 행사(67.2%) 또는 채널(68.7%)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것이 보편적 시청권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림 5-7〕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

(N=53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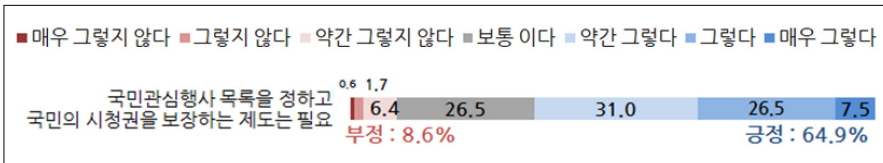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은 콘텐츠 외에 방송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까지도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하는 영역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58.3%), 정작 보편적 시청권을 법이나 제도를 통해 강제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과 긍정적 의견이 별 차이가 없었으며(부정 32.3%, 긍정 31.3%), 긍정이나 부정도 아닌 응답 역시 비슷하게 나타났다(36.4%). 즉,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 부정의 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인식

반면, 보편적 시청권을 좀 더 구체화시킨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 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약 65%는 주요 행사 목록을 정하고 그 중계방송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고 대답하였다.

〔그림 5-8〕 국민관심행사 제도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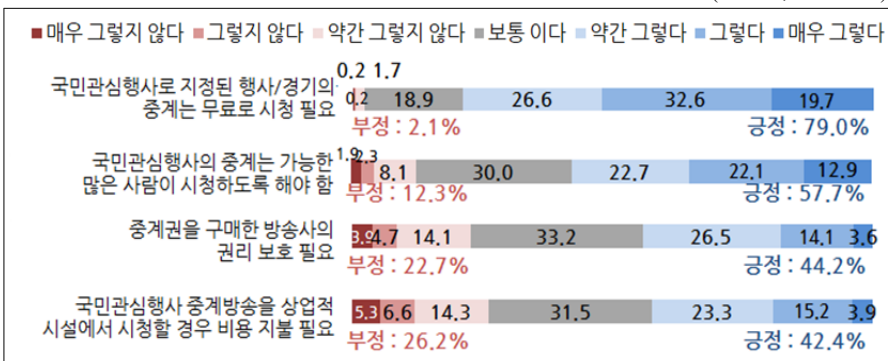
(N=533, 단위: %)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질문에서와 비슷하게 응답자들은 국민관심행사로 지정된 행사의 중계 역시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이(57.7%) 무료로(52.2%)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이러한 중계방송을 상업적 시설에서 시청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으며(긍정 42.4%, 부정 26.2%, $t=4,690$ $p<.001$) 중계권을 구매한 방송사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문장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긍정 44.2%, 부정 22.7%, $t=6.407$, $p <.001$).

〔그림 5-9〕 국민관심행사 제도에 대한 인식

(N=53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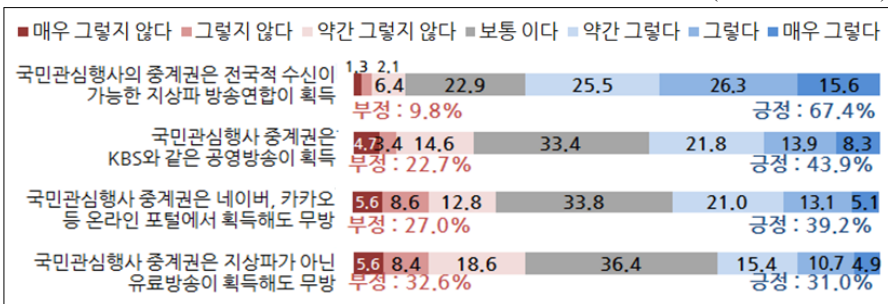
한편, 보편적 시청권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민관심행사의 중계권을 어떤 매체가 획득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대부분은 전국적 수신이 가능한 지상파 방송연합 또는 KBS와 같은 공영방송이 획득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 가지 특이점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온라인 포털에서 중계권을 획득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이 더 높게 나온 반면(긍정 39.2%, 부정 27%), 유료방송이 중계권을 획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 부정이 분명하지 않았다(긍정 31%, 부정 32.6%, 잘 모르겠다 36.4%).

국민관심행사 중계 시 시청권 침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기존 프로그램의 결방은 개인의 시청권 침해(41.6%)이며 동일한 관심사를 여러 채널에서 중계하는 것은 전파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으나(43.7%) 단, 각 채널에서 서로 다른 해설자가 방송하면 괜찮다고 응답하였다(47.1%). 국민관심행사 중계를 한 채널에서만 방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35.9%, 긍정적인 응답이 30%로 나왔으나 이 둘 간의 차이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0] 국민관심행사 중계권자

(N=533, 단위: %)



4. 국민관심행사 목록의 적절성

응답자의 76%는 현재 국민관심행사 고시에서 제시하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체육 경기의 범위가 적절하다고 대답하였으나, 국민관심행사 목록 중 두 번째 그룹이 국민관심행사로 적절한 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호한 반응을 나타냈다. 두 번째 그룹의 경기들이 국민관심행사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33.6%, 적절하다는 응답이 30.5%로 나타났으나, 이 두 비율 간의 차이는 본 연구 표본의 크기에서 통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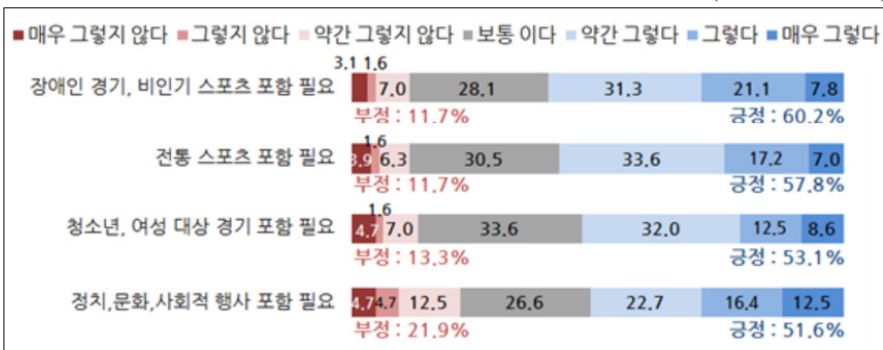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구체적으로 다양한 종합경기와 종목별 경기를 각각 제시하고 국민관심행사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할 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동·하계 올림픽(각각 64.7%, 63%)과 FIFA 주관 월드컵 축구 중 성인남자 국가대표팀 출전 경기(57.4%)에 대해서만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그 외 현재 국민관심행사에 포함되어 있는 경기들에 대해서는 국민관심행사로 지정할 필요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즉, 각각의 경기에 대해 질문했을 때는 첫 번째 목록에 포함된 경기 정도만 국민관심행사 지정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것이다.

현재 국민관심행사 고시에서 명시한 것 외에 추가할 행사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장애인 경기, 비인기 스포츠도 포함해야 한다고 대답하였으며(60.2%) 전통 스포츠(57.8%), 청소년 및 여성 경기(53.1%) 역시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스포츠 이외에 정치, 문화, 사회적 행사 역시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데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동의하였다(51.6%).

〔그림 5-11〕 국민관심행사에 추가해야 할 행사

(N=533, 단위: %)



제 3 절 전문가 심층조사 결과

보편적 시청권 제도 자체가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면접 및 서면 조사에서는 일반인에 대한 조사와 중복되는 일부 항목 외에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화, 단편보도권 도입 등 일반인들이 대답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도 질문하였다. 조사에 응한 전문가들이 모두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일반인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응답과 비슷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1. 보편적 시청권의 의미와 대상

방송법에서 정의하는 보편적 시청권과 별개로, 보편적 시청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조사에 응한 전문가 대부분은 일반인 조사에서처럼 보편적 시청권은 가능한 많은 국민이 국민으로서 기본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콘텐츠 또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access right)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방송법은 방송이 다양한 계층 간 화합을 도모하고 조화로운 국가 발전과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책임이 있으며(방송법 제1조, 제5조, 제6조), 헌법은 국민의 알 권리,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으므로(헌법 제10조, 제11조, 제21조) 스포츠 경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국민적 관심행사를 보편적으로 시청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 시청권이어야 한다는 데에 전문가들은 동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과 같이 국민관심행사 고시를 통해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 대상을 스포츠 경기 위주로 국한하는 접근방식은 제고되어야 하며, 재난 정보와 같이 국민재산과 생명보호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콘텐츠를 가능한 많은 국민이 시청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보편적 시청권의 의미로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보편적이라는 개념은 국민 대다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전문가 G), 원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를 스포츠에만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운동경기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교양 및 정보, 재난 방송, 선거방송, 남북통일 관련 행사 등이 모두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방송법 제76조 제2항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중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공직선거법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 제82조, 제82조의 2에 따른 선거방송,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의 식과 부수되는 행사의 중계방송,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나로호 발사 같은 국가적 차원의 행사 등이 모두 국민이 마땅히 접근 가능해야 하는 정보라고 본다. (전문가 D)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와 같은 제도의 명칭 및 방송법 제2조에 포함되어 있는 보편적 시청권의 정의 자체를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 정도로 축소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전문가 A). 반면, 방송법에서 정의하는 보편적 시청권의 정의 자체는 이미 충분히 포괄적이라는 대답도 있었는데, 이들의 시각에서는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고시가 방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편적 시청권의 정의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전문가 B, D).

방송법 제2조의 25에 있는 보편적 시청권의 정의는 이미 ‘그 밖의 주요 행사 등’까지 명시하고 있으므로 충분히 넓은 범위다. 단지 이를 구체화한 시행령이나 고시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전문가 D)

실제로 조사에 응한 전문가의 절반 이상은 현행 방송법은 보편적 시청권의 정의에서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와 그 밖의 주요 행사 등’을 국민관심행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고시를 통해 명시한 국민관심행사의 범위는 체육경기대회로 한정되어 양자 간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보편적 시청권은 곧 스포츠 중계방송의 시청권이라는 도식으로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문가 D)

이러한 의견과 달리, 고가의 중계권 구매가 필요한 일부 체육경기 외에 다른 국민적 관심행사까지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체육경기 이외의 행사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지 여부의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고, 이를 평가하는 기준도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 판단 기준에 대한 국민들 간 합의도 어려울 뿐더러, 오히려 국민 간 갈등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콘텐츠까지의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전문가 F). 또한 다른 주요 행사들은 스포츠 분야처럼 고액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거나, 사업자들이 주요 행사들을 공익성 차원에서 자체적 판단에 따라 편성하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였다(전문가 G). 비슷한 맥락에서 전문가 D는 국민관심행사는 시장 논리에 따라 더 많은 시청자를 유인하기 위해 방송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별도로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보편적 시청권을 법으로 보장해야 할 행사’들은 사업자들이 ‘보편적 시청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행사’이기 때문에 비용 대비 수익 극대화가 가능한 행사 즉, 광고 및 협찬 수익이 많은 인기 스포츠 경기로 그 대상을 한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문가 D)

스포츠 분야로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 중에서도 패럴림픽과 같이 사회적 다양성 보장을 위해 방송되어야 할 체육 경기대회 또는 선거 출구조사 등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들은 공익적 측면에서 보편적 시청이 보장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단, 법으로 지정된 국민관심행사는 방송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 대비 수익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통신 분야의 보편적 의무 손실 보전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보편적 시청 제공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련 사업자 집단 또는 정부가 예산 부담 및 지원을 담보할 때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전문가 B).

특정 콘텐츠들에 대한 시청을 개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개별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러한 콘텐츠들이 편성되는 채널 단위로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보편적 시청권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전문가 A). 일반인 대상 조사에서도 특정 콘텐츠가 아니라 공영방송 또는 지상파 방송 등 채널 자체를

언급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결과에서처럼 전문가들 또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 방송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물리적 및 내용적 접근권의 확보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나 행사의 중계방송 제공을 법으로 의무화하여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 자체가 과연 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전문가G는 방송사업자의 책무에 해당하는 방송법 제5조나 제6조에서 보편적 시청권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방송법에서 국민화합에 기여해야 한다는 제5조 제2항 정도가 주요 스포츠 경기나 국민적 관심행사의 제공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 조항이 반드시 스포츠 경기나 국민적 관심행사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조항은 아니라고 본다.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 자체가 방송의 공익성과 방송사업자의 공적책무의 차원에서 도입되었다는 논리의 법률적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전문가 G).

2.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방식

보편적 서비스는 원론적으로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념화되어 있으며, 일반인 대상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의 중계는 무료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반복해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방송법 제2조에 포함된 보편적 시청권의 정의에는 이러한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에 응한 전문가 일곱 명 가운데 한 명을 제외하고는 ‘추가비용 없이’ 또는 ‘무료로’ 라는 용어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국내 유료방송 가입률이 높아서 ‘무료’라는 용어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대신 ‘추가비용 없이’를 제안하는가 하면, 반대로 ‘추가비용 없이’ 라는 용어는 무료 지상파와 유료 플랫폼을 구분 짓는데 있어서 혼선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무료로’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가 B는 무료라는 용어가 방송법의 정의 조항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는 입법 당시의 매체 환경 즉, 지상파방송 외에는 다른 사업자가 중계권을 획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지상파방송은 당연히 무료로 별도 비용 없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런 정의가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하면서 무료 또는 추가비용 없이 등의 용어가 반드시 추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무료라는 단서를 보편적 시청권의 정의 조항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 역시 유료로 제공되어도 무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는 사업자가 시청자 반응을 고려하여 자율적 판단 하에 무료 혹은 저가로 제공하게 되므로 구태여 비용에 대한 부분을 보편적 시청권의 정의에 추가하는 수정 작업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이다(전문가 G). 이와 함께 ‘무료’ 또는 ‘추가비용 없이’ 라는 용어를 추가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시청자 차원의 부담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무료의 개념이 사업자 간 중계권 또는 자료화면 거래에까지 적용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전문가 D).

접근권의 보장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을 막론하고 도달률이 어느 정도 이상인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적 “서비스”라고 하면 국민 대부분이 시청하고 있는 채널을 지칭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들이 필수 콘텐츠, 특히 고액의 중계권 계약이 필요한 인기 스포츠 경기 등의 중계방송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편적 시청권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나 수신료가 투입되는 공영방송이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각도 있다(전문가 B, 전문가 C).

유료방송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매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 간 이견이 존재하였다. 가령, 전문가 G는 보편성에는 국민 대다수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전국에 도달 가능한 무료 지상파방송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지만, 도달률이 높은 IPTV를 포함하는 유료방송도 보편적 매체로 규정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전문가 D는 보편적 방송 서비스는 개인의 여건이나 능력 등과 무관하게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가능하다는 뜻이므로, 단순히 가입자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유료방송이 보편성을 만족시킨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재난방송과 같은 필수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화재로 인한 전송망 손실 등 재난 상황에서는 시청이 불가능한 IPTV 등은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매체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다. 결국 보편적이라고 하면 시청자가 별도의 계약에 따른 추가적인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매체는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 매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차별 없이 접근이 가능해야 하는데, 유료방송의 종합편성 채널도 이제는 의무재전송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유료방송이 무료 지상파 방송과 유사한 수준의 보편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 (전문가 E)

비슷한 맥락에서 포털 등 모바일 매체는 방송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이용에 있어서 노인이나 장애인 등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소외계층의 접근권이 차단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편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전문가 F).

다시 말하면, 보편적 서비스는 그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실제 이용현황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론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가구가 유료방송을 시청한다 해도 유료방송은 어디까지나 사업자와 시청자 간 유료계약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이러한 계약 없이도 보편적 접근이 가능한 주파수 기반의 방송사업자 즉, 지상파 방송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3. 방송과 통신을 포괄하는 보편적 서비스 제도화

방송에서도 통신 분야처럼 보편적 서비스 규정을 법제화하고 장기적으로 방송과 통신을 포괄하는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제도화가 가능할 지를 묻는 질문에 전문가 대부분은 방송과 통신의 근본적 차이로 인해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제도적 부담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특히 후자는 보편적 서비스의 제도화는 보편적 서비스의 선정 및 이를 제공할 사업자의 지정,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수행 과정에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재정적 손실은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재 방송법에는 보편적 시청권의 정의 및 국민관심행사 중계권과 관련하여 사업자 간 거래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면 직접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명시하는 조항은 없는 상태이다. 다만,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최소한의 이용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보편적 서비스의 취지를 담고 있는 조항들이 일부 이미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 가령, KBS의 난시청 의무해소,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신료 면제, 장애인 시청지원, 재난방송, 지상파 의무재송신, 유료방송사업자의 공익채널 편성 의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들을 묶어서 방송에서 보편적 서비스를 규정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전문가 A, 전문가 F),

이와 달리, 일상생활에서 필수성 정도를 생각할 때 통신에 비해 방송은 필수불가결한 정도가 낮아서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도입하더라도 방송에서 필수 보장 범위는 통신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으며, 양방향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써 통신과, 콘텐츠 전송의 통로로써 방송의 근본적 차이 때문에 두 분야를 아우르는 개념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유사한 논리로 전문가 G는 통신은 내용중립적인 성향이 강하고 서비스 자체에 대한 접근을 제도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방송은 전달되는 콘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 보장 즉, 내용지향적인 관점의 보편성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두 분야를 아우르는 보편성을 제도화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유의미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의무 수행에 따른 재원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필요한데 이 역시 현실적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전문가 B). 제도적 부담 중 하나로 A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라 장기적으로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방송법의 전체 틀을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방송 분야에서 본격적인 보편적 서비스의 도입은 쉽지 않으므로, 전문가 C

는 보편적 시청권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대신 시청자 권익 차원에서 보편적 시청권을 구현할 주체와 대상을 명확하게 보완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4. 시청자 권익보호 강화

보편적 시청권이 구체화되어 있는 방송법 조항을 살펴보면, 보편적 시청권개념이 국내에 도입되는 과정에서 시청자 권리를 보장하려는 원래의 정책 취지와 달리 사업자 사이의 과도한 경쟁 방지 등 다른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변용되었다는 평가가 있다(심석태 2007, 주성희 외 2015). 이러한 지적을 참고하여 시청자의 권리 확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문가들은 시청권의 보장은 곧 다른 권리의 제한, 즉 사업자의 재산권과 영업권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므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청자 권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법에 따라 제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전문가 C). 사업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헌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반드시 국회의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보편적 시청권은 곧 스포츠 중계방송의 시청권과 같은 의미로 개념이 축소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사업자간 갈등 조율을 통한 시청자 권익보호 정도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전문가 D), 이는 제도적으로 보편적 시청권 개념을 확대하고 국민관심행사가 명실상부하게 국민적 관심이 높은 비스포츠 행사까지 포괄하도록 정비하기 전에는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논의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스포츠 중계권을 구입하는 중계권자와 비중계권자간의 갈등에 대한 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청자 권익보호는 결국 스포츠 경기의 순차편성이나 재방송 의무와 관련된 규정 정도에 머무르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고액의 국제 스포츠 경기의 중계권료와 실제 중계방송의 제작비를 고려하면 중계방송에 대해 특정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며, 사업자의 권리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도입하는 것 역

시 제도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해외에서도 사업자 간 협의 권고 정도의 수준이 대부분이다. (전문가 A)

이러한 맥락에서 전문가 G는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시청자의 권익보호는 시청자가 원하는 콘텐츠에 대한 시청기회 즉, 선택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며, 현행 제도에에서는 권고 사항인 법 제76조의 4(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와 과도한 국민 관심행사 편성을 제한할 수 있는 법 제 76조의 5(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에 대한 의무 수준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행 법령에서 어떤 사업자도 중계권을 구매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미비하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청자 권익의 보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 전문가는 시청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 지상파채널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무료 지상파채널의 동시재전송시 지상파와 동일한 채널 번호를 부여하고 지상파 채널 사이에 홈쇼핑 채널을 무분별하게 편성하는 것을 제한하여 공영방송, 지상파방송, 공공채널 등에 대한 접근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전문가 C). 그러나 이러한 방안 역시 플랫폼 사업자의 채널 구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5. 매체 환경의 변화와 보편적 시청권 보장

보편적 서비스는 그 대상과 범위가 기술발전과 매체 환경 변화, 경제,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유동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매체를 특정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보편적 시청권의 중계방송 매체로 새롭게 추가할 매체가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일부 전문가는 보편적 시청권을 반드시 공영방송이 해야 한다거나, 유료방송사업자를 제외할 필요나 당위성은 없으며,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매체의 선정은 순

전히 정책적 판단과 결단의 문제라고 대답하였다(전문가 C). 방송법령에는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을 지상파방송사업자만 담당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중계권 획득의 자격 요건과 제한 등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사업자가 중계권을 구매할 경우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는 도달 범위를 확보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르면 법정 도달 범위를 충족시킨다면 어떤 플랫폼 사업자가 행사주최권자와 협상하여 중계권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할 근거는 없다(전문가 B, G).

그렇다면 최근 도달 범위가 증가하고 있는 포털도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매체가 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선 포털 서비스 자체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이기 때문에 방송 분야의 공적 책무를 부여할 근거도 미약하고, 사회적 책임이 있는 기업이 아니므로 공식적으로 보편적 시청권의 매체로 포함시키기 어렵다. (전문가 A)

포털이나 동영상 사이트는 법적 지위가 방송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쟁조정 외에는 방통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전문가 G)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국민들이 포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통해 중계방송을 시청이 가능하도록 포털에 대한 2차 중계권 판매를 권고하거나, 또는 중계권을 가진 사업자들이 보완적 서비스로서 자사의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포털 등을 통해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방송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대답하였다(전문가 B). 한 전문가는 포털은 광고 시청을 강제하므로 유료방송의 범주에 포함된다고도 볼 수 있으며, 유료방송과 포털의 국민관심행사 중계는 무료 지상파방송의 중계권 2차 판매 또는 의무제공 등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전문가 E).

다른 전문가들 역시 향후 서비스 차원에서 다양한 접근 경로를 혼합하여 접근 보장의 총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령, 지상파방송이 유료방송에 추가적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회사의 유료방송 채널에서도 의무적으로 본 채널에서 중계하지 않는 비인기경기 또는 공익적 행사의 중계방송을 제공하도록 해야 하며, 여의치 않는 경우 VOD 형식으로도 시청할 수 있는 방안을 제

공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라는 뜻이다.

6. 우선 중계방송권자 지정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매체로써 일반인과 전문가를 막론하고 무료지상파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많았기 때문에 무료지상파가 주요 행사의 중계방송권을 우선 획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우선 중계매체를 공영방송 등 특정 플랫폼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굳이 보편적 시청권 보장매체를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전문가 A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유료방송이 법률로 정하는 도달률을 충족할 수 없어서 지상파가 우선 매체가 되는 것뿐이며, 현재 명시적으로 지상파를 우선 중계방송권자로 지정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대답하였다. 우리나라는 미디어 환경이 달라서 해외의 사례를 그대로 답습할 필요가 없으며, 무료 지상파공영방송사로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주체를 지정하기 보다는 스포츠 중계에 충분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방송사끼리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방송 생태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전문가 B).

공영방송을 포함하여 무료 지상파방송을 우선 중계매체로 특정 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현재 지상파방송이 명실상부하게 특별한 소외계층 없이 가장 많은 국민이 부담 없이 이용하는 매체일 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은 다른 매체와 구별되어 더 강한 공적 책무가 요구되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공영방송을 더 강조하는 의견은 거의 모든 가구가 이미 수신료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매체가 당연히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주체가 되어야 더 이상의 추가비용 없이 국민관심행사의 시청권 보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전문가 D, E, F). 이 경우 중계권료 협상과 편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지양하고 공영방송사가 공익적 측면에서 물리적, 내용적, 보편적 시청권을 구현하는 방안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7. 국민관심행사 목록 구분과 선정 기준

현행 국민관심행사 고시는 가구 도달률을 기준으로 국민관심행사를 두 집단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러한 분류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가구 도달률, 즉 커버리지를 임의로 나누는 대신, 우리나라 방송산업의 구조를 투영해서 무료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이 중계해야 할 행사 목록을 나누는 방안을 제시한 전문가도 있으나(전문가 C), 대체로 현재의 분류 기준이 적절치 않다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만약 도달률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면 보편성의 최소한 확보라는 차원에서 기준을 75% 정도로 낮춰서 단일화 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대답하였다.

특히 플랫폼별 도달률의 정확한 파악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을 한 전문가 A는 도달률 산정 시 부처 간 기준이 달라 혼선이 있으며, 단자 수만 기준으로 산정하면 전체 가구 수를 훨씬 초과하지만, 중복가입 단자를 제외하면 종편 4사만 간신히 90%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도달률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그에 따르면 현재 직접 수신 가구 수 역시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정 커버리지를 조절하는 것은 어려우며 차라리 커버리지 기준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고 재원과 역량이 확보된 방송사끼리 경쟁하여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의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 이때 커버리지를 낮춰서 유료방송 채널까지 중계방송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유료방송 미가입 가구가 시청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보완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도달률에 근거한 기존의 분류를 폐지하되 우선 매체를 지정하고 독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는데(전문가 B, D) 이는 우선 매체를 지정하면 사업자간 과당 경쟁도 막을 수 있을뿐더러 사업자 권리제한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편적 시청권의 기본 취지를 고려할 때 가입률 현황과는 별개로, 사업자와 시청자 간 별도 계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모든 국민이 접근가능한 매체를 보편적 시청권 보장的主체로 선정해야 하므로 지상파방송을 우선 매체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전문가 D).

한편, 국민관심행사 고시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주요 행사를 대상으로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근거로 국민관심행사 목록이 구성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국민관심행사 고시의 개정을 검토하는 보편적 시청권 위원회 역시 구체적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전문가들 역시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 대상인 국민관심행사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시청률로 대표되는 ‘관심도’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국민적 관심이 다소 적더라도 공익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행사들이 명시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모법인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보편적 시청권의 정의는 체육경기 대회 외의 행사까지 포섭하고 있지만, 위임을 받은 하위 법령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전문가 D, E).

현재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나, 구체적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선호도나 요구, 또는 국가적 정체성과 사회 통합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임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응답이 존재한다. 전문가 D는 시청률 등 국민적 관심도만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에서 명시하는 방송의 공익적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국민의 화합과 문화적 동질성 등 방송법에서 명시하는 보다 상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지 등이 고려대상이 되어야 한다. (전문가 D)

비슷한 맥락에서 전문가 B는 보편적 시청권 개념 하에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와 공익적 행사를 병렬로 두고 관련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하였다. 이 경우 국민관심행사라는 명칭이나 국민의 관심의 정도를 기준으로 서술된 보편적 시청권의 정의 역시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의견들과 달리 새로운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현행 법령에서 제도화하고 있는 것보다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 역시 존재한다(전문가 F, G).

이처럼 국민관심행사 선정 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 필요한 콘텐츠는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국민의 시대적 필요를 확인하고 국민관심행사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은 권리의 제한을 수반하므로 국민관심행사 선정 기준과 조건들을 반드시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점에 전문가들은 의견을 같이 한다.

8. 단편보도권

주요 행사의 중계권을 획득한 사업자에게 적절한 비용을 지불한 뒤 짧은 보도 프로그램용 자료화면을 비중계권자가 직접 취재하거나 중계권자의 신호를 받아 대가를 지불하고 보도 프로그램에 사용할 자료화면을 직접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단편보도권에 대해 그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들도 있으나 신중한 접근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다.

단편보도권은 독점중계권자 외 기타 사업자의 중계 및 취재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경쟁과 다양성이라는 또 다른 미디어 정책의 핵심가치를 실현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업자 간 갈등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무료 자료화면 제공의 옵션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있었으며(전문가 A, C), 단편보도권은 중계권을 구매할 의욕을 저하시키거나 중계권을 구입한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으므로 실익과 비교하여 도입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다(전문가 B).

또한 가용한 전문 중계 장비나 인력, 중계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지상파방송사를 포함한 소수를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다른 방송사가 국민관심행사를 직접 취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자료화면을 편집할 수 있는 단편·편집권'의 제도화가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도 있었다(전문가 F, G).

제 6 장 결론 및 제언

제 1 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및 전문가 의견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 시청권의 재개념화와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분석 외에 실증 조사로 일반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일반인 대상 온라인 서베이를 수행하였으며,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주제의 추상성 및 생소함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면담을 병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보편적 서비스와 관련된 문헌 연구 결과 보편적 시청권은 통신 분야의 보편적 서비스에서 기인하지만 방송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개념으로, 특히 국내에서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강조하여 시청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물리적 차원에서 보편적 서비스는 서비스 자체에 대한 접근권이기도 하지만, 방송사업자가 제공해야하는 일종의 의무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정해지는 반면, 보편적 시청권은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으로 시청자의 권리로 해석가능하다. 아울러 방송의 공공성에서 비롯되는 공익성의 큰 개념 하에 다른 여러 가치들과 함께 방송의 보편성이 편입되고 있으며 보편성 안에는 보편적 서비스와 보편적 시청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자는 사업자의 측면에 좀 더 관계된 것이라면 후자는 시청자 시각에서 보편성을 구현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해외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을 직접적으로 ‘지정 행사 목록’또는 ‘주요 행사의 중계’라는 구체적 명칭 아래 주요 국민적 관심행사의 무료 시청을 보장하는 제도로 구현하고 있다. 이와 달리 국내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좀 더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명칭 아래 해외의 지정 행사 목록 제도와 유사한 내용의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 제도의 실체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 거래에 관한 내용 위주이며, 국민의 시청권을 실제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일반인 대상 및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 보편적 시청권은 지상파나 유료방송 등 도달률이 높은 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소외됨 없이 무료 또는 저가로 이용하고, 이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필수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된다. 여기에는 통신 분야처럼 기본적인 하드웨어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 차원도 포함되지만, 콘텐츠 즉 내용 차원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40~50대의 경우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보다는 물리적 접근성을 강조하여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서 통신 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에 근접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송은 통신과 달리 전달되는 콘텐츠를 통해 정치, 사회, 문화영역에 걸친 다양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므로 기본적인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핵심요소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방송통신의 융합에도 불구하고 방송과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는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방송에서는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채널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과 이를 통해 전달되는 특정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의 이중적 접근권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인과 달리 전문가들은 유료방송을 보편적 서비스 내지는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는 매체로 간주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보편적 서비스는 사업자와 시청자 간에 별도의 계약 없이도 접근이 가능해야하는 접근의 보편성을 담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어느 수준의 도달률을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편적 서비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셋째, 현재 국내에 제도화되어 있는 보편적 시청권은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원론적 인식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 조사에서도 공통적으로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기본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콘텐츠에 대한 시청권을 보장하는 것이 보편적 시청권이라는 인

식이 지배적이다. 일반인 대상 조사에서 이러한 인식은 특히 20~30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대부분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콘텐츠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을 스포츠 분야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으나, 이는 필수 콘텐츠가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이 아니라기보다는 가장 시청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가 고액의 중계권료가 걸린 스포츠 경기이기 때문에 이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다른 핵심 콘텐츠는 사업자가 스스로 편성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굳이 이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의 실효성이 적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다면 스포츠 분야 외에도 예시적으로라도 다른 분야의 핵심 콘텐츠를 열거하거나, 적어도 공익적 차원의 국민행사기준을 명시화하는 것이 보편적 시청권과 실제 제도 간의 괴리를 줄이는 방안일 것이다.

넷째, 연령대에 상관없이 일반인 대상 조사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은 무료로 이루어져야 하며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매체로는 공영방송 내지는 지상파채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40~50대는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은 수신료를 납부하는 공영방송이 전담해야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모바일 세대라고도 할 수 있는 20~30대에서도 예상과 달리 포털이나 유료방송채널이 국민관심행사의 중계권을 획득하면 시청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무료지상파를 중심으로 운용하되, 모바일이나 온라인에서 주요 행사의 중계를 시청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적 보완 장치에 대해서는 20~30대가 좀 더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하였다.

전문가 집단에서는 무료 지상파 또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긴 하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 매체를 지정하는 대신 어느 정도의 도달률이 확보되는 경우 다양한 사업자 간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전문가 집단에서도 해당 매체에 대한 접근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채널 보다는 서비스 개념으로 접근하여 웹 또는 앱 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하여 더 많은 국민에게 보편적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은 일반인 20~30대와 공명하는 내용이다.

다섯째, 구체적 국민관심행사 목록에 대해서는 연령 및 전문성과 무관하게 대체로 스포츠 분야로 제한된 현재의 목록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관심행사 목록에 포함할 콘텐츠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시청률이나 여론 조사로 측정 가능한 국민적 관심 외에도 공동체 유지 차원의 공익적 목적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데에 일반인 집단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전문가 집단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국민관심행사의 선정 기준을 두고 집단 간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관심도뿐만 아니라 공익적 성격의 선정 기준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하되 이를 법과 제도로 명시하고 정기적으로 그 적절성을 검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연령대별 응답의 차이는 보편적 시청권이 매체 환경과 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디지털, 모바일 세대라고 할 수 있는 20~30대의 응답은 콘텐츠에 좀 더 집중하고 있어서 방송 분야에서 보편적 서비스는 내용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다루어야 한다는 기존 연구들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김영주 2008, 봉미선 2016). 40~50대는 통신 분야에서 보편적 서비스가 강조하는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접근 차원에 좀 더 가까운 입장이 많았으며, 보편적 시청권의 비용 측면에서도 20~30대에 비해 비교적 무료 접근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었다.

일곱째, 방송매체 환경 변화에 따라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매체로서 포털 서비스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일반인 및 전문가에 대한 조사결과 신유형 서비스를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주요 매체로 수용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주요 행사의 중계권은 가능한 도달권의 범위 제한이 없거나 추가 계약의 비용 부담이 없는 공영방송 또는 지상파채널이 전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30세 이하 젊은 세대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청은 이동 등 부득이한 경우에 보

조적 방안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영방송 또는 지상파채널 웹사이트 등을 통한 중계방송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이는 전문가 집단에서 논하는 서비스 차원의 접근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담당한 사업자는 주 채널 외에도 다양한 보조적 유통 경로를 활용하여 더 많은 국민에게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 및 국내 법제도에 대한 분석의 결과 현재 국민의 시청권 보장이라는 정책적 목적과 달리 현재 국내에서 방송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중계방송 중단 또는 중계권 구매 거부 등으로 인한 시청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장치가 부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된 금지행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독점중계권을 획득한 사업자가 해당 행사의 중계방송을 하지 않거나 이를 적시에 다른 방송사에게 재판매하지 않아서 중계방송이 제공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사후에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뿐이며, 중계방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행사 중계권 자체를 아무도 획득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 정책적 제언

상술한 연구결과와 함의를 반영하여 향후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정책정비 방안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제언이 가능하다.

전문가 면담 결과 일부 전문가는 현행 방송법상의 보편적 시청권의 정의 자체는 ‘무료’ 또는 ‘추가비용 없이’라는 조건 외에는 정책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하였다. 보편적이라는 용어 자체에 이미 대상과 콘텐츠, 접근 등의 보편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조사의 결과 많은 응답자들이 무료 또는 별도의 계약없는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바, ‘무료’ 또는 ‘추가비용 없이’라

는 문구가 보편적 시청권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보편적 시청권의 정의 자체는 포괄적이나 구체적 시행령이나 고시 단계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일반인 조사에서도 보편적 시청권이 의미하는 바가 구현된 국민관심행사 목록에 대해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중계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국민관심행사의 목록의 선정에 있어서 국민적 관심 외에 국가통합, 공동체 의식 함양 등 공익적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명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관심행사 선정 기준과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스포츠 경기들은 제외하고, 중계방송을 보장해야 하는 비스포츠 행사를 예시적 형태로라도 선언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의 고시명인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 행사’에도 좀 더 부합할 것이다.

한편, 90%, 75% 도달률에 근거한 현재의 국민관심행사 목록 구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매체별 도달률의 정확한 검증도 어려울뿐더러 75%, 90%라는 기준이 더 이상 유료와 무료 매체를 구분하는 명확한 준거로 작용하기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도달률을 기준으로 하는 국민관심행사 목록 구분을 삭제하고 단일 목록으로 재구성 하되, 가능한 한 많은 국민의 시청이 가능하도록 중계권자와 비중계권자 간의 중계권 거래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필요 시 공정거래 관련 타 법령을 준거로 할 것을 제언한다.

추가적으로, 보편적 시청권과 관련하여 현재의 사업자간 거래와 관련된 금지행위 외에, 사업자와 시청자 간의 관계 차원에서 시청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 규정이 필요하다. 독일의 사례처럼 중계권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 간에 협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해당 행사는 국내 중계권을 획득한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방송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관심행사의 중계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보편적 시청권 보장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중계권을 획득하거나 방송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에서 최소한의 중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일반인 대상 인터뷰와 전문가 대상 심층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매체는 공영방송 내지는 전국에서 무료로 시청 가능한 지상파채널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최근 중장기 방송정책의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구분, 무료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의 역할에 보편적 시청권 보장的主导적 역할을 담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공영방송은 이미 난시청 해소, 소외계층에 관한 콘텐츠 제작·방영 지원 등의 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비록 명시적 타이틀은 없지만 이미 보편적 서비스 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매체로써 공영방송에 대해 국민관심행사의 중계권을 우선 획득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단,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국민관심행사 목록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고액의 중계권을 획득한 방송사의 영업권, 재산권 및 편성권한 침해를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며, 아울러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처럼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의 손실 보전 및 재원 충당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방송사업자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단편보도권, 또는 보도용 용 무료 자료화면 취재권 내지는 편집권의 도입 역시 제안한다. 유럽 국가들은 EU 차원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의 일환으로 단편보도권을 도입하여 비중계권자로 하여금 적절한 행사장 출입비와 장소/설비 이용료를 지불하고 짧은 보도 프로그램의 화면을 취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단편보도권의 직접 행사가 어려울 때에는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중계권자의 화면을 제공받아 편집할 수도 있어서 중계권자의 영업자유 및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보도의 다양성의 확보를 추구한다. 그 결과 우리나라와 달리 무료 자료화면의 품질과 내용에 대한 방송사업자 간 분쟁이 비교적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 보편적 시청권은 시청자의 권리 확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업자의 권리를 어느 정도 제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업자 사이의 합의를 바탕으로 비중계권자가 행사를 직접 취재하여 짧은 보도용 자료화면을 제작하도록 허용하거

나¹⁴⁾ 기술이나 인력, 비용 문제 등으로 인해 비중계권자가 직접 행사 취재를 할 수 없는 경우 짧은 보도화면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중계권자로부터 자료화면을 제공받아 편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였으나 현재 방송법에 제도화 되어 있는 보편적 시청권을 기반으로 논의를 전개한 결과 정책 정비에 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보편적 시청권 제도 도입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방송사 간의 중계권 거래관행 등 현실적인 차원에 논의가 집중되어 본격적인 이론적 논의 자체가 많지 않은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보편적 시청권은 방송의 공익성 및 시청자 복지와 관련하여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전개될 수 있으며,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과 관련된 이론적 체계의 핵심적 부분을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본 연구를 시초로 하여 좀 더 많은 이론적 논의가 전개되기를 희망한다. 특히 보편적 시청권은 방송환경과 이용행태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개념이므로 이후에도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이를 실체화하는 구체적인 정비방안들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한정된 연구 재원으로 다양한 연구 방법들을 동시에 채택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지역의 시청자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유료방송의 도달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지상파 직접 수신가구의 비율도 한 자리 수일 것으로 추산되므로 방송매체 이용에 있어서 큰 편차가 없을 것으로 보고 연구의 편의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 집중하여 연구를 수행한 결과이다. 그러나 연구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직접 수신가구의 보편적 시청권은 방송의 보편

14) 물론, 이 경우에도 행사장 출입을 위한 입장권 구매, 장비나 좌석 활용과 관련된 등 기본적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

성 관련 논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바, 후속 연구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의 시청자 특히 직접 수신가구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방법론적 차원에서 본 연구의 주제가 되는 보편적 시청권은 일반인들에게 생경한 주제이므로 온라인 실증조사에서 응답 가운데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이 작용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편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심화된 설문문항 개발 및 검증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인 대상 조사에서 유료방송 또는 포털 등이 주요 행사의 중계방송권 획득 경쟁에 참여하여 그 비용이 시청자에게 전가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유료방송 채널 JTBC의 올림픽 중계권 획득으로 인해 스포츠 경기 중계권과 관련된 기사들에 노출되어 프레이밍 또는 학습된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노이즈를 제거하고 조사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는 국민관심행사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시청률 외에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지표의 개발 또는 선정 방안을 연구하여 보편적 시청권, 보편적 접근권이라는 명칭과 개념에 부합하는 제도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정호(2005),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 도입 논의”, 『정보통신정책』 17권 1호, pp.39-43.
- 김대호(2009), “방송 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정책 연구”, 『정보통신정책』 16권 3호, pp.1-28.
- 김영주(2008), “방송산업에서의 보편적 서비스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2(5), pp.53-92.
- 김원제 · 조항민 · 김찬원(2013), “중계가능 방송사업자 요건 및 지정고시를 위한 가 시청가구 비율과 국민관심행사에 관한 시청자 인식변화 조사”, 유플러스연구소 연구보고서.
- 노창희 · 남승용 · 윤금낭 · 박정인(2017), “다매체시대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17-27, 방송통신위원회.
- 노컷뉴스(2019. 6. 5.), “JTBC 2026년~2032년 올림픽 중계권 획득…지상파 반발”.
- 메조미디어(2018. 11. 1.), “2018 디지털 동영상 이용행태”,
(<https://www.slideshare.net/MezzoMedia/mezzomedia-2018>, 검색일: 2019. 4. 25).
- _____ (2018. 5. 16.), “2018 스포츠 마케팅의 2막, 글로벌 축구 이벤트가 온다!”
(<https://www.slideshare.net/MezzoMedia/2018-97256856>, 검색일: 2019. 4. 25).
- 미디어오늘(2019. 6. 4.), “방송협회 “JTBC 올림픽 중계, 보편적 시청권 위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372>, 검색일: 2019. 7. 6).
- 박성철(2010), “스포츠 중계와 시청자 복지”, 『전파방송통신저널』 2010 April, Vol 24. pp.5-17.
- 방석호 · 정상조 편저(2004), 『정보통신과 디지털 법제』 커뮤니케이션북스.

- 봉미선(2011), 스포츠 중계권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 방안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봉미선 (2016). “리우 올림픽 방송, 추가 비용 없이 모두 다함께”, 『신문과 방송』 2016. 8, pp.64-69.
- 송해룡 · 김원제 · 정세일 · 조항민(2008), “보편적 시청권 국민관심행사 연구”, 연구 보고서 2008-10, 방송통신위원회.
- 심석태(2007), “방송법상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소고”, 『언론과 법』, 6(1), pp.257-288.
- 심홍진 · 육은희(2016), “국민관심행사 고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실증연구”, 방통 융합정책연구 16-22, 방송통신위원회.
- 윤혜선(2010),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 관한 소고.”, 『행정법연구』 28호, pp.49-67.
- 윤호진 · 최세경(2007), “디지털 융합 환경에서 방송영상 콘텐츠 공정접근과 보편서비스 연구”, 방송위원회.
- 이상규(2007), “통신서비스의 보편성과 융합,” <정보통신정책학회 정기학술대회 발제문>.
- 이상식(2003). “공익성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비교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2003. 2, pp.111-139.
- 정용준(2006), “보편적 서비스와 수용자 복지”, 『방송연구』 12, pp.31-58.
- _____(2012), “방송법의 국민관심행사 정책 비교 분석: 영국, 호주 및 한국을 중심으로”, 『스포츠와 법』, 15권 32호, 한국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법학회.
- 정용준 · 이희진 · 윤석환(2011), 『스포츠 방송과 보편적 시청권』, 서울: 컴북스닷컴.
- 정인숙(2006), “커뮤니케이션 환경 변화에 따른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 재구성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4권 2호, pp.69-94.
- 주성희 · 임세진 · 정은진(2015), 『방송 콘텐츠 공정거래환경 조성방안 연구: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시행방안 및 스포츠 중계권거래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방통융합정책연구 2015-44, 방송통신위원회.

- 최우정(2009), 『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독일편』 비교법제 연구 09-15-2-2, 한국법제연구원.
- _____(2011), “방송사의 단편보도권 도입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에 관한 연구”, 『공법학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 최은희(2012), 스포츠이벤트 독점중계에 따른 보편적 시청권 문제점과 개선책.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6권 4호, 291-304.
- DMC 미디어(2017. 12), “2018 평창동계올림픽 미디어 이용 행태 예측 보고서”, (<https://www.digieco.co.kr/KTData/Board/FILE/PDF/2018%20평창%20동계올림픽%20미디어%20이용%20행태%20예측%20보고서201801161516081737951.pdf>, 검색일: 2019. 3. 22).
- PD 저널(2019. 6. 4.), “올림픽 중계권 따낸 JTBC, 단독 중계 강행하나”.
- ABC(2019. 11. 7.). Seven and Foxtel win TV rights battle for cricket, but deal faces significant regulatory hurdles. (<https://www.abc.net.au/news/2018-04-13/cricket-coverage-shakeup-with-seven-and-foxtel-winning-rights/9652964>).
- Bayern.Recht(n.d.). RStV §4 (<https://www.gesetze-bayern.de/Content/Document/RFunkStVertr-4>).
- BBC(2019. 7. 17). Paralympics to join events that must be shown on free-to-air TV. (<https://www.bbc.com/sport/49026535>, 검색일: 2019. 11. 25).
- Broadband TV news(2019. 11. 6). Lords: Increase listed events to safeguard PSBs.
- Commonwealth of Australia(2010. 12. 21.). Broadcasting Services (Events) Notice (No.1) 2010. (<https://www.legislation.gov.au/Details/F2010L03383>, 검색일: 2019. 11. 25).
- Department of Communication and the Arts(n.d.). Anti-siphoning. (<https://www.communications.gov.au/policy/policy-listing/anti-siphoning>, 검색일: 2019. 2. 4).
- European Commission(2019. 4. 1). AVMSD-List of Major Events.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avmsd-list-major-events>, 검색일: 2019. 4. 25).

- Golf Monthly(2019. 11. 6). Lords report calls for open championship to be free to air. (<https://www.golf-monthly.co.uk/news/lords-report-calls-for-open-championship-to-be-free-to-air-188269>, 검색일: 2019. 11. 25).
- Mumbrella (2017. 5. 6). Government proposes to reduce anti-siphoning list by 100 events. (<https://mumbrella.com.au/government-proposes-reduce-anti-siphoning-list-100-events-442921>).
- News.com.au (2018. 6. 18). Football fans are fuming over Optus' World Cup coverage, but it's not entirely to blame (<https://www.news.com.au/sport/football/world-cup/football-fans-are-fuming-over-optus-world-cup-coverage-but-its-not-entirely-to-blame/news-story/16bae25cd85985f293d90e69a6cf7fe1>, 검색일: 2019. 8. 10).
- Ofcom(2006). Review of the Universal Service Obligation.
- _____(2010). Code on Sports and Other Listed and Designated Events1. <https://www.ofcom.org.uk/tv-radio-and-on-demand/broadcast-codes/code-sports-events>, 검색일: 2019. 7. 12).
- _____(2019. 7. 4). Statement: Listed Events(<https://www.ofcom.org.uk/consultations-and-statements/category-1/listed-events>, 검색일: 2019. 7. 12)
- Parliament of Australia(1998). Chapter 2 Anti-hoarding. (https://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Committees/Senate/Environment_and_Communications/Completed_inquiries/1996-99/broad/report/c02, 검색일: 2019. 5. 4)
- Sportbusiness(2019. 11. 26). Labour makes Cricket World Cup free-to-air TV pledge. (<https://www.sportbusiness.com/news/labour-makes-cricket-world-cup-free-to-air-tv-pledge/>, 검색일: 2019. 11. 29).
- _____(2019. 9. 20). Deutsche Telekom 'set to land' domestic Euro 2024 rights. (<https://www.sportbusiness.com/news/deutsche-telekom-secures-domestic-euro-2024-rights-report/>, 검색일: 2019. 11. 29).
- Strauss, A., & Corbin, J.(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

- 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Thousand Oaks, CA Sage
-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https://www.congress.gov/104/plaws/publ104/PLAW-104publ104.pdf>, 검색일: 2019. 4. 3).
- The Age(2002. 3. 24). SBS gears up for Cup (<https://theworldgame.sbs.com.au/nine-to-show-world-cup>, 검색일: 2019. 11. 20).
- The Conversation(2018. 7. 18). The winners and losers in the 2018 World Cup broadcast battle. (<http://theconversation.com/the-winners-and-losers-in-the-2018-world-cup-broadcast-battle-100018>, 검색일: 2019. 11. 20).
- The Sydney Morning Herald(2019. 5. 6). Anti-siphoning laws ‘need to be examined’ after cricket deal. (Anti-siphoning laws ‘need to be examined’ after cricket deal).
- The Telegraph(2019. 11. 5). Open Championship and Ashes should become ‘protected’ TV events to ‘unite the country’, say Lords. (<https://www.telegraph.co.uk/politics/2019/11/05/open-championship-ashes-should-become-protected-tv-events-unite/>, 검색일: 2019. 11. 25).
- _____ (2019. 7. 17) ‘Crown jewels’ list of free-to-air sporting events to be updated with women's sport guaranteed exposure.
- _____ (2017. 2. 14). BBC fears it could lose rights to major sporting events as broadcast rules ignore ‘iPad era’.
- The World Game(n.d; updated 2012. 9. 12). Nine to show Worldcup. (<https://theworldgame.sbs.com.au/nine-to-show-world-cup>, 검색일: 2019. 11. 20).

[부록 1] 보편적 시청권 관련 방송법 개정(2007, 2016)

보편적 시청권 관련 방송법 주요 개정 신·구문 비교

1. 2007년 개정(보편적 시청권 도입)

방송법 [법률 제8101호, 2006.12.28, 타법개정]	방송법 [시행 2007. 4. 27] [법률 제8301호, 2007. 1. 26, 일부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
1. ~ 24. (생략)	1. ~ 24. (현행과 같음)
<신설>	25. “보편적 시청권”이라 함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76조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76조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① 방송사업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송위원회는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문화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방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방송법 [법률 제8101호, 2006.12.28, 타법개정]	방송법 [시행 2007. 4. 27] [법률 제8301호, 2007. 1. 26, 일부개정]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방송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⑤ 방송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76조의2(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①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의 고시 등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송위원회에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둔다. ②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7인 이내로 위촉한다. ③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 <u>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u> ② 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방송법 [법률 제8101호, 2006.12.28, 타법개정]	방송법 [시행 2007. 4. 27] [법률 제8301호, 2007. 1. 26, 일부개정]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사무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무처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제76조의4(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방송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보편적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계방송권 계약에 있어서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 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76조의5(중계방송의 순차편성 권고 등) ① 방송사업자는 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을 사용함에 있어서 과도한 중복편성으로 인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널별·매체별로 순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채널별·매체별 순차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2. 2016년 개정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580호, 2015. 12. 22, 일부개정]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21호, 2016. 1. 27, 일부개정]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1. 중계방송권자등으로서 국민 전체가 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가구가 국민관심행사등을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이하 “보편적 방송수단”이라 한다)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신 설>	2. 중계방송권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을 보편적 방송수단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아니하는 행위
<신 설>	3.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신 설>	4.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뉴스보도나 해설 등을 위한 자료화면을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에 대하여 금지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금지행위를 하였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 ----- ----- ----- ----- -----.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③ ----- 금지행위를 하였거

[시행 2016. 6. 23] [법률 제13580호, 2015. 12. 22, 일부개정]	[시행 2016. 7. 28] [법률 제13821호, 2016. 1. 27, 일부개정]
금지사항의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였는지 ----- ----- ----- ----- ----- -----.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신설>	⑥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록 2] 일반인 대상 온라인 서베이 질문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인식 및 매체 이용행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방송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인식과 매체 이용행태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사에서 취득한 모든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제34조 (통계종사자의 의무)에 의거하여 응답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며 조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사에 포함된 설문 문항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느낌에 비추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료 분류용 질문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
2. 여

SQ2. 올해의 생일에 귀하는 만으로 몇 세가 되셨습니까(똥니까)?

1. 만 ()세

SQ3. 귀하는 다음 중 어떤 매체를 가지고 계십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 TV 수상기
2. 데스크톱PC 컴퓨터

- 3. 노트북 컴퓨터
- 4. 태블릿PC
- 5. 스마트폰

SQ3-1 앞에서 응답하신 기기 중 귀하가 영상물을 시청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기는 무엇입니까? 자주 이용하는 순서대로 3개를 적어주십시오.

- 1. TV 수상기
- 2. 데스크톱 PC컴퓨터
- 3. 노트북 컴퓨터
- 4. 태블릿
- 5. 스마트폰

SQ4. 귀하는 다음 기기를 이용하여 방송이나 동영상을 하루 평균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전혀 보지 않음	10분 미만	10분 이상 ~ 30분 미만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 2시간 30분 미만	1시간 30분 이상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1	2	3	4	5	6	7
TV 수상기							
데스크톱 PC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문2-1. 귀하는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을 주로 어떤 기기를 이용하여 시청하십니까?

프로그램 종류	주로 이용하는 기기				
	TV 수상기	데스크톱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1	2	3	4	5
1. 스포츠 경기 중계 방송					
2. 스포츠 뉴스 시청					
3. 기타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 (예: 스포츠 하이라이트 / 스포츠 매거진 / 스포츠 다큐 등)					

문3. 다음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귀하의 평소 관심도를 알려주십시오.

세부 항목	관심도		
	없는 편임	보통	높은 편임
	1	2	3
1.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중계			
2.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해외 프로 스포츠 경기 중계 (프리미어 축구경기, 메이저 리그 야구, NBA 농구 등)			
3.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국내 스포츠 경기 중계 (야구, 축구, 골프 등)			
4. 개인 선수가 잘 알려진 스포츠 경기 중계 (스케이트: 김연아, 사격: 진중오 등)			
5. 대중적 인기가 적은 스포츠 경기 중계 (육상, 다이빙, 승마 등)			

문3-1. 다음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한 귀하의 평소 시청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세부 항목	시청여부				
	전혀 시청 하지 않음	시청 하지 않는 편임	보통	시청 하는 편임	항상 시청함
	1	2	3	4	5
1.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중계					
2.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해외 프로 스포츠 경기 중계 (프리미어 축구경기, 메이저 리그 야구, NBA 농구 등)					
3.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국내 스포츠 경기 중계 (야구, 축구, 골프 등)					
4. 개인 선수가 잘 알려진 스포츠 경기 중계 (스케이트: 김연아, 사격: 진중오 등)					
5. 대중적 인기가 적은 스포츠 경기 중계 (육상, 다이빙, 승마 등)					

문4. 국가대표가 참가하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경기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나 다른 국가적 행사의 중계방송을 시청하실 때, 귀하는 주로 어떤 미디어 기기를 이용하십니까? 자주 이용하는 미디어 기기를 순서대로 표시해주십시오.
이용하지 않는 미디어 기기는 포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TV 수상기
2. 데스크톱 컴퓨터
3. 노트북 컴퓨터
4. 태블릿
5. 스마트폰

문10. 일반적으로 방송 프로그램 또는 동영상을 이용하는 시청자의 권리를 시청권이라고 합니다.

귀하는 혹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알고 계십니까?

- 1. 예
- 2. 아니오

문11. 방송에서 ‘보편적 시청권’이 의미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시고
다음 각 서술문에 대한 귀하의 동의 정도를 알려주십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조금 동의 하는 편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2	3	4	5	6	7
1) 보편적 시청권은 보편적 복지를 방송 분야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2) 보편적 시청권은 특정 연령, 지역, 성별에 치우치지 않고 방송을 시청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3) 보편적 시청권은 특별히 사회에서 소외되는 계층의 시청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4) 보편적 시청권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하다							
5) 보편적 시청권은 수신료 재원이 투입되는 채널(KBS, EBS)을 무료로 시청할 권리이다.							
6) 보편적 시청권은 채널이나 방송사와 무관하게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행사를 무료로 시청할 권리이다.							
7) 보편적 시청권은 유료, 무료에 상관없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채널을 자유롭게 시청할 권리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조금 동의 하는 편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2	3	4	5	6	7
8) 보편적 시청권은 무료로 확보되어야 한다.							
9) 보편적 시청권을 법·제도까지 동원하여 보장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10) KBS와 같은 공영방송이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							
11) KBS를 포함하여 MBC, SBS 등 무료 지상파가 함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							
12) IPTV(올레KT, SK 브로드밴드, LG U+), 종합유선 방송(CJ헬로비전, HCN 등), 위성방송(올레스카이라이프) 등 유료방송도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							
13)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서비스도 국민들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							
14) 보편적 시청권은 그 대상을 중계권료가 높은 스포츠 경기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15) 보편적 시청권은 그 대상을 인기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삶의 영위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까지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							
16) 보편적 시청권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특정 채널을 시청할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							
17) 보편적 시청권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방송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까지 포함해야 한다.							
18) 보편적 시청권에는 방송 서비스의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까지 포함해야 한다.							

* 다음은 현재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편적 시청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을 잘 읽고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법에서는 국민의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또는 그 밖의 주요 행사(일명, 국민관심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편적 시청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정한 “국민의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 행사” 고시에서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대상이 되는 국민관심행사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 동·하계 올림픽
 -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 출전 경기
2.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75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 동·하계아시아경기대회
 -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 출전 경기
 - AFC(아시아축구연맹) 및 EAFF(동아시아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성인남자 국가대표팀 출전 경기(월드컵축구 예선포함),
 - 양 축구협회(AFC 및 EAFF)간 성인남자 국가대표팀 출전 평가전(친선경기 포함)

방송법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을 위하여 방송사업자 간에 중계권 거래 시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의 중계 시 같은 경기를 여러 채널에서 동시에 편성하는 것(중복편성)을 피하고 순차적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문12. **국민의 관심이 큰 행사(일명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 제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알려주십시오.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조금 동의 하는 편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2	3	4	5	6	7
1) 방송사들 스스로 중요한 행사/경기 중계방송을 하므로 국민관심행사 지정은 불필요하다.							
2) 국민관심행사 목록을 정하고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하는 제도는 필요하다.							
3) 국민관심행사로 지정된 행사/경기의 중계는 무료로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							
4) 유료방송에서 국민관심행사/경기를 중계하는 경우 이를 시청하기 위해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							
5) 국민관심행사의 중계권은 전국적 수신이 가능한 지상파 방송연합(KBS, MBC, SBS, OBS 등)이 획득해야 한다.							
6) 국민관심행사 중계권은 KBS와 같은 공영방송이 획득해야 한다.							
7) 국민관심행사 중계권은 지상파가 아닌 유료방송(종합유선 방송, 위성방송, IPTV의 비지상파 채널)이 획득해도 무방하다.							
8) 국민관심행사 중계권은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포털에서 획득해도 무방하다.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조금 동의 하는 편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2	3	4	5	6	7
9) 국민관심행사의 중계권을 구매한 방송사의 권리와 시청권이 충돌하는 경우 고액의 중계권 비용을 지불한 방송사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10) 국민관심행사 스포츠 중계를 길거리 단체응원 등의 목적으로 광장, 운동장 등에서 단체 시청할 경우 무료로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							
11)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을 상업적 시설에서 시청할 경우(영화관, 호텔 로비 등)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12)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는 동시에 여러 채널에서 제공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이 시청하도록 해야 한다.							
13) 동일한 국민관심행사를 동시에 여러 채널에서 중계하는 것은 전파자원의 낭비이다.							
14) 동일한 국민관심행사 스포츠 중계를 여러 채널에서 동시에 방송하더라도 서로 다른 해설자가 방송한다면 괜찮다.							
15) 개인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는 한 번에 한 채널에서만 방송하도록 해야 한다.							
16) 국민관심행사 중계를 위해 기존에 편성되던 프로그램을 결방하는 것은 개인의 시청권 침해이다.							

〈문13 참조〉

1.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 동·하계 올림픽
 -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 출전 경기
2.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75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 동·하계아시아경기대회
 -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 출전 경기
 - AFC(아시아축구연맹) 및 EAFF(동아시아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성인남자 국가대표팀 출전 경기(월드컵축구 예선포함)
 - 양 축구협회(AFC 및 EAFF)간 성인남자 국가대표팀 출전 평가전(친선경기 포함)

문 13. 귀하는 현재 국민관심행사 목록에 포함되어 가능한 많은 국민이 시청하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행사/경기의 범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문13=2인 경우만 응답〕

문 13-1. 귀하는 국민관심행사 목록에서 추가 또는 제거해야 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다음의 진술문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조금 동의 하는 편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2	3	4	5	6	7
1) 국민관심행사에 인기 스포츠 외에 중요한 정치, 문화, 사회적 행사도 포함시켜야 한다.							
2) 국민관심행사에 장애인 경기, 비 인기 스포츠 종목을 더 포함시켜야 한다.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조금 동의 하는 편이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2	3	4	5	6	7
3) 국민관심행사에 씨름, 태권도 등 고유의 전통 스포츠 종목도 포 함시켜야 한다.							
4) 국민관심행사에 청소년, 여성 대 상 경기를 더 포함시켜야 한다.							
5) 법으로 시청을 보장하는 국민관 심행사에 포함된 경기가 지나 치게 많다.							
6) 목록 중 두 번째로 열거된 경기 들(WBC 야구, AFC, EAFC 축 구, 예선, 친선경기 등)은 국민 관심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문14. 한국팀 출전 월드컵 경기, 한국 선수가 도전하는 올림픽 결승처럼 국민의 관심이 큰 스포츠 행사와 동일한 시간에 아래 프로그램들 또는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면 중계방송 대신 이들을 시청하실 의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시청 의향						
	전혀 의향이 없다	의향이 없는 편이다	별로 의향이 없다	보통 이다	약간 의향이 있다	의향이 있는 편이다	아주 의향이 많다
	1	2	3	4	5	6	7
1) 뉴스							
2) 시사보도(예: 추적60분, PD수첩 등)							
3) 대담/토론							
4) 다큐멘터리(예:다큐멘터리 3일)							
5) 교육							
6) 생활정보							
7) 드라마/시트콤							
8) 영화							
9) 어린이/애니메이션							
10) 연예/오락/버라이어티							
11) 음악 (예: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							
12) 퀴즈 (예: 도전 골든벨 등)							
13) 코미디							
14) 뷰티/스타일							
15) 게임방송							

문14-1. 다음은 다양한 스포츠 경기를 나열한 것입니다. 평소 귀하가 즐겨 시청하는 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체 의식과 공통의 역사·문화적 경험을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국민관심행사’로 지정하여 많은 국민의 시청을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종목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종목	세부경기	지정할 필요 없음	보통	지정할 필요 있음
		1	2	3
종합경기	1) 하계 올림픽게임			
	2) 동계 올림픽게임			
	3) 하계 아시안게임			
	4) 동계 아시안게임			
	5) 유니버시아드(세계 대학생 체육 대회)			
	6) 하계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			
	7) 동계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			
	8) 전국 체전			
축구	9) FIFA 주관 월드컵 축구 중 성인 남자 국가대표팀 출전 경기			
	10) FIFA 주관 월드컵 축구 중 성인 여자 국가대표팀 출전 경기			
	11) AFC(아시아 축구연맹)컵 축구 중 국가대표팀 출전 경기			
	12) EAFF(동아시아 축구연맹)컵 축구 중 성인남자 국가대표팀 출전 경기			
	13) AFC와 EAFF간 성인남자 국가 대표 출전 평가전 또는 친선 축구경기			
	14) 해외 프로축구(영국 프리미어 리그, 독일 분데스리가,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등)			
	15) 국내 아마추어 축구			
	16) 국내 프로 축구(K 리그)			

종목	세부경기	지정할 필요 없음	보통	지정할 필요 있음
		1	2	3
야구	17) WBC(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야구 중 국가대표팀 출전 경기			
	18) 프리미어12 야구경기			
	19) 해외 프로야구(미국MLB, 일본 NPB 등)			
	20) 국내 아마추어야구 경기			
	21) 국내 프로야구 경기			
골프	22) 국내 아마추어골프			
	23) 국내 프로골프			
	24) 미국 프로골프(PGA, LPGA 등)			
권투	25) 국내 아마추어 권투			
	26) 국내 프로권투			
	27) 미국 프로권투(WBA, WBC 등)			
농구	28) 국내 아마추어 농구			
	29) 국내 프로농구(KBL/WKBL)			
	30) 미국 프로농구(NBA)			
배구	31) 국내 아마추어배구			
	32) 국내 프로배구			
볼링	33) 국내 아마추어볼링			
	34) 국내 프로볼링			
기타	35) UFC 종합격투기			
	36) 국내 프로레슬링			
	37) 씨름			
	38) 태권도			

문14-2. 앞에서 제시된 경기 목록 중 자주 시청하시는 스포츠 종목이 있습니까?

1. 예 → **문14-2**
2. 아니오 → **문15**

문14-3. 해당 스포츠 종목들을 시청하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3개만** 골라
주십시오. **[복수: 3]**

1. 우리나라 선수의 경기 성적이 좋아서
2. 유명한 스타 선수가 출전해서
3.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종목이어서
4. 경기 자체가 재미있어서
5. 여러 채널에서 많이 중계해줘서
6. 휴대폰을 이용해서 시청할 수 있어서
7. 국가 간 경기이므로
8.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 동참하기 위해
9. 기타()

매체 이용행태

문15. 평소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방송프로그램(또는 영상콘텐츠)의 장르를 **순서**
대로 3개 골라주십시오. **[복수][maxrank: 3]**

1. 뉴스
2. 시사보도 (예: 추적60분, PD수첩 등)
3. 대담/토론
4. 다큐멘터리 (예: 다큐멘터리 3일 등)

5. 교육/과학
6. 생활정보
7. 드라마/시트콤
8. 영화
9. 어린이/애니메이션
10. 연예/오락/버라이어티
11. 음악 (예: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
12. 퀴즈 (예: 도전 골든벨 등)
13. 코미디
14. 뷰티/스타일
15. 게임방송
16. 스포츠

문16. 귀하는 다음 동영상 서비스를 하루 평균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건당 결제
주문형 서비스 이용시간까지 포함해서 응답해주시시오.

	전혀 보지 않음	10분 미만	10분~ 30분 미만	30분~ 1시간 미만	1시간 ~ 2시간 미만	2시간 ~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1	2	3	4	5	6	7
1. 네이버TV, 다음 카카오TV 등 포털 동영상							
2. 유튜브, 아프리카TV 동영상							
3. 넷플릭스, 왓차플레이 동영상							
4. 티빙(Tving), 웨이브(Wavve, 올레TV 모바일, 유 플러스 (U+)모바일 동영상 서비스							
5. 기타 동영상 서비스							

문17. 다음은 귀하의 인터넷 이용 능력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척도][step by step]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6	7
1. 인터넷을 통해 문서, 음악, 비디오, 프로그램 등 필요한 것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줄 안다							
2.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이 잘 찾지 못하는 정보도 쉽게 찾을 수 있다							
3. 인터넷 사용 중 설치되는 스파이웨어나 팝업 광고 등을 찾아내서 제거할 수 있다							
4. 컴퓨터에 발생한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제거할 수 있다							
5. 모바일 메신저나 SNS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쉽게 연락할 수 있다							
6.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다							

응답자 배경질문

DQ1.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중졸이하
- 2. 고졸
- 3. 대졸(대재 포함)
- 4. 대학원 이상

DQ2. 귀하는 현재 어떤 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1. 학생
2. 생산기술직
3. 자영업
4. 사무직/관리직
5. 영업직/판매직/서비스직
6. 전문직/자유직
7. 농·임·어업/축산업
8. 전업주부
9. 무직

DQ3. 귀하 가정의 한달 수입(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1. 99만원 이하
2. 100~199만원
3. 200~299만원
4. 300~399만원
5. 400~499만원
6. 500~599만원
7. 600~699만원
8. 700~799만원
9. 800~899만원
10. 900~999만원
11. 1,000만원 이상

DQ4. 현재 귀댁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방송서비스는 어떤 것입니까? 만약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복수]

1. 지상파 직접수신 (KBS, MBC, SBS 등을 직접수신)
2. 중계유선방송 (가입료 없이 아파트 등 공동주거단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유선방송)
3. 종합유선방송 (CJ 헬로비전, HCN 등)
4. IPTV (올레 TV, SK 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
5. 국내 위성방송 (올레 스카이라이프)
6. 해외 위성방송 (안테나를 이용한 해외위성방송 수신)
7. 국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폭, 웨이브, TVing 등)
8. 해외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본연구 안내

■ 2015 기본연구

- 기본연구 15-01 인터넷의 진화와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변화 연구: 사물인터넷을 중심으로 (박유리, 손상영, 김창완, 강하연, 오정숙, 김희연, 정원준, 신정우, 문상현)
- 기본연구 15-02 방송영상산업 생산요소시장의 구조와 거래유형에 대한 연구(황유선, 박동욱, 김호정)
- 기본연구 15-03 빅데이터 시대 개인 행태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정책 연구(조성은, 이시직)
- 기본연구 15-04 ICT 무역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강하연, 윤승환, 박은지, 박영덕, 김재형)
- 기본연구 15-05 한중 ICT기업의 해외진출 방식 비교와 시사점(김성욱, 전민경, 한동교, 김준연)
- 기본연구 15-06 우체국 MVNO 위탁판매사업의 소비자 효용 증대 효과 추정(최중범, 김민진, 심송보)
- 기본연구 15-07 ICT 벤처기업의 생애주기 추적조사 연구(조유리, 강유리)
- 기본연구 15-08 주파수 공동사용 현황 및 도입 방안 연구(김지환, 정아름, 임동민)
- 기본연구 15-09 미디어 상품의 문화적 할인 지수 개발에 대한 연구(곽동균, 정은진, 장원호, 남기범, 김상현)
- 기본연구 15-10 비선형적(Non-linear) TV 시청환경에서 수용자의 매체 이용행태 변화 및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심홍진, 주성희, 임소혜, 이해미)
- 기본연구 15-11 거시경제 및 제조업 구조와 ICT 산업 간 관계분석 모형(주재욱, 김육준, 하형석)
- 기본연구 15-12 우정사업의 신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민첩성 진단(이용수, 안명욱, 김종근)
- 협동연구총서 15-13-01 과학기술과 ICT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향 연구 및 경제 통계 구축(I) 총괄보고서: 과학기술과 ICT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향 연구 및 경제 통계 구축(김정연, 정현준, 진홍윤, 신우철, 문성배, 신석하, 전현배, 조태형, 이영수, 양현석)
- 협동연구총서 15-14-01 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조건과 한국 사회의 대응(I): 총괄보고서(이호영, 김희연, 김사혁, 최항섭)

■ 2016 기본연구

- 기본연구 16-01 O2O 비즈니스 확산에 따른 시장 변화 및 정책 방안 연구(박유리, 오정숙, 양수연, 임세실, 최 충, 최동욱)
- 기본연구 16-02 ICT 혁신에 대응하는 플랫폼 육성 전략연구(최계영, 김민식, 최주한)
- 기본연구 16-03 모바일 웹과 앱의 이용패턴 비교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의 생태계 (정광재, 이보겸)
- 기본연구 16-04 방송영상산업 생산요소시장의 계약유형에 대한 연구-예능오락부문을 중심으로(황유선, 김호정)
- 기본연구 16-05 모바일 인터넷 시대의 방송콘텐츠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심홍진, 주성희, 임소혜, 이주영)
- 기본연구 16-06 ICT산업 정책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 연구(고동환, 정부연)
- 기본연구 16-07 우체국보험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이석범, 이경은, 최승재, 류근욱, 박성용, 류성경)
- 기본연구 16-08 기업의 개방형 혁신전략이 ICT융합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남충현, 정원준, 김규남)
- 기본연구 16-09 지능정보사회의 규범체계 정립을 위한 법·제도 연구(이원태, 문정욱, 이시직, 심우민, 강일신)
- 기본연구 16-10 이동통신사업자의 투자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정 훈, 박상미, 전홍민, 김인혜)
- 기본연구 16-11 불확실성하에서의 이동통신요금제 선택에 관한 연구(이민석, 이솔희)
- 기본연구 16-12 우체국 특성 분석에 따른 미래 우체국 운영 방안(이용수, 안명욱, 김영규)
- 협동연구총서 16-13-01 과학기술과 ICT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향 연구 및 경제 통계 구축(Ⅱ): 총괄보고서 (김정언, 정현준, 김경훈, 진홍윤, 신우철)
- 협동연구총서 16-14-01 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조건과 한국 사회의 대응(Ⅱ): 총괄보고서(이호영, 손상영, 이원태, 조성은, 문정욱, 김희연, 이시직, 양수연, 이재현, 이정엽)
- 협동연구총서 16-15-01 ICT 벤처생태계의 변화 분석을 위한 패널데이터 구축 및 정

책방향 연구(I): 총괄보고서(조유리, 남충현, 이은민, 손가녕,
김도훈, 오동현)

협동연구총서 16-16-01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ICT 통계 생산체계 혁신 방안 연구
(I): 총괄보고서(정용찬, 주재욱, 이원태, 김윤화, 유선실,
김욱준, 오윤석, 박민규, 황용석, 황선웅)

■ 2017 기본연구

기본연구 17-01 지능정보사회의 공공정보화 패러다임 변화와 미래정책 연구(이원태,
문정욱, 류현숙)

기본연구 17-02 ICT가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학기, 이경남)

기본연구 17-03 ICT 융합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강준모,
김민식, 이슬기)

기본연구 17-04 ICT 정책에서 빅데이터 분석의 활용방안 연구(김경훈, 이선희, 오윤석,
양수연, 송태민)

기본연구 17-05 사물인터넷 생태계의 경쟁 이슈와 정책과제(이민석, 박상미, 김성준)

기본연구 17-06 비면허 대역 주파수의 활용 동향 및 경제적 가치 추정 방법론 연구
(김희천, 임동민, 정아름, 김인희)

기본연구 17-07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의 광고효과에 관한 연구(주성희, 심홍진, 김창희)

기본연구 17-08 유료방송서비스 간 대체성에 관한 연구: 수요함수 추정을 통한 실증
분석(황유선, 육은희)

기본연구 17-09 ICT 수출 주요 결정요인과 그 영향 분석(고동환, 최지혜)

기본연구 17-10 컨조인트 분석을 통한 우체국 제휴사업 효과 분석(박재석, 김민진,
김지혜)

협동연구총서 17-11-01 초연결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문화적 조건과 한국
사회의 대응(III): 총괄보고서 (손상영, 박유리, 이호영, 조
성은, 김희연, 양수연, 이시직)

협동연구총서 17-12-01 ICT 벤처생태계의 변화 분석을 위한 패널데이터 구축 및
정책방향 연구(II): 총괄보고서(조성은, 조유리, 강준모, 이
학기, 민대홍, 이은민, 손가녕)

협동연구총서 17-13-01 과학기술과 ICT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향 연구 및 경
제 통계 구축(III): 총괄보고서(정현준, 김정연, 김경훈, 남충현,

신우철, 김도완)

협동연구총서 17-14-01 조사환경 변화에 대응한 ICT 통계 생산체계 혁신 방안 연구(Ⅱ): 총괄보고서(정용찬, 이원태, 정혁, 김윤화, 유선실, 정부연, 오윤석, 박민규, 권현영, 오형나)

■ 2018 기본연구

기본연구 18-01 국내 AI 오픈사이언스 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조성은, 정원준, 이시직, 이창범, 박규상)

기본연구 18-02 ICT기반 신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민대홍, 오정숙)

기본연구 18-03 기술 발전으로 인한 업무 자동화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 추정 및 정책 방안 연구(이학기, 이경남, 김수현)

기본연구 18-04 5G 이동통신의 시장 확산 방안 연구(김지환, 정아름, 김인희, 신정우)

기본연구 18-05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정광재)

기본연구 18-06 우체국의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방안 연구(박재석, 김민진, 김지혜)

협동연구총서 18-07-01 ICT 벤처생태계의 변화 분석을 위한 패널데이터 구축 및 정책방향 연구(Ⅲ) 총괄보고서(조유리, 강준모, 손가녕, 이은민)

협동연구총서 18-07-02 ICT 벤처기업 패널데이터 구축연구(Ⅲ)(조유리, 손가녕, 이은민)

협동연구총서 18-07-03 ICT 벤처창업기업의 성패요인 분석과 벤처창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방안: ICT 벤처패널을 활용하여(조유리, 김경훈, 이은민, 최충, 이대호)

협동연구총서 18-07-04 정부지원을 받은 ICT 벤처기업의 기업특성과 경영성과에 관한 연구: ICT 벤처패널을 활용하여(강준모, 이은민, 김규남, 신상우, 오승환)

협동연구총서 18-08-01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연구(Ⅰ) 총괄보고서(손상영, 이원태, 이호영, 조성은, 선지원, 이시직, 문정욱, 김희연, 강민성)

협동연구총서 18-08-02 인공지능시대 법제대응과 사회적 수용성(조성은, 선지원, 이시직)

협동연구총서 18-08-03 디지털 전환 시대의 고용 환경 변화에 대한 수용 태도 연구 (이호영, 김희연)

협동연구총서 18-08-04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모형 개발 및 결정요인 분석
(이원태, 손상영, 문정옥, 강민성)

기본연구 18-09 방송미디어 분야 자료의 통합 연계 및 활용방안 연구(신지형, 오윤석)

기본연구 18-10 정보소통 네트워크 상의 허위정보 대응 및 신뢰도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심홍진, 주성희, 김청희)

■ 2019 기본연구

기본연구 19-01 개인주도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연구(조성은, 정원준, 이시직,
이창범, 박규상)

기본연구 19-02 ICT 기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 규제 범주화 및 법적 효과 분석
연구(선지원, 양기문, 이시직, 이재훈)

기본연구 19-03 모바일 브로드밴드 확산의 국제비교 및 경제적 효과 분석(김민희, 윤도원)

기본연구 19-04 주요국의 인터넷 정책 방향 비교 분석 -망 중립성을 중심으로-(문아람,
나성현)

기본연구 19-05 방송-ICT 융합에 대응하는 미디어다양성 조사 및 정책적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김남두, 정은진)

기본연구 19-06 서비스 속성에 대한 고객 평가에 기초한 택배서비스 발전 방향(최중범,
한은영, 이영중)

협동연구총서 19-07-01 4차 산업혁명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전략 연구(Ⅱ)
총괄보고서(손상영, 이호영, 조성은, 선지원, 문정옥, 김희연,
이시직, 양기문, 정선민, 송민이)

협동연구총서 19-07-02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모형 고도화 및 결정요인 연구
(손상영, 문정옥, 양기문)

협동연구총서 19-07-03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 수요 변화와 수용성(이호영, 김희연,
류기락, 반가운, 정혁)

협동연구총서 19-07-04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른 공공영역의 수용성
제고와 정부 기능·역할의 재정립(문정옥, 정선민, 송민이,
왕재선, 이희철)

협동연구총서 19-07-05 공적 경험의 변화에 따르는 포용적 사회로의 이행전략 제시
(선지원, 조성은, 정선민, 권경휘, 김활빈, 이삼열)

기본연구 19-08 보편적 시청권 개념 및 제도 재정립 방안 연구(주성희, 김현정, 노은정)

기본연구 19-09 ICT 산업의 여성인력 노동시장 성과 분석(최지은, 오윤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안내

■ 2015 정책연구

- 정책연구 15-01 SW융합 핵심기술분야의 현황 및 전망 (김규남, 이정선, 이경남, 이대호)
- 정책연구 15-02 과학기술·ICT 융합 유망분야 진흥 및 성과측정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방안
(최계영, 이정선, 김규남, 김민식, 이경남, 허성욱)
- 정책연구 15-03 ICT 산업 현황 분석과 대응방향 연구 (정현준, 박유리, 진홍윤, 이인수)
- 정책연구 15-04 공영 TV홈쇼핑의 운영 차별화 방안 (이종원, 박민성, 김혜성)
- 정책연구 15-05 ICT통계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정용찬, 정 혁, 신지형, 김윤화, 하형석)
- 정책연구 15-06 남북 ICT(통신·우편·방송) 통합인프라 구축방안 (김철완, 김성욱, 최중범,
박재석, 서소영, 이우섭, 정아름)
- 정책연구 15-07 환경변화에 대응한 배달 최적화 모델 연구 (최중범, 이영종, 황병일)
- 정책연구 15-08 우정IT 조직의 역할 재정립과 발전전략 마련 (이용수, 안명옥)
- 정책연구 15-09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총사업비 검증 (손상영, 김사혁)
- 정책연구 15-10 방송콘텐츠 기반확충을 위한 국내의 사례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박동욱,
심홍진, 황준호, 정은진)
- 정책연구 15-11 주요국의 과학기술벤처 창업환경과 정책지원체계 비교 연구 (최계영, 강유리,
김민식, 송민선, 정원준, 이두진, 김대환)
- 정책연구 15-12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5년도) (정진한, 김득원, 김상용, 김용재, 김창완,
김현수, 이민석, 이종화, 정광재, 정 훈, 강인규, 김대건, 김주현, 김진호,
나상우, 송용택, 오기석, 임동민, 홍현기)
- 정책연구 15-13 인터넷 경제 시대의 정책방향 정립에 관한 연구(박유리, 이정선, 이경남,
송민선, 정원준, 오인하, 이상직)
- 정책연구 15-14 중소SW기업의 M&A 활성화 방안(나성현, 강유리)
- 정책연구 15-15 창업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연쇄창업가 지원방안 연구(조유리, 고동환,
정원준)
- 정책연구 15-16 통신시장의 IP화와 C-P-N-D 생태계 확산에 대응한 중장기 통신정책방안
연구 (이종화, 김민철, 송용택)
- 정책연구 15-17 신규사업자 진입 정책사례 연구 (정진한, 김창완, 김득원, 나상우, 이보겸)

- 정책연구 15-18 '16~'17년도 접속원가 산정 및 유·무선 데이터 이용 확산을 고려한 통화량 예측 모형 개선방안 연구 (김민철, 오기석, 김진호, 김대건)
- 정책연구 15-19 ICT 생태계 확산에 대응한 보편적 역무 제도 개편 방향 연구 (정 훈, 나상우)
- 정책연구 15-20 MVNO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수립 및 서비스 다양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 (정광재, 김대건)
- 정책연구 15-21 단말기 유통구조 정상화 및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김민철, 이종화, 강인규, 이보겸)
- 정책연구 15-22 데이터 기반 이동통신 요금제 정착을 위한 요금체계 개선방안 및 이용자 편의 증대방안 연구(김용재, 오기석, 김인혜)
- 정책연구 15-23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위한 비용분석 방안 연구 (조성운, 정광재, 황유선, 오기석, 박희영)
- 정책연구 15-24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의 실효적 시행방안 연구 (심홍진, 황준호, 박희영)
- 정책연구 15-25 방송매체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평가 지표 연구 (주성희, 성욱제, 이미라)
- 정책연구 15-26 보도 콘텐츠의 구성요소 분석 및 법제 정비방안 연구 (김남두, 우혜진)
- 정책연구 15-27 미디어 다양성 지표의 시범적용 분석 (성욱제, 김남두, 이미라, 정은진)
- 정책연구 15-28 방송-ICT 융합 시대의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정책방안 연구 (곽동균, 김남두, 우혜진)
- 정책연구 15-29 지상파 다채널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단계별 정책목표와 실행 방안을 중심으로 (김태오, 김호정)
- 정책연구 15-30 개인정보보호 이슈의 지형변화와 국제규범의 형성 연구 (이원태, 이시직, 심우민, 강일신)
- 정책연구 15-31 통일대비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센터 추진방안 연구 (김철완, 김성욱, 서소영, 이우섭, 서홍수)
- 정책연구 15-32 FTA 시대 국내제작물 규제 정비방안 (강하연, 주성희, 노은정)
- 정책연구 15-33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한 방송·통신 결합판매 규제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창완, 강준석, 강인규)
- 정책연구 15-34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제도화 방안 연구 (곽동균, 권용재, 김호정, 박희영)
- 정책연구 15-35 디지털사이니지 산업 규제개선 및 진흥정책 연구(김태오, 곽동균, 김호정)
- 정책연구 15-36 통합 시청조사 결과의 제도화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성욱제, 김태오,

정은진, 박상진)

- 정책연구 15-37 사물인터넷 실증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김규남, 이은민, 정원준, 최남희)
- 정책연구 15-38 계좌이동제 시행에 따른 우체국예금의 대응전략 및 실행방안 (박재석, 김민진, 황병일, 하정량)
- 정책연구 15-39 ICT 기업 성장 요인 및 특성 분석 (정현준, 정 혁, 진홍윤, 신우철)
- 정책연구 15-40 ICT 산업분야 한·중·미·일 경쟁력 비교분석과 대응방안 (이경선, 남충현, 김민식, 신우철, 이대호)
- 정책연구 15-41 ICT 산업 중장기 전망(2016~2020년) 및 대응전략 (정 혁, 최계영, 정용찬, 김창완, 정현준, 고동환, 남충현, 이은민, 김민식, 오정숙, 이경남, 강유리, 진홍윤, 유선실, 나상우, 김대건)
- 정책연구 15-42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나성현, 김민식, 강유리, 진홍윤)
- 정책연구 15-43 IT·금융 융합 규제개선 연구 (조유리, 송민선, 이준희)
- 정책연구 15-44 방송통신 결합판매 규제 개선방안 연구 (김현수, 정 훈, 김대건, 송용택)
- 정책연구 15-45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정책의 기본방향과 과제 (황준호, 성옥제, 주성희, 김호정, 우혜진, 이해미)
- 정책연구 15-46 방송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지상파 UHD 방송 및 방송주파수 정책방안 연구 (김남두, 이종원, 김상용, 정광재, 김주현, 박상진)
- 정책연구 15-47 2016년 방송통신 분야 시장 전망 및 정책 방안 연구 (초성은, 정용찬, 정 훈, 정 혁, 유선실, 권용재)
- 정책연구 15-48 방송 콘텐츠 공정거래환경 조성방안 연구: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시행 방안 및 스포츠 중계권거래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주성희, 임세진, 정은진)
- 정책연구 15-49 매체환경 변화에 대응한 규제개선 연구 (이종원, 김태오, 권용재)
- 정책연구 15-50 방송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유료방송 요금 규제 및 수신료 배분 체계 개선 방안 연구 (강준석, 황유선, 권용재)
- 정책연구 15-51 유료방송 제도개선을 위한 시장현황 분석 (이재영, 유선실, 박선영)
- 정책연구 15-52 주요 통신서비스별 시장상황 자료 수집·분석 (김현수, 정 훈, 강인규, 홍현기, 김대건)
- 정책연구 15-53-01 2015 방송통신통상협력강화 사업 결과보고서 (강하연, 윤승환, 박은지, 김재형, 노은정)
- 정책연구 15-53-02 2015 FTA 협상대상국 방송통신서비스 시장개방 및 규제제도 현황

(강하연, 박은지, 김재형, 노은정)

- 정책연구 15-54 2015년도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 촉진사업 결과보고서 (김철완, 김봉식, 서소영, 이우섭)
- 정책연구 15-55 ICT 인문사회 혁신기반 구축(III) 총괄보고서 (조성은, 이호영, 손상영, 이원태, 강홍렬, 한은영, 김사혁, 김희연, 이시직, 홍성욱, 이종관, 남 영)
- 정책연구 15-56 ICT 인문사회 혁신기반 구축(III): 디지털 세대와 미래기술 수용(이호영, 김희연, 김석호, 이윤석)
- 정책연구 15-57 ICT 인문사회 혁신기반 구축(III): 디지털 기술·매체환경에서 창작의 변화 (이원태, 김희연, 유승호, 류한석)
- 정책연구 15-58 ICT 인문사회 혁신기반 구축(III): 웰니스케어 확산과 미래 의료시스템 (조성은, 이시직, 이일학, 정지훈)
- 정책연구 15-59 ICT 인문사회 혁신기반 구축(III):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경제 규범 (손상영, 김사혁)
- 정책연구 15-60 2015년도 우정동향 조사 분석 (정진하, 이석범, 최종범, 안명욱, 이영중, 이경은, 박소연, 김민진, 최승재)
- 정책연구 15-61 국가 간 정산제도 및 UPU우편사업 전략 연구 (정진하, 최종범, 이경은)
- 정책연구 15-62 우체국 국제물류사업 진출 전략 (정진하, 이용수, 이영중, 박소연, 황병일, 김윤관)
- 정책연구 15-63 우체국금융 핀테크 도입을 위한 실증적 추진 전략 (정진하, 박재석, 김민진, 황병일, 하정량)
- 정책연구 15-64 우체국보험 영업조직 효율적 운영 방안 (정진하, 이석범, 안명욱, 최승재, 심송보)

■ 2016 정책연구

- 정책연구 16-01 ICT 발전에 따른 산업 및 기술수준별 고용효과 분석 및 정책방향 정립 (주재욱, 정부연)
- 정책연구 16-02 신규 이용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관리·방안 연구(김상용, 김주현, 정아름)
- 정책연구 16-03 스마트시대에 대응한 방송광고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강준석, 주성희, 이미라, 정은진)
- 정책연구 16-04 SDGs체제 하에서 과학기술 ODA의 역할 및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강인수, 김태은, 유성훈, 김진주, 정유미, 조수미)

- 정책연구 16-05 기술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제도 개선방안 연구(이종원, 김태오, 권용재)
- 정책연구 16-06 SW중심사회의 일자리 정책방향 연구(정 혁, 이경선, 이경남, 남충현, 이경남, 손가녕, 이 호, 임영모, 서영빈, 이동현, 최창욱)
- 정책연구 16-07 All-IP 네트워크로의 이전과 ICT 생태계 출현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상 의무·사업자 분류체계 (이민석, 이종화, 송용택)
- 정책연구 16-08 ICT 개발협력 성과제고 및 전략적 이행방안 연구(강인수, 김태은, 유성훈, 송영민, 심수민, 조수미)
- 정책연구 16-09 데이터 기반 디지털 경제의 미래예측 방법론 연구(주제욱, 정용찬, 이원태, 신지형, 정부연, 김욱준, 이성호, 이대호, 김문조, 이왕원, 정지연, 김도훈, 김학준, 김남혁, 조문래, 나영민, 권영민, 조수진, 김근진)
- 정책연구 16-10 통일준비 ICT 통합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김철완, 서소영, 이우섭, 서홍수)
- 정책연구 16-11 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화 추진전략 개편방안 연구(최계영, 박유리, 이은민, 김규남)
- 정책연구 16-12 ICT 벤처지원 정책 개선방안 및 글로벌 벤처 생태계 조성방안 연구(남충현, 이은민, 손가녕, 오승환, 김규남)
- 정책연구 16-13 데이터 중심으로의 이동통신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미래 주파수 정책 방향 연구(김지환, 김득원, 김상용, 임동민, 김주현, 정아름, 김 철)
- 정책연구 16-14 5G 시대를 대비한 주파수 대가 산정 및 할당절차에 대한 연구(김지환, 김인희, 정아름)
- 정책연구 16-15 재난안전통신망 시범사업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재검증-단말기 경제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강홍렬, 한은영)
- 정책연구 16-16 OTT 동영상 시장 현황 파악 방안 연구(곽동균, 육은희)
- 정책연구 16-17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6년도)(여재현, 김민철, 김상용, 김용재, 김지환, 김창완, 김현수, 이민석, 이상우, 정광재, 정 훈, 강인규, 김대건, 김성준, 김인혜, 나상우, 송용택, 이보겸, 임동민, 홍현기)
- 정책연구 16-18 단말기 유통법 성과 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김현수, 강인규, 이솔희, 김인혜)

- 정책연구 16-19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 관련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김태오, 김호정)
- 정책연구 16-20 방송법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의 세분화에 관한 연구(김태오, 송민선)
- 정책연구 16-21 스마트미디어 시대 지역방송의 차별화 및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
(심홍진, 주민정, 이주영)
- 정책연구 16-22 국민관심행사 고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실증연구(심홍진, 육은희)
- 정책연구 16-23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개선방안 연구(주성희, 이주영)
- 정책연구 16-24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소유겸영 규제 개선 정책방안
연구(김남두, 진전은영)
- 정책연구 16-25 방송분야 정책통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 연구(김남두, 정용찬,
신지형, 진전은영)
- 정책연구 16-26 방송프로그램 시청자평가 개선방안 연구(주재욱, 강현철, 박은희, 정부연,
이선희)
- 정책연구 16-27 브렉시트의 ICT 산업 파급효과와 정책방향 연구 (고동환, 강하연, 나성현,
진홍윤, 최지혜, 박은지, 박선우)
- 정책연구 16-28 RCEP, TISA, 한중일·한중미 FTA 등 방송통신시장 규제현황 분석 및
통상협상 방안 마련(강하연, 박은지)
- 정책연구 16-29-01 창조경제 글로벌 혁신협력모델 개발 연구(기본형모델)(강하연, 김성욱,
박지현, 남상열, 김성웅, 김진주, 최효민, 정아영, 박정은)
- 정책연구 16-29-01 창조경제 글로벌 혁신협력모델 개발 연구(특화형모델)(강하연, 김성욱,
박지현, 김진주, 최효민, 김은경, 김정민, 박승찬, 신윤정, 최준환)
- 정책연구 16-30 국제우편서비스 구조개편 및 요금안 마련 연구(최중범, 이영종, 박소연,
정일량)
- 정책연구 16-31 우체국 펀드판매 취급을 위한 실행 방안 마련 연구(박재석, 안명옥, 김민진,
황병일, 정경오, 이재석)
- 정책연구 16-32 기술변화와 인적자원 운영 연구(강홍렬, 한은영, 최승재, 허재준, 김형만)
- 정책연구 16-33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 효과분석 및 후속조치 연구(김민철, 김현수,
정 훈, 송용택, 이보겸)
- 정책연구 16-34 인터넷플랫폼사업자 이용자이익저해행위 개선방안 연구(김현수, 강인규,
홍현기, 김대건)

- 정책연구 16-35 시설관리기관 설비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이용대가 산정방식 연구(이상우, 송용택, 이솔희)
- 정책연구 16-36 TDD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방안 및 이동통신용 주파수 증장기 공급방안에 대한 연구(김상용, 김득원, 김지환, 임동민, 김인희)
- 정책연구 16-37 '16년 주요 통신서비스별 시장상황 자료 수집·분석(김현수, 정 훈, 강인규, 홍현기, 김대건)
- 정책연구 16-38 전기통신사업 영업보고서 정보 유용성 제고방안 연구(정 훈, 박상미, 송용택, 이민석, 김대건)
- 정책연구 16-39 광고총량제 등 광고규제 개선 효과 분석(강준석, 황유선, 김호정, 홍석영)
- 정책연구 16-40 매체별 광고 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황준호, 김경은, 정은진)
- 정책연구 16-41 방송통신 분야 국내외 동향 분석 및 '17년 시장전망 연구(조성운, 정용찬, 이민석, 정 혁, 유선실, 홍현기, 권용재, 홍석영)
- 정책연구 16-42 방송통신 분야 규제비용 연구(조성운, 황유선, 정광재, 김경은, 이보겸, 홍석영)
- 정책연구 16-43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부응하는 규제체계 정비방안 연구(황준호, 성욱제, 정은진, 이주영)
- 정책연구 16-44 지상파다채널 시대의 합리적인 규범정립에 관한 연구(김태오, 송민선)
- 정책연구 16-45 외주제작시장의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평가방법론 개발(김경은, 심홍진, 황유선, 진전은영)
- 정책연구 16-46 공적서비스방송의 해외제도 비교 연구(이종원, 황준호, 성욱제, 김태오, 육은희)
- 정책연구 16-47 2016년도 미디어다양성 모니터링 연구(성욱제, 김남두, 강준석, 정은진, 이주영, 진전은영)
- 정책연구 16-48 ICT 통계 발전전략 수립(나성현, 정용찬, 주재욱, 정 혁, 정현준, 고동환, 김경훈, 유선실, 정부연, 김옥준, 진홍윤, 이선희, 신우철, 박선영, 박선우, 최지혜)
- 정책연구 16-49 ICT 통계조사 품질진단(정용찬, 김경훈, 정 환, 유선실)
- 정책연구 16-50 ICT 산업 통계분석 프레임워크 구축(나성현, 김옥준, 이선희, 진홍윤)
- 정책연구 16-51 ICT 통계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정현준, 진홍윤, 김옥준)
- 정책연구 16-52 ICT 통계조사 기여도 평가(주재욱, 김경훈, 김옥준, 이동희)

- 정책연구 16-53 ICT 및 인터넷 경제 통계의 조사 모집단 및 표본설계 표준화(정현준, 김옥준, 오윤석, 신우철, 한근식)
- 정책연구 16-54 ICT 및 인터넷 경제통계분석(정혁, 고동환, 김정훈, 김민식, 김옥준, 나성현, 박선우, 신우철, 오윤석, 오정숙, 유선실, 이경남, 이선희, 이은민, 정부연, 정원준, 정현준, 진홍윤, 최지혜)
- 정책연구 16-55 남북 정보통신 교류협력 촉진(김철완, 강하연, 김윤도, 서소영, 이우섭)
- 정책연구 16-56 2017 ITU 텔레콤월드 개최국 협정 협상 대응방안 연구(서보현, 김태은, 전선민)
- 정책연구 16-57 2016년도 우정정책 출연연구-우정동향 조사 분석(정진하, 이석범, 한은영, 안명옥, 이영중, 이경은, 박소연, 최승재)
- 정책연구 16-58 2016년도 우정정책 출연연구-TPP 등 배달서비스 통상협상 대응 방안 수립(정진하, 최중범, 한은영, 이영중)
- 정책연구 16-59 2016년도 우정정책 출연연구-세계우편전략 이행을 통한 국제우편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정진하, 최중범, 이경은)
- 정책연구 16-60 2016년도 우정정책 출연연구-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우체국예금 대응 전략 수립(정진하, 박재석, 이용수, 이영중, 김민진, 김지혜, 선정훈)

■ 2017 정책연구

- 정책연구 17-01 통계 모형을 이용한 ICT 일자리 중심정책 효과 및 방향 연구(정혁, 정부연, 최지혜, 전병유)
- 정책연구 17-02 신창조경제 글로벌 역량 및 기업 해외진출 강화방안 연구(김성욱, 박지현, 박은지, 최효민)
- 정책연구 17-03 창업지원 효율화 및 창업기업 진입장벽 해소 방안 연구(최계영, 박유리, 문정욱, 정원준, 손가녕, 김민식)
- 정책연구 17-04 통합시청조사결과 합산을 위한 가중치 연구(황준호, 성욱제, 문혜리)
- 정책연구 17-05 ICT 신산업 활성화와 효율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김정연, 박유리, 이원태, 염수현, 조유리, 강준모, 이학기, 김민식, 이은민, 정원준, 이시직, 손가녕, 최주한)
- 정책연구 17-06 아시아스타트업 허브 조성을 위한 글로벌 정책 협력방안 연구(남충현, 이경남, 손가녕, 최주한)
- 정책연구 17-07 ICT 벤처·스타트업 관련 제도 효율화 방안 연구(조유리, 조성은, 김

민식, 손가녕)

- 정책연구 17-08 초연결 지능망 사회의 네트워크 투자 관리 체계 연구(이상우, 여재현, 정 훈, 나상우, 송용택, 이솔희, 이용진, 나성욱, 김병희, 조대근, 이종기)
- 정책연구 17-09 MVNO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분석 및 완전 MVNO 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정광재, 김대건)
- 정책연구 17-10 All-IP, 융합형 서비스 활성화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통신서비스개선 및 이용자 편익확대 방안 연구(김용재, 김민철, 김창완, 이민석, 강인규, 나상우, 박상미, 이보겸)
- 정책연구 17-11 자가전기통신설비의 공익목적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이상우, 송용택, 이솔희)
- 정책연구 17-12 Mega FTA 시대의 신유형 서비스(스마트미디어, 광고 등) 규범체계 및 스마트미디어 콘텐츠 규제에 관한 연구(이종원, 주성희, 곽동균, 홍석영, 송민선, 진전은영)
- 정책연구 17-13 국내외 유료방송 규제개편 사례 및 정책동향 분석(이종원, 김호정)
- 정책연구 17-14 플랫폼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유료방송시장 생태계 선순환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강준석, 김남두, 권용재, 이주영, 홍석영)
- 정책연구 17-15 ICT산업 중장기 전망(2017~2021) 및 대응전략(정혁, 정용찬, 김창완, 고동환, 유선실, 정부연, 이경남, 오정숙, 이은민, 나상우, 김육준, 김대건, 진홍윤, 이선희)
- 정책연구 17-16 ICT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이호영, 손상영, 이원태, 조성은, 김희연, 문정욱, 이시직, 양수연, 류현숙, 최은창, 한상기)
- 정책연구 17-17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 체계 및 정책방안 연구(김창완, 여재현, 이민석, 송용택, 이보겸)
- 정책연구 17-18 창조경제 글로벌협력 환경분석 및 의제대응 방안 연구(남상열, 김성웅, 박정은)
- 정책연구 17-19 일자리 창출 중심의 창조경제정책 수립·추진방안 연구(이학기, 이경남, 최주한)
- 정책연구 17-20 제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과학기술-ICT 기반 국가정책방안 연구(김정연, 최계영, 조유리, 강준모, 이학기, 김민식, 이은민, 이시직,

정원준, 손가녕, 양수연, 최주한, 손병호, 신민수)

- 정책연구 17-21 우체국 서민대출 추진 시 예금사업 영향도 사전 분석(박재석, 김민진, 김지혜, 안명옥)
- 정책연구 17-22 합리적이고 공정한 PP-플랫폼 간 채널 계약을 위한 제도 개선 조사(강준석, 권용재)
- 정책연구 17-23 클라우드 도입에 따른 전자정부예산 운영의 혁신(강홍렬, 권현영, 한은영, 김지혜, 엄석진)
- 정책연구 17-24 국제우편 관련 국내 시행 법령 전면 개정안 마련(최중범, 정진하, 박소연, 이진경)
- 정책연구 17-25 ICT 기업 글로벌 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조유리, 김성옥, 김정언, 손가녕)
- 정책연구 17-26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7년도)(정진한, 김민철, 김용재, 김창완, 김현수, 여재현, 이민석, 이상우, 정광재, 정 훈, 강인규, 김대건, 김성준, 나상우, 박상미, 송용택, 이보겸, 이솔희, 홍현기)
- 정책연구 17-27 방송시장 상생 발전을 위한 사후규제 개선방안 연구(강준석, 김태오, 권용재)
- 정책연구 17-28 주파수 경매 시뮬레이션 Tool 개발(김희천, 김상용, 김득원, 김지환, 임동민, 정아름, 김인희)
- 정책연구 17-29 창조경제 글로벌 정책동향 분석 및 기본전략 수립(강하연, 박지현, 김성옥, 최효민, 강반디, 오태현)
- 정책연구 17-30 공공·민간 데이터 유통·거래 환경 기반 조성 연구(이원태, 문정옥, 양수연, 왕재선)
- 정책연구 17-31 ICT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조성은, 손상영, 이원태, 김희연, 문정옥, 이시직, 양수연, 이종관)
- 정책연구 17-32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이용자보호 이슈 및 정책 방안 연구(이원태, 문정옥, 양수연)
- 정책연구 17-33 미래부 창업(재도전)·벤처 지원사업 참여기업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최계영, 김성옥, 김민식, 이가희)
- 정책연구 17-34 한·중 ICT 벤처·스타트업 및 공동연구 협력방향 연구(김성옥, 강하연, 서소영, 정인선, 강반디, 이슬기, 김준연)
- 정책연구 17-35 ICT 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가로막는 경쟁 제한적 규제 발굴을 위한 연구(강준모, 조성은, 민대홍, 오정숙, 이시직)

- 정책연구 17-36 주요 통신서비스별 시장상황 자료 수집·분석(김현수, 정 훈, 강인규, 김대건, 송용택, 홍현기)
- 정책연구 17-37 부가통신서비스시장의 신유형 불공정행위 조사 방안 연구(김현수, 강인규, 홍현기)
- 정책연구 17-38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방안 연구(김현수, 강인규, 이보겸)
- 정책연구 17-39 신규 통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도매제도 정비 및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 개선 방안 연구(이상우, 정훈, 김대건, 이솔희, 송용택, 조대근)
- 정책연구 17-40 IoT 환경에서의 가입자식별모듈 이동성 제도 및 번호정책 연구(정광재, 김민철, 이보겸)
- 정책연구 17-41 '18~'19년 접속원가 산정 및 통화량 예측모형 개선방안 연구(김민철, 송용택, 김대건, 김성준)
- 정책연구 17-42 5G 시대의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제도 연구(김지환, 김상용, 김득원, 김희천, 임동민, 정아름, 김인희)
- 정책연구 17-43 진입규제 완화에 대비한 전파법 체계 개선방안 연구(김득원, 김상용, 김희천, 임동민, 김인희)
- 정책연구 17-44 지능정보사회의 주파수 공급 및 이용제도 개선방안 연구(김지환, 김상용, 김득원, 김희천, 임동민, 김인희)
- 정책연구 17-45 방송통신 분야 환경변화에 따른 주요 이슈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조성운, 황준호, 이재영, 이민석, 유선실, 홍현기, 권용재)
- 정책연구 17-46 방송통신 분야 규제비용 관리방안 연구(조성운, 황유선, 김지환, 정광재, 송민선)
- 정책연구 17-47 방통융합 서비스 해외제도 분석을 통한 미래지향적 규제체계 개선 연구(황준호, 성육제, 김호정, 육은희)
- 정책연구 17-48 방송의 미래 전망과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연구(이재영, 정은진)
- 정책연구 17-49 지상파 AM라디오방송 효율화 정책방안 연구(이종원, 김태오, 김상용, 정은진)
- 정책연구 17-50 방송통신 결합판매 경쟁상황 평가 방법론 및 지표 개발(곽동균, 황유선, 권용재)
- 정책연구 17-51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정책효과 분석(김태오, 이재영, 성육준, 이원태, 조성은, 송민선)

- 정책연구 17-52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 현행 비대칭규제에 대한 추가적 규제완화 시 효과 분석 등(강준석, 황유선, 김호정)
- 정책연구 17-53 신유형광고 제도화 및 매체별 차등규제 개선을 위한 입법안 연구(황준호, 심홍진, 송민선)
- 정책연구 17-54 방송한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주성희, 육은희)
- 정책연구 17-55 외주제작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 실태평가 및 관련 제도 정비방안 연구(심홍진, 김청희)
- 정책연구 17-56 방송매체 환경변화에 따른 편성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주성희, 김청희)
- 정책연구 17-57 공영방송의 독립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김남두, 이종원, 황준호, 정은진, 송민선)
- 정책연구 17-58 지상파·유료방송 방송광고 유형에 대한 시청자평가 및 인식조사(강준석, 광동균, 황유선, 김호정, 송민선)
- 정책연구 17-59 매체 및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법제 대응방안 연구(이종원, 주성희, 광동균, 육은희)
- 정책연구 17-60 유료방송 시장 집중현상 개선방안 연구(이재영, 육은희)
- 정책연구 17-61 방송통계 통합정보 제공체계 구축(신지형, 김윤화, 이선희, 김상우)
- 정책연구 17-62 인터넷 경제 및 ICT 통계 분석(정혁, 나성현, 고동환, 김경훈, 유선실, 정부연, 진홍윤, 이선희, 신우철, 노희운, 오윤석, 최지혜, 김민식, 이경남, 오정숙, 이은민)
- 정책연구 17-63 인터넷 경제 및 ICT 관련 통계 표준화(정현준, 신우철, 박선영, 한근식)
- 정책연구 17-64 ICT 통계체계 기획 및 개선방안 연구(최계영, 정현준, 정용찬, 정혁, 신지형, 고동환, 남충현, 나성현, 김경훈, 유선실, 정부연, 김옥준, 이선희, 신우철, 노희운, 오윤석, 최지혜, 김상우, 박선영, 진홍윤)
- 정책연구 17-65 지능정보산업 시장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고동환, 나성현, 최계영, 오윤석, 유선실, 이대호)
- 정책연구 17-66 ICT 통계조사 품질진단(정용찬, 유선실, 정환)
- 정책연구 17-67 ICT 통계조사 기여도 평가(신지형, 이선희, 김경훈, 김옥준, 주재욱)
- 정책연구 17-68 남북 정보통신 교류촉진(강하연, 김봉식, 서소영)

- 정책연구 17-69 APEC 인터넷경제 협력 논의 및 대응 방안(남상열, 김성웅, 박정은)
- 정책연구 17-70 OECD 고잉디지털(Going Digital) 프로젝트 분석 및 대응방안(고상원, 김성웅, 김병우)
- 정책연구 17-71 국제기구를 통한 중남미지역 ICT 협력방안 연구(남상열, 김성웅, 김병우)
- 정책연구 17-72 2017년도 우정정책 출연연구 - 우정동향 조사 분석(정진하, 이석범, 이용수, 한은영, 안명옥, 이영종, 이경은, 박소연, 김민진)
- 정책연구 17-73 2017년도 우정정책 출연연구 - 경쟁에 대응한 우편서비스 구조 개편과 이를 위한 법령개정 및 요금 체계 정비 방안 연구(정진하, 최중범, 한은영, 이영종)
- 정책연구 17-74 2017년도 우정정책 출연연구 - 우체국예금 전략고객 확보 방안(정진하, 박재석, 이용수, 안명옥, 김민진, 김지혜)
- 정책연구 17-75 2017년도 우정정책 출연연구 - 우편·배달서비스 관련 통상협상 대응 방안 수립(정진하, 최중범, 한은영, 이영종, 이진경)

■ 2018 정책연구

- 정책연구 18-01 2017년도 미디어 다양성 조사 연구(성욱제, 강준석, 심홍진, 송민선, 정은진)
- 정책연구 18-02 지능정보사회의 혁신적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ICT 정책방향 및 선결과제 연구(박유리, 김정언, 김경훈, 민대홍, 김성욱, 이경남, 김민식, 이시직, 양수연, 이가희, 나성현, 조성은, 강준모, 이학기, 이은민, 정원준, 손가녕, 이슬기)
- 정책연구 18-03 국내 ICT 신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기반 연구(손상영, 이원태, 이시직, 오정숙)
- 정책연구 18-04 지능정보기술 R&D의 선도형(First Mover) 연구 촉진과 성과 확산 가속화를 위한 지원 체계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최계영, 이학기, 김경훈, 김민식, 정원준, 양수연, 이가희)
- 정책연구 18-05 4차 산업혁명 대응 법제 정비 연구(조성은, 이원태, 이시직)
- 정책연구 18-06 과학기술·ICT 융합의 혁신체계 및 정책과제 연구(김경훈, 나성현, 김민식)
- 정책연구 18-07 데이터중심 이용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편적 역무 제도개편 방안 연구(정 훈, 나상우)

- 정책연구 18-08 ICT 산업 중장기 전망(2018~2022)(정혁, 정용찬, 정진한, 고동환, 유선실, 정부연, 김민식, 이정남, 오정숙, 이은민, 나상우, 김대건, 이선희)
- 정책연구 18-09 ICT 기반의 제조업 혁신 영향분석(나성현, 이은민, 손가녕)
- 정책연구 18-10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ICT산업 정책방향 연구(나성현, 고동환, 이은민, 손가녕, 나원준)
- 정책연구 18-11 지능정보사회화에 대응한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 정책방안 연구(이민석, 여재현, 정진한, 김대건)
- 정책연구 18-12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통신이용제도 정비방안 연구(정광재, 김민철, 김창완, 정 훈, 강인규, 나상우, 김용재)
- 정책연구 18-13 한·중·일 로밍요금 개편을 위한 정책 수립 방향 연구(이민석, 박상미)
- 정책연구 18-14 유료방송의 지역성 구현을 통한 공적책무 확보 방안(이종원, 김청희)
- 정책연구 18-15 이용자보호를 위한 유료방송 요금규제 체계 개선방안 연구(강준석, 권용재)
- 정책연구 18-16 한-미 FTA 개정협상 ICT 분야 대응 전략(강하연, 김창완, 남상열, 박민정, 정연희)
- 정책연구 18-17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우체국 금융수수료 조정 방안(박재석, 안명옥, 김민진)
- 정책연구 18-18 신흥 지역의 창업·스타트업 육성 정책동향 및 협력방안 연구: 인도, 동남아를 중심으로(박지현, 이종화, 김나연, 최효민)
- 정책연구 18-19 4차 산업혁명 관련 전과정책 동향 조사·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김득원, 김상용, 김지환, 김희천, 임동민, 정아름, 김인희)
- 정책연구 18-20 수요자 중심 인공지능 기술 혁신 방안(김정언, 김경훈, 이학기, 김민식, 손가녕, 이가희)
- 정책연구 18-21 정책지원 강화를 위한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 심층연구(정용찬, 신지형, 최지은, 오윤석, 유선실, 이호, 김규성, 윤 건, 김유진)
- 정책연구 18-22 거시환경변화에 따른 국제사업 미래성장 전략 마련(이석범, 이경은)
- 정책연구 18-23 4차산업혁명시대 산업별 인공지능 윤리의 이슈 분석 및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이원태, 김정언, 선지원, 이시직, 박혜경, 안수현, 정채연, 최은창, 한희원)
- 정책연구 18-24 주파수 경매 시뮬레이션 Tool 개발 및 고도화(김희천, 김상용, 김득원, 김지환, 임동민, 정아름, 김인희)

- 정책연구 18-25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8년도)(여재현, 김민철, 나성현, 염수현, 김현수, 정광재, 이민석, 문아람, 강인규, 나상우, 홍현기, 이보겸, 이솔희, 박상미, 이상우, 김대건)
- 정책연구 18-26 방송시장 재원 및 시장구조 합리화 방안 연구(이종원, 김청희)
- 정책연구 18-27 종편PP 의무송출제도 개선방안 연구(김남두, 정은진)
- 정책연구 18-28 인터넷 경제 측정기법 연구(정용찬, 정현준, 정부연, 신우철, 손녕선, 김성환)
- 정책연구 18-29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한 기획 연구(김정언, 김민식, 이경남, 김경훈)
- 정책연구 18-30-01 지능정보화 이용자 기반 보호 환경 조성(이원태, 이호영, 김경훈, 손상영, 선지원, 문정욱, 김병우, 황용석, 최경진, 심우민, 한문승)
- 정책연구 18-30-02 지능정보화 이용자 패널데이터 구축 및 조사(이호영, 김병우, 김용찬, 이대호, 이준웅)
- 정책연구 18-30-03 지능정보화 이용자행태 조사방법론 개발 및 실증(김경훈, 이원태, 문정욱, 황용석, 이현주, 정재관, 김기태)
- 정책연구 18-31 ICT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조성은, 이호영, 손상영, 이원태, 선지원, 김희연, 문정욱, 이시직, 이재호, 허재준, 서용석)
- 정책연구 18-32 ICT를 활용한 제조업 혁신과 리쇼어링 유인제고 방안 연구(이경선, 김정언, 이은민, 손가녕)
- 정책연구 18-33 ICT 혁신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에 관한 연구(김성욱, 강준모, 손가녕)
- 정책연구 18-34 ICT를 활용한 공공영역의 지능화 구현방안 도출(조성은, 이경남, 문정욱, 이슬기, 전미현)
- 정책연구 18-35 4차 산업혁명 대비 과기정통부 정책의제 발굴에 관한 연구(강준모, 김경훈, 김정언, 김민식)
- 정책연구 18-36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반 고도화 방안 연구(조유리, 김정언, 이학기, 김성욱, 이학기, 이경남, 김민식, 류민호, 이중엽, 김배현)
- 정책연구 18-37 데이터 경제 진전에 따른 산업별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활용방안 연구(민대홍, 이학기, 오정숙)
- 정책연구 18-38 민간 혁신 파트너 역할을 위한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원방안 연구(이학기, 민대홍, 선지원, 김민식)
- 정책연구 18-39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계약의 공공분야 도입 방안 연구(김경훈, 김정언, 선지원, 이시직)

- 정책연구 18-40 新남방 정책 추진을 위한 아세안 연계성 강화 방안 연구(남상열, 김성웅, 박정은)
- 정책연구 18-41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CT 쟁점 이슈 대응전략 연구(고상원, 김태은, 박민정, 전선민)
- 정책연구 18-42 환경변화에 따른 단말기 유통 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염수현, 강인규, 홍현기)
- 정책연구 18-43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 발전 방안 연구(김현수, 염수현, 강인규, 박상미)
- 정책연구 18-4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터넷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정책 프레임워크 연구
(나성현, 여재현, 김남두, 조성은, 김민희, 문아람, 정광재, 이솔희, 이세라, 이상우, 김세환, 류민호, 윤상윤, 이창범, 이한영)
- 정책연구 18-45 통신환경 변화 및 5G 시대에 부합하는 설비 제공·공동구축 활성화 방안 연구(문아람, 이상우, 이솔희)
- 정책연구 18-46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망중립성 정책방향 및 상호접속제도 개선방안 연구(나성현, 김민희, 이상우, 이솔희, 박상미, 조대근)
- 정책연구 18-47 부가통신서비스 유형분류 및 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정광재, 홍형기)
- 정책연구 18-48 지능정보사회에서의 전기통신 개념 및 공공성 달성 방안 연구(이민석, 박상미)
- 정책연구 18-49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매제공 제도 개선 방안 연구(염수현, 정광재, 김대건, 진정민)
- 정책연구 18-50 한·중·일 로밍요금 인하를 위한 정책협력 방안 연구(이민석, 박상미)
- 정책연구 18-51 5G 시대를 대비한 전기통신번호 이용체계 개선방안 연구(이민석, 이보검)
- 정책연구 18-52 보편적 의무 제도 중장기 개편에 대응한 법·제도 정비방안 연구(염수현, 나상우, 이형직, 이광희, 정선구)
- 정책연구 18-53 방송 주파수 관리 및 활용 동향에 관한 연구(김득원, 김상용, 김지환, 김희천, 임동민, 정아름, 김인희)
- 정책연구 18-54 4차 산업혁명 시대 방송·통신 분야 법제 및 발전전략에 관한 국내외 동향 연구(황준호, 김남두, 권용재, 정은진)
- 정책연구 18-55 방송통신분야 2018년 제·개정 법규에 대한 비용분석 연구(황유선, 송민선)
- 정책연구 18-56 미래지향적 방송제도 개선방안 연구(황준호, 주성희, 김남두, 김청희, 김호정)

- 정책연구 18-57 인터넷·모바일 기반 신유형 융합서비스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강준석, 황준호, 권용재)
- 정책연구 18-58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성욱제, 송민선)
- 정책연구 18-59 결합상품의 인접시장 영향 분석 방법 연구(황유선, 권용재)
- 정책연구 18-60 방송한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계약 및 수익분배 방식 연구(주성희, 권용재, 김민정)
- 정책연구 18-61 중장기 방송광고 규제체계 개편 및 관련 법령 개선 방안 연구(강준석, 김호정)
- 정책연구 18-62 외주시장 거래관행 실태조사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심홍진, 김청희)
- 정책연구 18-63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제정 등 외주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황유선, 심홍진, 김청희)
- 정책연구 18-64 방송평가제도의 변별력 제고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연구(성욱제, 송민선)
- 정책연구 18-65 혁신서비스 성장지원을 위한 방송 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곽동균, 정은진)
- 정책연구 18-66 방송분야 국제규범 변화 및 통상협상 대응방안 연구(주성희, 정은진, 윤희진)
- 정책연구 18-67 유료방송 분야의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이재영, 강준석, 송민선)
- 정책연구 18-68 유료방송 요금 신고제 전환에 따른 요금제도 개선 방안 연구(강준석, 김호정)
- 정책연구 18-69 2018 미디어 다양성 조사(성욱제, 강준석, 김남두, 송민선, 정은진, 장시연, 유수정, 김 민)
- 정책연구 18-70 지역민방 편성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김남두, 이재영, 곽동균, 김희정)
- 정책연구 18-71 방송채널사용계약 현황 분석 및 공정한 계약관계에 관한 연구(강준석, 김경은, 권용재, 홍평기)
- 정책연구 18-72 남북 간 방송미디어 상생협력 및 발전방안 연구(황준호, 김청희, 황지은)
- 정책연구 18-73-01 ICT 통계분석 및 고도화(분석)(고동환, 최계영, 심동녕, 최지은, 유선실, 정부연, 이선희, 신우철, 오윤석, 황혜인, 조정현, 김민식, 오정수, 이경남)

- 정책연구 18-73-02 ICT 통계 평가체계 개선 연구(정현준, 정용찬, 심동녘, 이선희, 오윤석)
- 정책연구 18-74 ICT 통계 기획 및 조사(ICT통계체계 기획 및 개선방안 연구)(최계영, 정현준, 정용찬, 고동환, 심동녘, 손녕선, 유선실, 정부연, 이선희, 신우철, 노희운, 오윤석, 홍정민, 황혜인, 이운호)
- 정책연구 18-75 ICT 통계 기획 및 조사(ICT 통합모집단 구축 및 운영)(정현준, 신우철)
- 정책연구 18-76 ICT 통계 기획 및 조사(ICT 부문 분석용 마이크로데이터 구축)(정현준, 신우철, 홍정민, 이운호, 이용희, 변종석, 박민규)
- 정책연구 18-77 ICT 통계 기획 및 조사(ICT 통계조사 품질진단)(정용찬, 유선실, 박민규)
- 정책연구 18-78 ICT 통계 기획 및 조사(ICT부문 일자리행정통계 조사 및 분석)(고동환, 오윤석, 신우철)
- 정책연구 18-79 ICT 산업 중장기 전망(2019~2023년)(고동환, 정용찬, 나성현, 유선실, 정부연, 김민식, 이경남, 오정숙, 이은민, 나상우, 이보겸, 이운호)
- 정책연구 18-80 ICT분야 미래직업 예측 모델 고도화(최계영, 고동환, 최지은, 이 호, 노희운, 황혜인)
- 정책연구 18-81 ICT혁신에 따르는 경제·사회적 이슈에의 대응방안 연구(최계영, 김정연, 조성은, 김성옥, 심동녘, 유선실, 정부연, 이은민, 류현숙, 박가열, 최민석)
- 정책연구 18-82 2018년 남북 정보통신 교류 촉진 사업결과보고서(김창완, 고상원, 남상열, 김태은, 서소영, 김선규)
- 정책연구 18-83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아태지역 ICT 국제협력 방안 연구(남상열, 김성웅, 김병우, 최소담)
- 정책연구 18-84 2018년도 우정정책 출연연구 - 2018년 우정동향 조사·분석(정진하, 이석범, 한은영, 안명옥, 이영종, 이경은, 이용수, 박소연, 김민진, 김지혜)
- 정책연구 18-85 2018년도 우정정책 출연연구 - 4차산업혁명 대비 우정사업 발전전략(정진하, 강홍렬, 박재석, 최중범, 이석범, 한은영, 안명옥, 이영종, 박소연, 김민진, 김지혜)
- 정책연구 18-86 2018년도 우정정책 출연연구 - 환경변화에 대응한 우체국보험 고객관리 강화 방안(정진하, 이석범, 이영종, 박소연)
- 정책연구 18-87 2018년도 우정정책 출연연구 - 해외우정과 국내 공공서비스 기관의 발전과정 연구(정진하, 최중범, 한은영, 안명옥, 이영종, 박소연, 김민진, 김지혜)

■ 2019 정책연구

- 정책연구 19-01 유료방송 사업자간 공정경쟁 활성화 방안 연구(곽동균, 김청희)
- 정책연구 19-02 5G 시대를 대비한 통신규제정책 프레임워크 연구(여재현, 이민석, 박상미)
- 정책연구 19-03 북한 통신망 구축 관련 협력방안(여재현, 김창완, 이민석, 박상미, 서소영, 임동민)
- 정책연구 19-04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제도개선 절차 연구(문아람, 이상우, 나성현, 이보겸, 이솔희)
- 정책연구 19-05 O2O서비스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 효과에 관한 연구(강준모, 김성옥, 이은민)
- 정책연구 19-06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체계 개선 방안 연구(조유리, 김성옥, 민대홍, 손가녕)
- 정책연구 19-07 5G 네트워크 시대의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에 관한 연구(정광재, 나상우)
- 정책연구 19-08 이용자를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및 이용환경 개선 방안 연구(김민철, 장인규)
- 정책연구 19-09 국내 홈쇼핑 산업에 대한 분석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이재영, 이종원, 설혜진, 정은진)
- 정책연구 19-10 글로벌 창업 활성화 방안(김성옥, 조유리, 김경훈, 민대홍, 손가녕)
- 정책연구 19-11 충북혁신도시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MP수립연구(거버넌스부문)
- 정책연구 19-12 IOT용 SW솔루션 개발지원 신규 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결과보고서(김정연, 이경선, 김민식, 이경남)
- 정책연구 19-13 Policy Consultation on Development of IT Industry in Brazil Final Report(고상원, 김창완, 남상열, 송영민, 유성훈, 이종화, 정연희, 황준석, 이재민)
- 정책연구 19-14 남북 과학기술/ICT 분야 4차산업혁명 공동대응 방안 연구(남상열, 강하연, 김창완, 고상원, 김성옥, 이학기, 김태은, 임동민, 서소영, 김선규)
- 정책연구 19-15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연구(김경훈, 강준모, 이호영, 조성은, 이경선, 이학기, 민대홍, 이경남, 오정숙, 김민식, 손가녕, 양기문)
- 정책연구 19-16 데이터소유권에 관한 법·제도 및 정책연구(강준모, 선지원, 조성은, 오정숙, 정원준, 권현영, 이동진, 전주용, 손승우)

- 정책연구 19-17 재허가·재승인 조건 관련 세부기준 정비(성육제, 송민선)
- 정책연구 19-18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19년도)(통신전파연구실 통신정책그룹)
- 정책연구 19-19 3대 중점육성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생태계 활성화 방안(김성욱, 조유리, 김민식, 손가녕)
- 정책연구 19-20 공공·민간 분야의 인공지능(AI) 융합·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김경훈, 김정연, 정원준)
- 정책연구 19-21 빅데이터 활용통계의 국가통계 승인관리방안 연구(최종보고서)(정용찬, 신지형, 심동녕, 김윤화, 오윤석)
- 정책연구 19-22-01 지능정보화 이용자 기반 보호 환경조성 총괄보고서(이호영, 손상영, 강준모, 선지원, 문정욱, 김희연, 양기문, 정선민, 강민정, 송민이, 김용찬, 이도훈, 김승일, 백병인, 박윤진, 박지민, 정민지)
- 정책연구 19-22-02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데이터 구축 및 조사(이호영, 양기문, 정선민, 강민정, 김용찬, 이도훈)
- 정책연구 19-22-03 알고리즘, 데이터 이용에 따른 이용자 행태 변화 분석에 관한 연구(손상영, 김희연, 김승일, 백병인, 박윤진, 박지민, 정민지)
- 정책연구 19-23 ICT 규제개혁 기반연구(강준모, 김성욱, 김정연, 박유리, 선지원, 이학기, 김민식, 오정숙)
- 정책연구 19-24 ICT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조성은, 손상영, 선지원, 문정욱, 김희연, 양기문, 정선민, 송민이, 강민정, 윤호영, 주병기, 성욱준, 김시정, 박혜경, 이삼열)
- 정책연구 19-25 실태조사 기반의 O2O 서비스 활성화 정책방안 연구(박유리, 김성욱, 오정숙)
- 정책연구 19-26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ICT 정책방향(이학기, 이경남, 이은민)
- 정책연구 19-27 일본수출규제의 ICT 신산업영향분석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조유리, 김민식, 이상환, 윤석상, 이영주, 권재범)
- 정책연구 19-28 블록체인 인재양성 현황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이학기, 김경훈, 이경남)
- 정책연구 19-29 5G 연관산업 생태계 현황 및 시장 전망에 관한 연구(김경훈, 김정연, 이경선, 오정숙, 손가녕)
- 정책연구 19-30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지능형반도체의 등장과 반도체 생태계 변화에 관한 연구(김정연, 김민식, 이경남, 이경선)
- 정책연구 19-31 3D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이경선, 선지원, 김민식,

이은민)

- 정책연구 19-32 5G시대 플랫폼 성장에 따른 사후규제 개편 방안 연구(김현수, 강인규, 홍인규)
- 정책연구 19-33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결과보고서(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 정책연구 19-34 통신장애에 따른 피해구제 강화 방안 연구(문아람, 박상미)
- 정책연구 19-35 단말기 AS 실태조사 및 단말기유통법 개정 방향 연구(염수현, 강인규, 홍현기, 박상미)
- 정책연구 19-36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5G 환경변화에 대응한 트래픽 관리방안 연구(나성현, 문아람, 박상미)
- 정책연구 19-37 5G 통신환경 변화를 반영한 상호접속 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김민희, 정광재, 김민철, 이보겸, 이솔희, 윤도원, 이형직, 이광희, 정선구)
- 정책연구 19-38 5G 네트워크 특성에 따른 도매제공 방식 변화에 대한 연구(정광재, 윤도원)
- 정책연구 19-39 해외 주파수 이용대가 제도에 관한 연구(김지환, 김상용, 김희천, 정아름, 김인희)
- 정책연구 19-40 방송미디어 규제개선 제도화 방안 연구(곽동균, 이종원, 이재영, 강준석, 황유선, 김정은, 권용재)
- 정책연구 19-41 유료방송 지역사업권 및 지역채널 제도 개선 방안 연구(곽동균, 송민선)
- 정책연구 19-42 방송통신 융·결합 확산에 따른 유료방송 경쟁정책 연구(이재영, 권용재)
- 정책연구 19-43 방송통신 분야 규제비용 분석 및 절감방안 연구(황유선, 김정은, 송민선)
- 정책연구 19-44 공민영 구조 개편 및 중장기 미디어 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이종원, 황준호, 정은진, 김청희)
- 정책연구 19-45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 방안 연구(성욱제, 김민정, 정은진, 심홍진)
- 정책연구 19-46 지상파방송 중간광고의 광고매출 증대효과 기준개발(강준석, 김호정)
- 정책연구 19-47 방송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중계비율 등 편성규제 개선 방안 연구(김남두, 주성희, 김청희, 노은정)
- 정책연구 19-48 방송 분야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 규정 마련 연구(강준석, 권용재)
- 정책연구 19-49 5G시대에 대응한 미디어 산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이재영, 김호정, 임희은)
- 정책연구 19-50 2019년 미디어다양성 조사(성욱제, 정은진, 유수정, 장시연, 강준석,

김남두, 송민선)

- 정책연구 19-51 유료방송시장 경쟁환경 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정책 방안 연구(강준석, 이재영, 김경은, 권용재)
- 정책연구 19-52 ICT 통계 체계 기획 및 개선방안 연구(정현준, 최계영, 정용찬, 고동환, 최지은, 손녕선, 고세란, 유선실, 정부연, 이선희, 신우철, 오윤석, 이은영, 정은진)
- 정책연구 19-53 ICT 통계 기획 및 조사(통합모집단)(정현준, 신우철)
- 정책연구 19-54 ICT 통계 기획 및 조사(마이크로데이터)(정현준, 손녕선, 신우철, 이은영, 변종석, 박민규)
- 정책연구 19-55 ICT 통계체계 진단 및 평가(정현준, 최지은, 손녕선, 이선희, 오윤석, 이은영, 정은진, 한근식, 이용희)
- 정책연구 19-56 ICT 통계조사 승인체계 개선(정용찬, 정현준, 손녕선, 유선실, 이은영)
- 정책연구 19-57 ICT분야 고용현황 분석 및 전망(정현준, 최계영, 손녕선, 고세란, 신우철, 이은영, 소병도, 윤형준, 김기리)
- 정책연구 19-58 ICT 산업 중장기 전망(2020 ~ 2024) 및 대응전략(고동환, 정용찬, 나성현, 유선실, 정부연, 김민식, 이경남, 오정숙, 이은민, 노희운, 이보겸, 이솔희)
- 정책연구 19-59 신산업분야 미래직업예측(최지은, 고동환, 고세란, 노희운)
- 정책연구 19-60 ICT 업계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 관련 현황 조사(신지형, 최지은, 정현준, 정부연, 노희운)
- 정책연구 19-61 2019년 남북 정보통신 교류촉진 사업 결과보고서－국제기구를 통한 남북 협력방안 연구－(강하연, 김창완, 남상열, 김태은, 서소영, 김선규)
- 정책연구 19-62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 조사 결과보고서(강하연, 김창완, 임동민, 김태은, 서소영)
- 정책연구 19-63 AIBD, IIC 등 국제기구를 통한 방송미디어 규제 및 정책협력 방안 연구(남성열, 김남두, 김태은, 김나연, 김성웅, 정연희)
- 정책연구 19-64 APEC 디지털 혁신 기금을 활용한 ICT 국제협력 추진 연구(남상열, 김성웅, 박정은, 김병우)
- 정책연구 19-65 WTO 전자상거래, 한－메르코수르 TA 협상 등 방송통신분야 대응 방안 연구(강하연, 김승민, 정연희, 박두이, 김성웅)
- 정책연구 19-66 2019년 우정동향 조사·분석(최중범, 이석범, 안명옥, 이영중, 이경은,

김민진, 김지혜)

- 정책연구 19-67 2019년도 우정정책 출연연구-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소요인력 산출기준 개정(최중범, 안명옥, 김민진, 이준배, 박재석, 김홍림)
- 정책연구 19-68 2019년도 우정정책 출연연구-우편물의 모바일 전자고지 전환에 따른 우편사업 대응전략(한은영, 이영종, 김지혜)
- 정책연구 19-69 지능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법제·윤리 개선방향 연구(선지원, 조성은, 정원준, 손승우, 손형섭, 양천수, 장완규)
- 정책연구 19-70 4차 산업혁명시대 해외 주요국 방송통신 핵심 정책의제 및 정책 추진체계 분석을 통한 정부혁신 방안 연구(황준호, 이재영, 노은정)



● 저 자 소 개 ●

주 성 희

- 美 미시건대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 現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노 은 정

- 성균관 대학교 법학 석사
- 現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김 현 정

- 美 오클라호마대 언론영상학 박사
- 現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기본연구 19-08

보편적 시청권 개념 및 제도 재정립 방안 연구

2019년 12월 일 인쇄

2019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김 대 희

발행처 정 보 통 신 정 책 연 구 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정통로 18

TEL: 043-531-4114 FAX: 043-535-4695~6

인 쇄 인 성 문 화

ISBN 979-11-7000-239-0 93320

보급가 10,000원